

June 2023

Vol. 02 (통권 42호)

FTA TRADE REPORT

FTA 무역리포트



FTA FOCUS

FTA의 전자상거래 조항에 대한 향후 개선 방향

FTA EXPERTS

RCEP과 CPTPP 누적규정 활용 가능성
FTA 환경에서 관세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

해외통관애로

베트남 법령에 따른 강제 인증 및 수입 요건 개관

June 2023

Vol. 02 (통권 42호)

FTA TRADE REPORT

FTA 무역리포트



Contents

FTA FOCUS

006

FTA의 전자상거래 조항에 대한 향후 개선 방향

송선욱 |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한국관세학회 회장

FTA 동향

028

FTA TOON

039

FTA EXPERTS

042

RCEP과 CPTPP 누적규정 활용 가능성

진병진 | 국립창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FTA 환경에서 관세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

고태진 | 경인여대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관세사(관세법인 한림)·경영학 박사

FTA ANALYSIS

064

캄보디아 시장진출을 위한 한-캄보디아 FTA 소개

김수정 | 한국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선임연구원

FTA 품목분류

078

HS 제8708호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의 품목분류

오수교 | KPMG 관세사

해외통관애로

094

베트남 법령에 따른 강제 인증 및 수입 요건 개관

박민설 | KOTRA 하노이 무역관,
한-베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관세사/전문위원



FTA 100% 활용하기

110

CBAM은 글로벌 기후 통상규제의 출발 신호

이상준 | 국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부교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122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

(Other vegetables prepared or preserved)

김용태 | 법학박사·관세사, (사)한국FTA원산지연구회
사무총장·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경제통상학과 겸임교수

활용하기 쉬운 FTA-PASS

134

원산지관리가 편리한 FTA-PASS

- 고객사 물품정보로 원산지확인서 발급 -

구본현 | 한국원산지정보원 과장/원산지관리사

김소연 | 한국원산지정보원 원산지관리사

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144

FTA 활용 시 원산지증빙서류 보관의무의 중요성

강태우 | 대홍합동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쉬어가기

149

FTA 지도

152

2021년 vs. 2022년

FTA 수출입국 주요 품목의 증감



FTA TRAD



FTA FOCUS

FTA의 전자상거래 조항에 대한 향후 개선 방향

송선욱 |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한국관세학회 회장

E REPORT

FTA의 전자상거래 조항에 대한 향후 개선 방향*



송선욱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한국관세학회 회장



FTA 협상에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위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하게 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국경 간 전자상거래 관리 및 정착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체결된 주요 FTA상의 전자상거래 조항을 확인하고 그 가운데 공통된 조항 및 필요한 조항을 확인하여 전자상거래 모델 조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모델 조항을 통해 향후 FTA 협상 시 또는 추가 개정 협상 시 활용하도록 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과 효과적인 FTA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1

FTA의 전자상거래 조항 현황과 규정 유형 분석

1. FTA의 전자상거래 조항 현황과 규정 유형 분석

1) RTA하에서 전자상거래 조항 현황

2017년 5월 현재 WTO에 통보된 RTA 가운데 전자상거래 규정이 있는 RTA는 75개로 전체의 27%를 차지하였다. 2019년 12월에는 전체 RTA 가운데에서 84개에서 명시적으로 전자상거래를 다루고 있었다(ESCAP, 2019).

2022년 현재 340개 RTA 가운데 34%를 차지하는 117개 RTA에서 전자상거래 규정이 있다(<https://rtais.wto.org/UI/PublicSearchByCr.aspx>).

이처럼 RTA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확립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규정은 평균적으로 2014년과 2016년 사이에 발효된 모든 RTA의 60% 이상에서 포함되어 있다.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가진 RTA 수의 이 같은 증가는 개발도상국과 관련된 RTA의 급증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2) FTA의 전자상거래 규정 형태 분석

전자상거래 규정의 구조적 형태는 동일한 국가에서 협상한 경우라도 RTA 간에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2017년의 Jose Antonio Monteiro & Robert Teh의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RTA의 전자상거래 규정을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¹

첫째, 전자상거래 규정을 전용 장(Chapter)에 두는 특정 장/절(chapter/section) 형태이다. 전자상거래를 제공하는 75개 RTA 중 61개 RTA가 전자상거래 전용 챕터 형태로 되어 있다.

* 본 연구는 「e-비즈니스 연구」 제23권 제7호(2022.12)에 게재된 “FTA의 전자상거래 조항에 대한 향후 개선 방향”을 요약, 정리한 것임.

1 Jose Antonio Monteiro and Robert Teh. 2017. Provisions on Electronic Commerce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Geneva: World Trade Organization(WTO). 인용한 연구는 2017년 5월 현재 시행되고 WTO에 고시된 275개 RTA를 분석하여 종합적인 정량적 분석을 제공한 첫 번째 연구로 본 연구의 이 장에서는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유형을 분석하였음.

둘째, 전자상거래 규정을 특정 조항(specific article)에 두는 형태이다. 전자상거래를 제공하는 75개 RTA 중 8개의 RTA가 전자상거래 특정 조항을 두고 있다.

셋째, 전자상거래 규정을 비특정 조항(non-specific article)에 두는 형태이다. 특정 사례의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이슈 또는 광범위한 이슈들을 나열하는 조항이다. 전자상거래를 제공하는 75개 RTA 중 56개의 RTA가 전자상거래 규정을 비특정 조항에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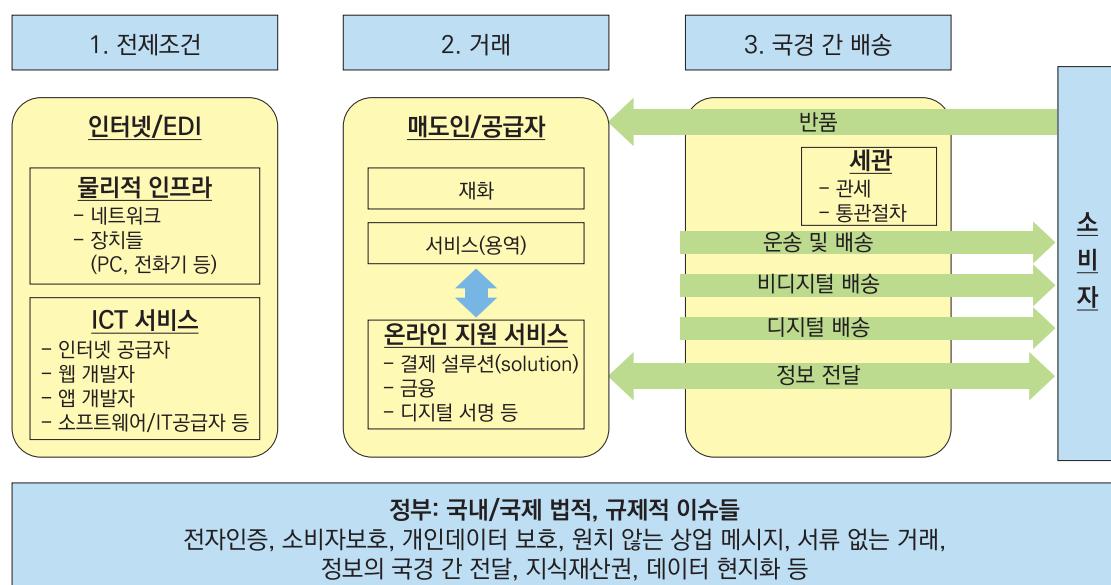
기타 형태로 RTA에 명시된 특정 전자상거래

규정(provision)과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논의에 관한 당사국의 견해를 확인하는 부가 서신(side letter) 교환, 전자상거래에 대한 공동성명서(joint statement)뿐만 아니라 부속서(annex)와 같은 부가문서의 형태가 있다.

3) FTA의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규정 내용 분석

전자상거래 규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다양한 전자상거래 관련 이슈들이 모두 고려 대상이 된다. 즉, 전자상거래의 전제조건이 되는 물리적

[그림 1] 전자상거래 관련 이슈들



자료: Jose Antonio Monteiro & Robert The(2017), Provisions on Electronic Commerce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WTO, 13.

인프라와 ICT 서비스, 실제적으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온라인 지원 서비스, 국경 간 배송에 따른 통관 및 관세 이슈와 전자정보,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이들 국경 간 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다양한 국내 및 국제 법적, 규제적 이슈들이 모두 고려 대상이 된다.

이들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단계별 이슈들 중에서 FTA에 규정될 주요 내용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차원의 국내 및 국제적 법규와 규제적 이슈들, 관세 및 통관 이슈, 그리고 기타 관련된 협력 등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1) 정부 차원의 국내 및 국제적 법규와 규제적 이슈

정부 차원의 국내 및 국제적 법규와 규제적 이슈들에는 전자상거래를 관장하는 국내법적 기본틀,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온라인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가간 정보 전송, 서류없는 거래에 대한 규정들을 수 있다. 또한 사이버 보안(Cybersecurity), 소스코드(Source Code)와 같은 지식재산권, 전산 시설의 위치,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Unsolicited electronic message), 열린 정부 등에 대한 규정들이 있다.

첫째, 전자상거래를 관장하는 국내법적 기본틀을 확립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1996)과 일치하는 법적 기본틀을 확립하거나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조치들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국내법에 확립될 것에 관한 내용이다.

둘째,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전자서명, 전자인증, 소비자 보호,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의 규정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다.

전자서명이나 전자인증은 종이서류와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수단이다. 이러한 전자 서명이나 전자인증에 대한 FTA 규정은 일반적으로 “전자인증을 부인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형식으로 의무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규정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FTA에 규정될 필요가 있는데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FTA의 조항은 정부가 소비자 보호법을 유지하거나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법률이 투명하고 효과적이어야 하며 오프라인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와 동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기타 관련 조항은 소비자 보호 기관 간의 협력을 요구한다.

또한 개인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도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FTA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추세이다.

전자상거래 챕터가 없는 일부 FTA의 경우에는 통신 챕터나 일반 예외 규정 등에서 언급되고 있다.

한편 사이버 보안은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정보 공유 등 협력을 통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이 FTA에 규정되고 있다.(Pasadilla, Gloria O., 2020).

셋째,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가간 정보 전송, 즉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대해서는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입장과 개인정보 등 소비자 보호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분야이다.

구글 등 주요 ICT 기업이 있는 미국은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데이터의 국외 이전에 관한 제한 조치를 철폐하는 입장인 반면, EU는 기본적으로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에는 찬성하나 소비자 정보 보호에 보다 중요성을 두는 입장이다(KOTRA, 2020).



넷째,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는 데이터를 해당 영역에 저장해야 하거나 관할 구역 외부로 전송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이다.

2018년 9월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합의한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Free Trade Agreement; USMCA)의 전자상거래 챕터에서도 데이터 지역화 조치 금지 조항(제19조 제12항)이 있으며 일본 주도로 체결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CPTPP) 협정은 회원국 사이에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촉진과 데이터 지역화 조치 금지를 명시한 의무규정을 포함하고 있다(KOTRA, 2020).

다섯째, 소스코드와 관련된 규정으로, 과거 FTA에는 소스코드 전송에 대한 조항이 없었다. 아마도 시장 접근을 위한 조건으로 소스코드의 이전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포함하는 최초의 것 중 하나가 일본-몽골 FTA일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상용 소프트웨어에 적용되지만 중요 인프라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된다(Pasadilla, Gloria O., 2020).

최근 FTA에서는 소스코드의 강제이전은 금지하지만 상업적으로 협상된 계약 또는 정부 조달

에서 자발적인 이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되고 있다(KOTRA, 2020).

여섯째, 서류없는 거래에 대한 규정은 전자상거래 규정보다 앞서 있었다.

실제로, 2001년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간의 FTA에서 서류없는 거래에 관한 조항이 처음 발견되어 관세 행정 및 무역 커뮤니티를 위한 전자 환경의 필요성을 확립했다(Monteiro and Teh, 2017).

또한 ESCAP 회원국은 국경 간 서류없는 거래를 원활화하는 데 전적으로 기여하는 지역 협정을 채택했다. FTA에서 서류없는 거래에 대한 조항은 보통 통관 절차 또는 무역원활화에 대한 장에서도 찾을 수 있다(ESCAP, 2017a).

서류없는 거래에 대한 FTA의 조항은 다양하다. 어떤 경우에는 수입업자와 수출업자가 제출하는 무역 관리 문서를 전자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법적으로 종이 버전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조항은 예를 들어 싱글윈도와 같은 이니셔티브의 구현에 관한 것이다. 일부는 세계관세기구(WC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개발한 국제표준을 고려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른 유형의 조항은 협력, 정보 및 경험 공유, 규제 대화 또는 서류없는 거래 이니셔티브의 구현을 감독하기 위한 공동 위원회 구성을 의미한다(Pasadilla, Gloria O., 2020).

그러나 대부분의 FTA에서는 “서류없는 무역” 또는 “서류없는 무역행정”的 제목을 가진 특정 조항을 포함한다. 이들 조항들은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챕터에 있으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인도네시아협정은 세관 행정 챕터에 “서류없는 무역”이 있는 반면, 호주-중국 협정은 전자상거래 및 세관 행정 챕터에 그런 조항이 있다(ESCAP, 2017b).

일곱째,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와 관련한 규정으로, FTA에는 일반적으로 상업적 또는 마케팅 목적으로 전송되는 요청하지 않은 전자 메시지를 규제하는 법률을 보유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

EU FTA는 스팸 메시지 처리에 관한 규제와 관련된 대화 및 경험 교환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호주와 같은 다른 FTA에는 “요청하지 않은 상업적 전자 메시지를 규제하기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같은 보다 구속력 있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지만 “참여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와 같은 문구를 추가하여 재량을 제공하고 있다(Monteiro and Teh, 2017).

여덟째, 열린 정부(Open government)와 관련된 규정으로, 이는 정부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것으로 당사국이 공개한 정부 정보에 대한 사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력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다(Pasadilla, Gloria O., 2020).

(2) 관세 및 통관 이슈

일반적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서 소량의 물품이나 디지털 제품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디지털 제품의 구매 비용을 절감시키고 소량 제품의 구매 확대를 가져와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보다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에서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를 하지 않고 있다.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유예와 관련해서 1998년 2월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한시적으로 무관세 조치를 결정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즉, 최근 2021년 제12차 각료회의(MC12)에서도 무관세화를 MC 13차 회기가 있는 2022년 말 또는 회의가 연장될 경우 2023년 3월 31일 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WTO, 2021).

이러한 추세는 RTA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대부분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규정을 두고 있다. Monteiro and Teh가 2017년 조사한 75개 RTA 중 56개에서 전자 전송에 대한 무관세 규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asadilla, Gloria O., 2020).

(3) 기타 이슈들

FTA에서는 기타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기본 원칙, 정의, 범위 등에 대한 규정, 국제적 협력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될 수 있다.

첫째,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기본원칙으로 물리적 제품과의 무차별성에 대한 것이다. 즉,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해 물리적 제품과 차별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이는 전자 상거래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둘째, 전자상거래 관련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개념의 종류의 다양성 및 개념 정의 내용의 상이성 등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제품에 대한 정의는 단순히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을 의미하는 반면, 운반매체(carrier medium)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나 전자적으로 전송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디지털 제품으로 정의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정의가 다를 경우 과세문제가 복잡하게 될 수 있다.





셋째, 전자상거래에 대한 RTA 당사자 간의 협력 촉진 규정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 경험 등에 대한 교류 및 공동연구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는 내용이다.

이외에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Interactive Computer Services; ICS)²(제3차 책임), 즉 중개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 있다. ISP는 캐싱

또는 호스팅 서비스(정보 저장), 전송, 라우팅 또는 연결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제는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가 불법적으로 전송된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든 부도덕한 콘텐츠든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는가인데 이와 관련한 ISP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다.

2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라는 용어는 컴퓨터 서버에 대한 여러 사용자의 컴퓨터 액세스를 제공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정보 서비스, 시스템 또는 액세스 소프트웨어 제공자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특히 인터넷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서비스(ISP) 또는 시스템 및 도서관 또는 교육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또는 서비스가 포함된다.

2 주요 FTA의 전자상거래 조항 비교 분석

주요 FTA의 전자상거래 조항 비교 분석 대상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조항은 전자상거래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모든 조항을 대상으로 하겠다.³

또한 주요 FTA는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 미국, EU와의 FTA 및 최근의 메가 FTA인 RCEP으로 하겠다.

먼저 각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 형태는 한·미 FTA, 한·중 FTA, RCEP의 경우는 특정 챕터(Chapter) 형태이며 한·EU FTA는 특정 챕터 아래 절(Section)의 형태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 내용에 관한 것으로, 앞에서 살펴본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규정을 중심으로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유효성 인정,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 국내법적 기본틀, 중개서비스제공자 (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의 책임등에 관한 의무규정⁴, 개인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를 포함한 온라인 소비자 보호, 서류없는 무역, 국경 간 정보 흐름, 현지화, 소스코드, 협력 등에 관한 협력규정⁵,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련 개념의 정의, 원칙과 적용 범위, 무차별 대우 등의 기타 일반규정으로 나누어 주요 FTA의 전자상거래 규정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 3 전자상거래 조항은 보다 폭넓게 컴퓨터, 사이버, 디지털, 전자적,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전자 상거래(e-commerce), 전자 정부, 정보 및 통신, ITC, 인터넷, 온라인, paperless 및 통신 등의 키워드가 사용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조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4 의무규정은 “채택 또는 유지해야 한다.(shall adopt or maintain)”, “할 수 없다.(may not)” 또는 “요구할 수 있다.(may require)” 등과 같은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의무규정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규정까지 포함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의하겠다.
- 5 협력규정은 “인정한다.(recognize)”, “노력해야 한다.(shall endeavor)” 또는 “장려하다.(shall encourage)” 등의 다소 완화된 표현을 사용하여 필요한 규정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협력하는 차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의하겠다.

[표 1] 한국의 주요 FTA의 전자상거래 규정 비교

	한·미 FTA <제15장 전자상거래>	한·중 FTA <제13장 전자상거래>	한·EU FTA <제7장 서비스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제6절 전자상거래	RCEP <제12장 전자상거래>
의무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5.3조(디지털제품): 관세 등 부과금지, 무차별대우 등 제15.4조(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3.3조(관세): WTO 관세 부과유예 관행 유지 제13.4조(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상호인정 관련 협력 규정 포함 제13.9조(분쟁해결의 비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7.48조(목적 및 원칙) 3항: 관세부과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2.6조(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제12.7조(온라인 소비자 보호) 제12.8조(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제12.9조(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메시지) 제12.11조(관세)
협력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5.5조(온라인 소비자 보호) 제15.6조(서류없는 무역) 제15.7조(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 제15.8조(국경 간 정보 흐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3.5조(전자상거래 상의 개인정보보호) 제13.6조(서류없는 무역) 제13.7조(전자상거래에 관한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7.49조(규제 문제에 대한 협력): 각종 전자상거래 이슈에 대한 대화 및 정보 교환 제7.50조(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2.4조(협력) 제12.5조(서류없는 무역) 제12.10조(국내 규제의 틀) 제12.13조(사이버보안) 제12.14조(컴퓨터 설비의 위치) 제12.15조(전자적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 제12.16조(전자상거래에 관한 대화) 제12.17조(분쟁해결)
일반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5.1조(일반규정) 제15.2조(서비스의 전자적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3.1조(일반) 제13.2조(다른 장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7.1조(목적 및 적용범위) 제7.2조(서비스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위원회) 제7.48조(목적 및 원칙) 1, 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2.2조(원칙 및 목적) 제12.3조(적용범위) 제12.12조(투명성)
정의	제15.9조(정의)	제13.8조(정의)		제12.1조(정의)

자료: 저자 정리 및 작성

3 향후 FTA 협상 시 전자상거래 조항 개선 방향

1. FTA 전자상거래 모델 조항 마련 및 적용

1) FTA 전자상거래 모델 조항

급증하고 있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새로운 성장 엔진 제공, 새로운 소비 트렌드 주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글로벌 경제, 국가 경쟁력 및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급증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량에 대한 통관 절차의 신속성 및 효율성 등의 무역원활화 보장, 위험 화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등을 통한 관련 범죄로부터의 사회 보호, 그리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세 및 세금의 징수, 글로벌 표준과 가이드라인 부족에 대한 극복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www.wcoomd.org/en/topics/facilitation/activities-and-programmes /ecommerce.aspx).

다양한 유용성과 문제점을 안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노력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FTA에서도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규율하는 모델 조항을 마련하여

적용하게 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국경 간 전자상거래 관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종 FTA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주요 FTA의 전자상거래 조항을 바탕으로 FTA에 적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모델 조항을 일반 원칙과 정의 및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는 일반규정, 반드시 적용될 필요가 있는 의무규정,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의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부담되지만 규정할 필요가 있는 협력 규정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일반규정에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유형재화와의 무차별성 등의 일반적인 원칙과 목적, 적용 범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아울러 관련된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제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등의 무차별 원칙 규정과 상이한 관련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 지도록 규정되어야 하며 해당 FTA에서의 전자 상거래 규정의 적용 범위, 예외 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오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의무규정으로 무관세 조치,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개인정보 보호 및 소비자 보호, 서류 없는 무역, 급증하고 있는 요청하지 않은 상업적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조치는 전자상거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지금처럼 무관세 조치가 이어질 것이므로 의무조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부 개발도상국의 경우 관세수입 감소를 이유로 무관세 조치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있으나 전반적인 경향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세화이다.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및 서류없는 무역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지원 서비스 분야로 반드시 기초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는 의무조항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상호운영이 가능한 인증방법 및 인증기관 등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소비자 보호는 다양한 전자 상거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소비자 보호 조치는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호조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전자상거래 발전을 저해하게 되므로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보호조치는 오프라인 거래에서의 보호조치와 동등한 수준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문제는 국제기준 고려 및 국내법적, 규제적 장치 마련 등의 내용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서류없는 거래는 무역의 전자적 환경의 구비 측면에 있어 무역원활화 부분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된 내용으로 종이서류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전자문서에 부여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문서는 국제기구나 국제표준을 고려해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청하지 않은 상업적 메시지에 대한 규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상업적 메시지에 대한 수신자의 동의 요구, 수신자의 수신 중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의 내용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협력규정으로 국경 간 정보 이동, 현지화, 사이버 보안, ISP 책임⁶, 소스코드, 국제협력, 국내 규제 기본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은 전자상거래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점이며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므로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내용들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무조항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협력과 노력이 요구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경 간 정보 이동은 주요 ICT 기업이 있는 미국의 경우와 소비자 정보 보호에 민감한 EU의 입장이 다른 상황이나 소비자 정보 보호의 원칙하에서 국경 간 정보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공공, 안보 등의 이유로 국경 간 정보 이동을 금지할 수 있는 제한 조치도 함께 규정될 필요가 있다.

데이터 현지화는 최근 규정되고 있는 내용으로

정당한 공공, 안보 목적 등을 제외하고 효과적인 데이터 접속, 처리 및 저장에 지정이 없는 범위에서 데이터의 현지화를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경 없는 전자상거래와 이에 수반되는 데이터의 국제적 이동하에서 물리적 시설을 반드시 현지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전반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

소스코드와 관련해서도 최근 규정되고 있는 내용으로 소스코드의 강제적 이전에 대한 금지와 자발적 이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ISP 책임(제3자 책임)과 관련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마켓플레이스 등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문제가 중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6 Internet Service Provider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한 정보, 경험 등의 교류 등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훈련, 연구, 국제 포럼 등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FTA 협상 국가들의 상황에 맞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규제 기본틀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의 국제 모델법이라 할 수 있는 '1996년 유엔국제 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 모델법'의 원칙과 합리적, 객관적인 방식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국내법에 규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내법 제도의 유지를 통해 국제 간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도 동일한 이행과 구속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FTA에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FTA에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정의 형태는 다른 조항에 섞여 있거나 특정 장 아래의 절(Section) 형태로 규정되기보다는 전자상거래 전용 장(Chapter)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2] FTA 전자상거래 모델 조항

전자상거래 챕터(Chapter)	
일반 규정	1-1. 원칙 및 목적 1-2. 적용 범위 1-3. 정의
의무 규정	2-1. 관세 유예(무관세) 2-2.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2-3. 개인정보 보호 및 소비자 보호 2-4. 서류없는 무역 2-5. 요청하지 않은 상업적 메시지
협력 규정	3-1. 국경 간 정보 이동 3-2. 데이터 현지화 3-3. 사이버 보안 3-4. ISP 책임 3-5. 소스코드 3-6. 국제협력 3-7. 국내 규제 기본틀

자료: 저자 작성

다른 조항에 섞여 있는 경우 적용하는 기업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특정 장 아래 절로 규정하기에는 현재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모가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성장속도를 고려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전용 장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FTA 전자상거래 모델 조항의 유용성과 적용

앞에서 제시한 FTA 전자상거래 모델 조항 마련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과 이미 체결된 FTA의 개정 시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다.

표준화된 조항은 다른 여러 가지 FTA마다 상이한 내용에 통일성을 제공하여 FTA를 활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간편하게 적용,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정을 집행하는 정부 당국 입장에서도 통일된 정책 방향을 가지고 협상과 집행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편 개도국 입장에서는 먼저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시 FTA 전자상거래 모델 조항을 기준으로 삼아 구축하게 된다면 향후 FTA 협상 및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민감한 전자상거래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 노력

1) ISP 책임 관련 문제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ISP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내 입법도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FTA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ISP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ISP 책임과 관련해서 2020년 7월에 발효된 USMCA의 (제19.17조)에서 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에 체결된 EU와의 FTA 등에서는 ISP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규정되고 있다.

ISP의 책임이 적극적인 측면에서 불법활동이나 정보를 찾아내어 관련 기관에 알려줄 의무 까지는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관련 공공기관이 불법활동이나 정보를 요청 시 알려줄 의무는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플랫폼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ISP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EU는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자는 입장이다. 즉,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플랫폼의 콘텐츠가 유해하거나 불법적인 것을 알았을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콘텐츠의 유통을 감시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캐나다는 민감한 사안으로 통상 규범이 아닌 국내법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며, 이스라엘, 호주, 페루 등은 이러한 논의가 시기상조로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다(KOTRA, 2020).

한국의 경우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1항과 제3항에서 "수인이 공동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공행위자로 본다"는 규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1항과 제6항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ISP)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ISP가 조치를 취한 경우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러한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ISP는 배상 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관련 조치를 취했더라도 ISP가 완전히 그 책임을 면제 받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 등으로부터 통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도 ISP는 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관련 판례(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 36801 판결)에서 적시하고 있다(우지숙, 2019).

따라서 ISP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국가마다 입장의 차이가 있으나 이들에 대한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FTA 협상 시에도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할 내용이며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국경 간 전자적 전송물의 내국세 적용 문제

국경 간 전자적 전송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관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내용은 각종 FTA에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관세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즉, 싱가포르, 브라질 등 일부 회원국들은 전자적 전송물에 내국세, 수수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KOTRA, 2020) 실제로 관세 이외의 부가 가치세 등 내국세의 경우 국내 물품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과세되는 경우가 많다.

한·미 FTA에서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해 관세 이외에 수수료(fees), 기타 부과금(other charge)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본문에 명시하였지만(제15.3호 1항), 협정문 각주 1에서는 이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한, 내국세(internal taxes) 또는 기타 국내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은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구글, 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TPP(제14.3조)에서는 전자적으로 전송된 콘텐츠를 포함하여 전자거래에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단, 본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될 경우 내국세, 수수료 및 기타 부과금은 부과할 수 있다고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다 (박지현, 2018).

따라서 FTA에서도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 관세 뿐만 아니라 내국세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세는 면제되지만 국내 물품과의 형평성 측면과 수입국의 세수 확보 측면에서 내국세 등의 부과가 이루어지는 상황하에서 내국세



등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국제적 합의 노력과 향후 진행되는 FTA 협상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문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과 공공의 안전과 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이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으나 불필요한 제한 조치 및 금지를 부과하는 것은 국경 간 전자 상거래를 원활화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EU의 입장,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민감한 중국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下에서 아마존이나 구글 등 주요 ICT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적인 원칙下에서 자유로운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FTA에서도 규정될 필요가 있다.

한·미 FTA, RCEP, USMCA, EU-Japan EPA에서는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최근 발효되는 FTA에서는 관련 내용이 규정되고 있다.

따라서 제한된 범위에서 일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금지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향후 협상 및 이미 발효 중인 FTA 개정 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제한된 범위에 대해서는 국제적 협상과 논의를 통해 통일되고 구체화된 내용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관련 기업 차원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인력, 관련 규정 등의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기업의 정보 보호 역량 강화는 기업의 경쟁력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4

요약 및 결론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상이 원활화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FTA를 중심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범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FTA의 전자상거래 규범은 각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으며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발전, 확대됨에 따라 초기 FTA보다는 최근 체결된 FTA에서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규정되고 있다.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규정 가운데 반드시 규정되어야 할 의무규정과 논의가 필요 하지만 규정할 필요가 있는 협력 규정, 그리고 기타 관련 규정으로 된 FTA 전자상거래 모델 조항을 마련하여 적용하게 된다면 향후 진행될 FTA 협상과 이미 체결된 FTA의 개정시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FTA 전자상거래 모델 조항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유예(무관세),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개인정보 보호 및 소비자 보호, 서류없는 무역, 요청하지 않은 상업적 메시지와 관련된 의무조항과 국경 간 정보 이동, 데이터 현지화, 사이버 보안, ISP 책임, 소스코드, 국제협력, 국내 규제 기본틀과 관련된 협력

조항, 그리고 기타 조항으로 구성될 수 있다.

특히 아직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의견이 있으나 규정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내국세 부과, 국경 간 데이터 이동, ISP의 책임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FTA 협상 시 그리고 이미 체결된 FTA 협상의 개정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및 관련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eMarketer의 2021년 5월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소매전자상거래 판매 상위 10대 국가 중 5위(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eMarketer, 2021).

한국은 이미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해 놓은 상태이나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다자간 FTA, 메가 FTA 및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와 같은 경제협력체 협상과정에서도 국경 간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FTA TRAD



FTA 동향

- 즉석면류(라면 등) 수출 역대 최대
- KOREA CUSTOMS WEEK 2023
-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출관세 연 6.6조 원 이상 절감
- 국가별 동향
- 원산지 포괄확인서 작성방법

E REPORT

즉석면류(라면 등) 수출 역대 최대



지난해('22년) 즉석면류(라면 등) 수출 8억 6천 2백만 달러(전년대비 12.0%↑) 역대 최대 실적이다.¹

코로나('20년~) 기간에도 지속적 증가세로 매년 ('14년~) 역대 최대 수출 기록 경신 중이다. '11년 2억 달러 → '19년 5억 달러 → '22년 8억 달러를 돌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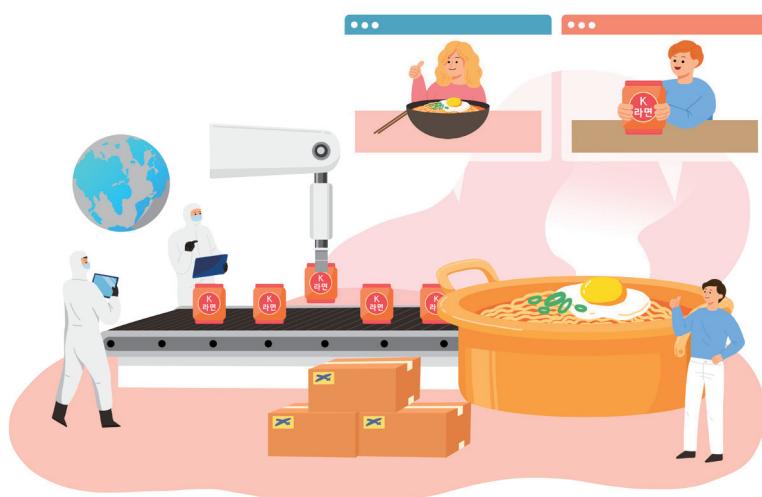
코로나에도 불구, 수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며 성장세가 가속화(5억 달러 돌파 이후 3년 만인 지난해 8억 달러 돌파)되었다.

올해 1~2월(누적) 수출 또한 동기간 최대인 1억 4천7백만 달러를 기록(전년동기대비 19.0%↑), 또 한번 기록 경신을 기대한다.

이 증가의 요인은 간편식 수요, 케이(K)푸드 인기, 문화상품 도약이다.

간편식 수요는 코로나 기간 자가격리·주택근무 등으로 가정 내에 머물며 저장 및 조리가 간편한 즉석면류 수요가 증가하였다.

* 연평균 수출액: '17~'19년(코로나 전) 4.8억 달러 → '20~'22년 (후) 7.7억 달러, 60.0%↑



¹ '22년 수입은 3천 3백만 달러로, 수출의 3.8% 수준

케이(K)푸드 인기는 한국 문화·음식의 세계적 인기 속에 영화, 방송 등을 통해 대표 케이(K) 푸드로 각인된 것이다.

문화상품 도약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세계적 시식 도전(fire noodle challenge)이 유행하는 등 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즉석면류 수출 규모는 지난해('22년) 수출 중량 26만 톤 역대 최대(전년대비 10.3%↑), 최근 10년 동안 약 4배 증가('12년 6.6만 톤 → '22년 25.7만 톤)하였다.

즉석면류 26만 톤은 봉지(120g) 포장 기준 약 21억 개에 해당, 면발 길이만 약 1억km로

지구를 2,670바퀴² 돌 수 있는 길이이다.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에 해당하는 수출 규모³이다.

품목으로는 일반 라면에서 짜장·불닭·할랄 (이슬람에서 허용한 식품) 라면까지, 최근에는 생면, 우동, 국수 등 제품 다양화로 인기몰이가 지속 중이다. 라면은 '22년 7억 6천5백만 달러(전년대비 13.5%↑) 수출로, 역대 최대에 이어 올해(1~2월)도 1억 3천2백만 달러(19.8%↑)로 최대 실적이다.

'14년 이후 매년 최대 수출액 경신, 대표 케이(K)푸드 상품으로 즉석면류 수출을 견인('22년 즉석면류 중 라면의 수출액 비중 89%)⁴하고 있다.

【즉석면류 수출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

	'19년	'20년	'21년	'22년	'23.1~2월
즉석면류	529 (10.8)	686 (29.8)	770 (12.2)	862 (12.0)	147 (19.0)
라면	467 (13.0)	604 (29.2)	674 (11.7)	765 (13.5)	132 (19.8)
기타 (생면, 우동 등)	62 (△3.8)	83 (34.1)	95 (15.6)	97 (1.7)	15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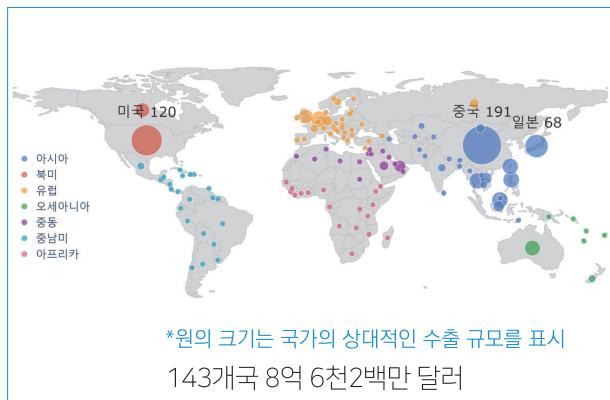
* 밑줄은 해당 기간별 역대 최대 수출액임

2 한 봉지의 면발 길이는 50m, 지구 둘레는 40,075km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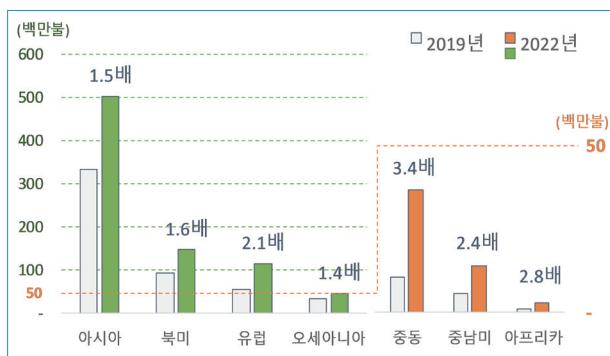
3 세계 순위: 1위 중국(46만 톤), 3위 인도네시아(18만 톤) [유엔 컨트레이드, '21년]

4 '22년 라면 수출량 22만 톤(18억 봉지), 면발 길이 9천만km(지구 2,245바퀴)

【'22년 수출국가 현황(백만 달러)】



【대륙별 수출액 변화('19년 → '22년, 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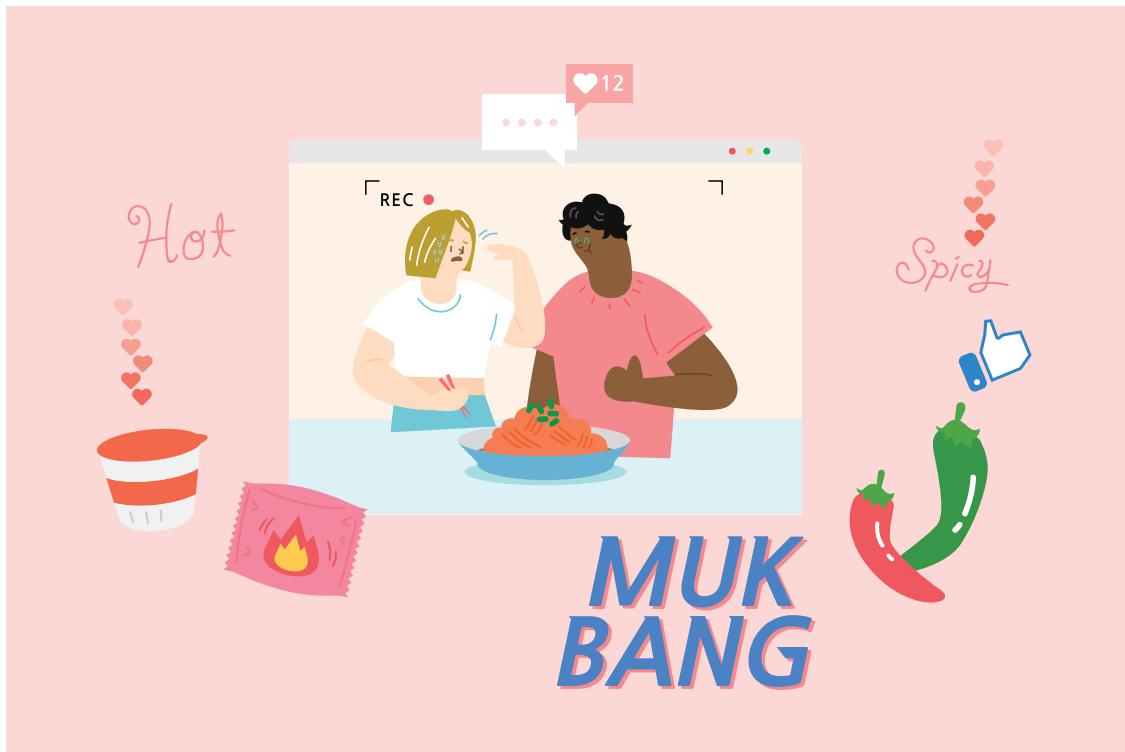
기타 사항은 '22년 9천7백만 달러(전년대비 1.7%↑) 수출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이다. 생면, 우동, 국수 등 다양한 상품 출시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라면 못지않은 수출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즉석면류가 수출되는 국가는 '22년 중국 > 미국 > 일본 등 세계 143개국으로 역대 최다 수출 되었다. 코로나('20년~) 시기에도 6개(가이아나, 감비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카보베르데) 나라에 최초 수출하는 등 매년 수출국이 확대되었다.*

*('19) 136개국 →('20) 137개국 →('21) 141개국 →('22) 143개국

특히 가이아나(중남미), 카보 베르데(아프리카)는 작년('22년)부터, 감비아(아프리카)는 올해(1~2월)부터 최초 수출(연간 1천 달러 이상)을 하였다. 아시아, 북미, 유럽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국 음식 불모지였던 중동, 아프리카 등의 수출도 늘며 세계 시장이 확대되었다.



【즉석면류 국가별 수출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

순위	'20년			'21년			'22년			'23년 1~2월		
	국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1위	중국	153	19.8	중국	155	1.4	중국	191	23.1	중국	34	56.1
2위	미국	121	54.2	미국	123	1.5	미국	120	△1.9	미국	20	△13.3
3위	일본	61	51.8	일본	73	19.4	일본	68	△7.3	일본	10	△0.8
4위	태국	28	38.3	대만	33	33.6	필리핀	34	6.1	네덜란드	10	331.5
5위	필리핀	25	64.1	필리핀	32	26.1	네덜란드	34	49.7	말레이시아	6	17.1
기타	132개국	298	20.8	136개국	354	17.6	138개국	416	14.1	103개국	68	10.3
	전체	686	29.8	전체	770	12.2	전체	862	12.0	전체	147	19.0

KOREA CUSTOMS WEEK 2023



4월 26일(수), 한국 관세청이 사상 처음으로 주최한 행사 「케이-커스텀즈 위크(K-Customs Week) 2023」(이하 KCW 2023)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하였다.

(라운드테이블/09:30~12:00) 전 세계 78개국 관세당국은 '국제 관세협력과 디지털 세관'을 주제로 각국의 정책 경험과 인식을 공유했으며, 57개국은 「서울 선언문(Seoul Declaration)」을 발표했다.

(개회식/14:00~14:30) 한덕수 국무총리, 존 베섹(John Bescec) 국제상공회의소 관세무역 위원회 의장, 19개국 주한 대사, 진기주 관세청

홍보대사 등 국내외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이 개최됐다.

(메인 세미나/14:40~16:00) 국제관세대학연합 사무국장, 세계무역원활화연맹 사무국장, 세계 관세기구 능력배양국장 등 전 세계 관세 분야 주요 전문가들이 참석한 메인 세미나가 개최됐다.

(양자회의/15:00~18:45) 윤태식 관세청장은 11개 관세당국(미국, 콜롬비아, 이스라엘, 과테말라 등),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12개 기관과 양자회의를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K-Customs Week 2023 홈페이지

(비즈니스 세션/09:00~18:00) ▲‘24개 해외 관세당국-28개 우리 기업’ 간 개별(1:1) 비즈니스 미팅이 시작되는 한편, ▲최첨단 관세행정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연구진 등이 KCW 2023 참여 관세당국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관세기술 홍보에 나섰다.

(환영 만찬/19:00~21:00) 공식 환영 만찬에서는 전통국악·케이팝(K-pop) 공연 등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준비되었다.

4월 27일(목) 이틀째 이어지는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 2023에서는,(주요 프로그램) 26일(수)에 이어 ‘해외 관세당국-우리 기업’ 간 개별(1:1)

비즈니스 미팅 및 관세기술 전시회가 지속 진행 되는 한편, 7개 세미나*가 개최됐다.

관세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 관세당국은 「마약 밀수 단속에 관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밀수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7일(목), 22개 관세당국 및 유럽연합마약범죄사무소, 아프리카대륙자유 무역지대사무국 등 4개 기관과 양자회의를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 * ▲ 관세행정 혁신과 신기술(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 관세행정 현대화와 국제기구 역할
- ▲ 무역원활화와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국제 관세협력,
- ▲ 관세당국 간 수출입/원산지 정보교환 활성화, ▲전자상거래 증가에 대응한 정책과제,
-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외환거래, 환경범죄 단속 등을 위한 국제 관세협력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출관세 연 6.6조 원 이상 절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한·미, 한·EU, 한·중, 한·인도, 한·베트남, 한·아세안 6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2021년 1년간 약 58억 달러(한화 약 6.6조 원)의 수출관세 절감 혜택을 누렸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 이래 약 20년간 총 59개국(전 세계 GDP의 85%)과 FTA를 체결한 시점에서, FTA의 체결·활용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실증분석한 첫 사례로, 이를 통해 도출된 연간 수출관세 절감액 58억 달러(6.6조 원)은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기술개발 등을 통해 원가를 1.3% 절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이며, 정부가 FTA 체결·이행·활용을 위해 투입한 연간예산(2022년 기준 199억 원)과 비교해도 약 330배에 달한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FTA에 따른 시장개방이 당사국들 간 무역·투자를 촉진할 뿐 아니라 우리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향상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며, “이번에 도출된 관세 절감액은 2021년도에 주요 6개 FTA 활용만으로 얻은 성과인 만큼, 일본(RCEP, 2022년 2월 발효), 이스라엘(2022년 12월 발효) 등과의 FTA가 추가로 발효된 현재 기준 전체 FTA 활용으로 얻는 수출관세 절감 혜택은 이보다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이어서 노 실장은 “앞으로는 FTA 활용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가적인 관세 절감 가능성이 큰 지역(중국, 아세안, 베트남 등)과 품목(섬유, 농림수산물 등)에 대한 타겟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수출 애로로 작용하는 통관절차, 해외인증 등의 비관세장벽 해소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별 동향
EU, CBAM 법안 최종 승인... 10월부터 시행



2023년 4월 25일, EU-27 정상들은 탄소국경조정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를 최종 승인했다. CBAM은 역내로 제품 수입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인증서를 구매, 제출하는 제도로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막고 2050년 그린딜 달성을 위해 EU가 야심 차게 마련한 Fit For 55* 정책 패키지의 핵심 법안 중 하나이다.

*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패키지로 총 13개 법안으로 구성

이 법안은 벨기에·불가리아(기권), 폴란드(반대)를 제외한 24개국 정상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이사회를 통과했으며, 유럽의회 역시 4월 18일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됨으로써 EU 관보에 공식 게재될 예정이다. 법안은 관보 게재 후 이튿날부터 발효된다.

- (입법 추진 경과) 집행위 초안 발표('21.7.) → 이사회 일반적 접근 채택('22.3.) → 의회 입장 채택('22.6.) → 입법기관 간 3자 합의 도출('22.12.18.) → 의회 환경위 합의안 채택('23.2.8.) → 의회 본회의 승인('23.4.18.) → 이사회 승인(4.25.) → 관보 게재(예정) → 발효(예정)

▶ CBAM 적용 범위

CBAM 적용 대상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총 6개 품목이다. 최종 법안에는 집행위 초안 대비 수소 등 일부 하위품목이 추가됐으며, 철강의 경우 특정 전구체 및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도 신규 포함됐다. 수소의 경우 현재 EU의 수입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이나 그린딜 등 유럽 기후목표 이행으로 재생가능 수소 사용 급증이 예상돼 수소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초기단계부터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든 역외국이 규제 대상국이지만 EU-ETS가 적용 중이거나 연계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와 부징겐(Büsingen), 헬리골란드(Heligoland), 리비뇨(Livigno), 세우타(Ceuta), 멜리야(Melilla) 등 EU령 지역은 적용이 면제된다.

▶ CBAM 절차

규제 적용 대상 제품을 수입하려는 수입자는 ① 공인 수입신고자 지위를 사전 획득해야 하며, ② CBAM인증서를 구매하고 ③ 매년 5월 31일까지 CBAM인증서 및 신고서 제출 후 ④ 6월 30일까지 잔여 인증서를 청산해야 한다.

① 공인 수입신고자 신청: 수입신고자 신청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가능하며, 수입신고자가 소재한 관할당국의 CBAM 등록소(Registry)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다. CBAM등록소는 수입자 계정 및 인증서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종합 데이터베이스로 수입신고자 및 제조사 정보, EORI 번호, CBAM 계정번호, 인증서의 가격 및 구매, 환불·취소일자 등의 정보들이 기록된다.

수입신고자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수입자 연락처 및 EORI 번호, 수입품 정보(수량·가격), 역내 경제활동 정보, 5년간의 범죄기록증명서, 재정 상황 증빙 서류 등이며, 신청을 받은 관할당국은 여타 회원국 및 집행위와 15일(근무일 기준) 내 수입자의 과거 범죄기록, 재정건전성 등을 심사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 시, 수입신고자의 고유계정이 생성되며 CBAM 등록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1개 회원국 내 수입신고자 지위가 승인되는 경우, 전 EU 역내에 통용된다.

② CBAM 인증서 구매: 수입신고자는 전년도 수입품의 내재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중앙 플랫폼(common central platform, 인증서 거래를 담당)에서 구매해야 하며, 인증서 1개당 온실가스 배출량 1톤이 적용된다. 인증서 가격은 ETS배출권 경매 종가의 주당 평균가가 책정되며, 매주 첫 근무일에 EU관보에 가격이 게시될 예정이다. 인증서는 역내 적용되는 EU-ETS 무상할당 수준이 반영돼 무상할당이 제공되는 수량만큼 CBAM 인증서 수가 차감된다. 참고로 ETS 무상할당제는 2026년부터 연도별 점진 감축된 후 2034년을 기점으로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자료: EU이사회, EU집행위, Euractiv, Politico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2&pagePerCnt=10&SITE_NO=3&MENU_ID=70&CONTENTS_NO=1&bb_sGbn=00&bbsSn=244%2C322%2C245%2C484%2C246%2C444%2C506%2C242%2C505&pNttSn=202244&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IndustCd=&sSearchVal=%EA%B4%80%EC%84%B8%EC%B2%AD%C2%B7%EA%B5%AD%EC%A0%9C%EC%9B%90%EC%82%B0%EC%A7%80%EC%A0%95%EB%B3%B4%EC%9B%90)



원산지 포괄확인서 작성방법

원산지(포괄)확인서 의의

-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
-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은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 가능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사용

필요성

-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료 및 최종제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절차를 마련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 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원산지증명 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함

작성주체

- 수출업체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나 부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업체가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해당 재료가 국내산인지 역외산인지 판단하여 관련서식에 의거 작성

작성절차

1	2	3	4	5	6	7
재료내역 확인용 서류준비 (BOM, Part List 등)	부품의 구입경로 확인	부품별 HS Code 확인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원산지 판단	원산지 확인서 작성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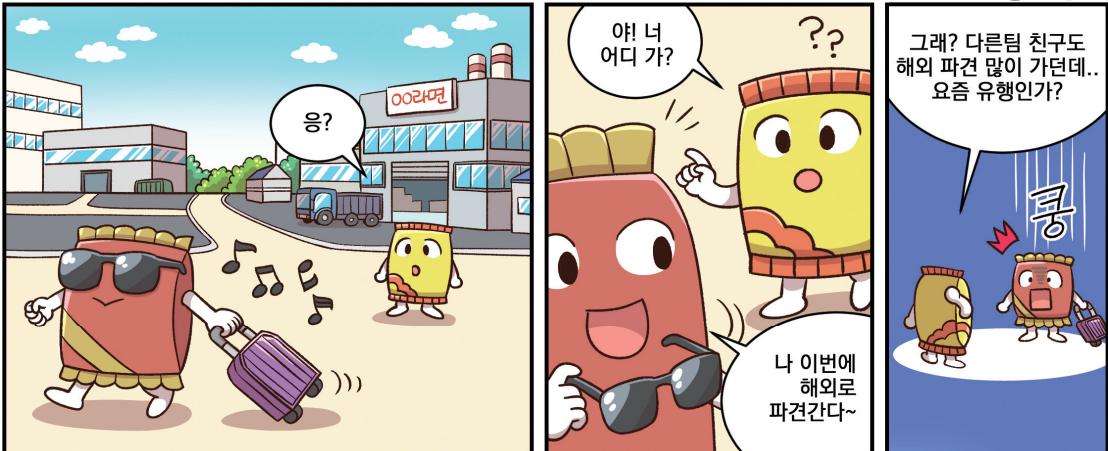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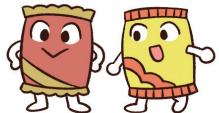
유통경로

- 수출자는 공급받은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 생산자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을 요청하게 되고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바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함
- 요청받은 생산자는 해당 FTA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 후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근거규정 및 서식

-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자료: FTA 포털 내 FTA 활용제도





FTA TRAD



FTA EXPERTS

RCEP과 CPTPP 누적규정 활용 가능성

진병진 | 국립창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FTA 환경에서 관세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

고태진 | 경인여대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관세사(관세법인 한림)·경영학 박사

E REPORT

RCEP과 CPTPP 누적규정 활용 가능성



진병진
국립창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시작된 한국의 동시다발적이고 포괄적인 FTA 체결 노력은 거대경제권 및 자원부국을 협상의 파트너로 삼는 전략적 접근과 맞물려, 20여년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어 내었다. 하지만 그간의 FTA 확장정책이 대부분 1개의 국가를 체약상대국으로 하는 양자협정(Bilateral Agreement) 위주로 진행되어 옴에 따라, 협정의 수가 늘어날수록 이와 비례하여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이 가중되게 되어 활용과정에서 어려움을 발생시켰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하나의 협정에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여 특혜영역의 확대는 가능하면서도, 전체 체약국을 대상으로 단일 원산지규정(a single set of rules of origin)이 적용되는 Mega FTA가 그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중국 및 일본 등 15개국이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었고, 같은 해 3월에는 일본을 포함하여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본격적인 Mega FTA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진행 중에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두 협정은 공통적으로 체약국 내에서의 생산이나 체약국에서 만들어진 원부자재의 사용을 통해 원산지 자격이 보다 용이하게 충족되는 누적규정(Cumulation Rules)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할 경우 협정의 활용도 또한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두 협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누적의 허용범위와 방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RCEP에서는 상품이나 재료의 생산 과정에 원산지규정을 충족한 체약국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누적을 허용하는 다자누적(Multilateral Cumulation)이 적용되고 있지만, CPTPP에서는 원산지재료는 물론이고 역내에서 비원산지 재료를 활용하여 생산 공정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까지 누적이 허용되는 완전누적(Full Cumulation)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협정의 누적규정은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역내가치사슬(RVC)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는 체약국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생산망의 활용과 체약국에서의 원부자재 수급이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자격의 충족 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두 협정 체약국들과 긴밀한 원부자재 교역이 이루어져야 하고, 해외직접투자(FDI)를 통해 구축된 생산시설이 체약국 내에 다수 포진되어 있을 경우 그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두 협정 체약국에 대한 투자와 교역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누적규정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해 보았다.

2 투자현황으로 본 활용 가능성

FDI는 인건비 등 생산비용 절감, 현지시장 개척, 핵심 자원이나 역량의 확보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목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FDI는 투자국과 피투자국 간에 일정 수준의 가치사슬(Value Chain)을 형성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각 협정 체약국에 대한 투자 현황을 통해 누적규정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은,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RVC의 활용이 원산지자격의 획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특히, 생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RCEP과 CPTPP의 누적규정 활용 가능성을 유추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는 생산과정에서 누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체약국에서 수급된 재료(상품)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가 입증되어야 하며, 이러한 입증은 생산 공정 및 원부자재 투입내역 등 기업의 민감 자료가 공유될 수 있는 특수 관계자 간에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에 근거하여 한국수출입은행 해외 경제연구소가 제공하고 있는 해외투자통계¹를 통해 두 협정 체약국에 대한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실시한 전체 FDI 중 법인수와 투자액을 기준으로 각각 59.65%와 31.66%가 RCEP 체약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특히, 누적의 활용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법인수를 기준으로 75.99%, 투자액을 기준으로는 54.58%가 RCEP 체약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볼 때 RCEP 체약국들의 경우 한국 기업들의 생산목적형 투자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들

RVC는 누적규정의 활용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반면에 CPTPP 체약국들에 대해서는 법인수를 기준으로 RCEP의 1/3 수준, 투자액을 기준으로는 1/2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져 있으며, 누적규정의 활용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 역시 법인수를 기준으로 RCEP 참가국에 대한 투자 대비 1/5, 투자액을 기준으로는 1/4을 상회하는데 그쳐 RCEP에 비해 누적규정 활용 가능성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추가적인 참가국 확대가 RCEP에 비해 용이한 CPTPP의 특성² 때문에 중국 등 3개국이 이미 가입을 신청 중에 있고,³ 미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이 가입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향후 CPTPP의 RVC 수준은 RCEP과 유사하거나 상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누적규정의 활용 가능성 또한 확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 <http://keri.koreaexim.go.kr/site/main/index007>

2 추가 가입의 허용 방식에 있어 RCEP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후 신규 가입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CPTPP는 가입 작업반(working group)을 설치하여 해당 절차 완료 후 최종적인 가입조건 합의서 기탁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가입이 완료되도록 하고 있어 신규 가입국 확장이 RCEP 보다 용이하다.

3 가입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국가는 영국, 중국, 대만으로 이 중 영국은 가입에 실질적인 제약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중국은 CPTPP의 수준 높은 규범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대만 또한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표방하고 있어 실제 가입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승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표 1] RCEP 및 CPTPP 체약국에 대한 FDI 현황(2021년)

(단위 : 개사, 백만불, %)

구분	법인수 기준			투자액 기준		
	전산업(a)	제조업(b)	비중(b/a)	전산업(c)	제조업(d)	비중(d/c)
RCEP	50,990 (59.65)	28,059 (75.99)	55.03	208,249.5 (31.66)	107,722.0 (54.58)	51.73
CPTPP	17,059 (19.96)	6,663 (18.05)	39.06	119,451.4 (18.16)	33,058.2 (16.75)	27.68
CPTPP+3	46,594 (54.51)	25,912 (70.18)	55.61	222,797.9 (33.87)	101,648.7 (51.50)	45.63

주 : ()내는 한국의 대세계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③ 교역현황으로 본 활용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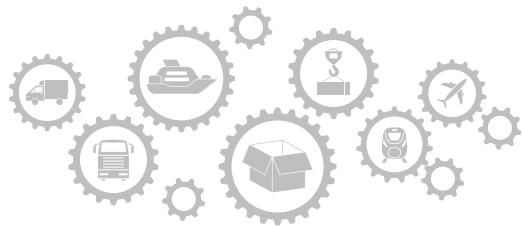
누적규정의 활용 가능성을 교역동향을 통해 확인하기 위해서는 협정 참가국들 간에 이루어지는 원부자재의 교역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협정 참가국들과의 교역에 있어 원부자재로 사용될 수 있는 1차 산품과 중간재의 교역량이 많을수록 누적규정이 활용 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국의 교역은 전통적으로 소비재나 자본재 보다 원부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2021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수출입의 70% 이상이 원부자재에 집중되어 있다. RCEP 및 CPTPP 체약국과의 교역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한국의 전체 교역 중 절반에 가까운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RCEP의 경우 2021년을 기준으로 수출의 81.36%와 수입의 68.49%가 원부자재 교역이며, 1차 산품 수출의 76.36%와 중간재 수출의 54.15%가 이를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누적규정의 활용 가능성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CPTPP 체약국과의 교역 또한 전체 교역량은 RCEP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거래되는 상품 유형 중 원부자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수출은 약 80%가 원부자재에 집중되어 있고 수입은 70% 이상이 원부자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11개국인 CPTPP의 경우에도 누적규정의 활용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앞서 살펴본 것처럼 CPTPP 참여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보면 누적규정의 활용 가치 또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2] 전체 교역 대비 원부자재 교역비중(2021년)

(단위 : %)

구분	1차 산품		중간재		원부자재	
	수출(a)	수입(b)	수출(a*)	수입(b*)	수출(a+a*)	수입(b+b*)
전세계	0.61	20.81	72.22	50.89	72.83	71.70
RCEP	0.96	10.76	80.40	57.73	81.36	68.49
CPTPP	0.79	24.24	78.86	49.25	79.65	73.49
CPTPP+3	0.87	12.85	79.31	58.28	80.18	71.13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교역통계(<http://stat.kita.net/main.screen>)

4 나가는 말

RCEP이나 CPTPP와 같이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Mega FTA는 단순히 협정의 규모가 크다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며, 협정의 규모가 크다고 반드시 활용가치가 높은 협정이라고도 할 수 없다. 또한 FTA와 같은 특혜무역 협정은 체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본연의 목표일 것이다.

따라서 RCEP과 CPTPP 또한 우리가 적극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이들 협정을 어떻게 활용하여 경제적 성과 창출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에 집중되어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다수의 국가를 하나의 특혜영역으로 인정하고, 모든 체약국에 대한 누적을 허용하고 있는 두 협정의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하나의 국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고 생산을 거쳐 완제품을 수출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무역은 RVC를 활용하여 여러 국가에서 부품과 중간재를 생산하고 이를 사용하여 생산한 완제품을 다시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따라서 RCEP이나 CPTPP와 같이 한국의 투자가 집중되어 있고 이들 지역과 이루어지는 교역의 대부분이 원부자재인 경우 누적규정의 활용을 통한 RVC의 효율화 제고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다만, 두 협정이 적용하고 있는 누적규정의 활용을 통해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RVC의 가치 증대는 물론이고 경제적 효과도 발생시킬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원산지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FTA 환경에서 관세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



고태진

경인여대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관세사(관세법인 한림)
경영학 박사



1 들어가기

관세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된다.¹ 그래서 수출이나 반송²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관세는 소비세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 만큼 물건을 직접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을 내게 하는 게 제일 낫겠지만, 시중의 그 수많은 다양한

물품에 대해 일일이 소비자에게 관세를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게 하면 유통 질서가 복잡하게 될 것이다. 관세 기술상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그래서 물건이 수입될 때는 그 물건이 수입국에서 그 어떤 소비자에게 사용될 것으로 일단 보고, 수입자로부터 선제적으로

1 관세법 제14조

2 관세법에서의 '반송'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것과 차이가 있다. 관세법에서는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이 수입통관되지 않고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머물다 외국으로 다시 나가는 것을 반송이라고 한다. 즉, 수입통관된 물건을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수출자에게 보내는 것은 관세법상 반송이 아니다.

수입통관 과정에서 관세 등 세금을 납부케 하는 방법으로 세금의 누수를 막고 있다.

문제는 국내에서 소비되고 사용될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여 세금을 거둬들였는데, 막상 그러한 소비 등이 없이 해외로 다시 수출되었을 때이다. 한국은 무역으로 절대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나라의 물건 보다 매력적인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빼어난 R&D와 기술력뿐만 아니라, 완성재를 만들 때 들어가는 부분품, 중간재, 원재료들도 함께 뛰어난 품질과 경쟁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경쟁력을 갖춘 소재 등이 모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면 고민이 덜할 수 있겠지만 불가능하다. 심지어 한 나라 안에서 최고의 물건을 모두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역으로 교류를 하는 것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리카도는 200년 전에 '비교우위론'으로 설명해줬다. 하물며 쓸모 있는 자원이라곤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원재료 등을 수입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수출하기 위해 만든 제품에 들어간 관세를 내고 수입된 수많은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과다납부한 셈이 된다. 따라서 잘못 거둬들였던 세금은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관세환급제도'라고 한다.

'관세환급제도'는 관점에 따라서 수출보조금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WTO는 수출품에 소요된 수입 중간재에 대한 관세 환급이나 면제는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에서 금지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주요 경쟁국인 일본, 중국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보편적 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환급제도는 한-EU FTA 협상 당시 막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한 바 있다. 얼핏 상관없어 보이는 FTA와 관세환급제도인데 왜 EU는 이것에 그리도 집착하여 협정 결렬까지 생각했던 것일까.



2 우리나라의 관세환급제도

1. 개념 정의

관세환급은 과세당국인 세관에서 징수한 관세 등을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에 의한 과오납 환급 및 계약상이물품 환급 그리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과오납 환급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납부한 관세가 관세율 착오, 과세가격 착오 등으로 인해 납부해야 할 액수보다 더 많이 납부된 경우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상이물품 환급은 수입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달라 다시 수출하거나 폐기되었을 시 수입신고수리 1년 이내인 경우 관세 등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제도는 관세를 이미 납부한 원재료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중간재 포함)을 생산하고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용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는 제도이다. 지난 1975년부터

우리나라 수출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활발한 수출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2. 관세환급제도의 발전

관세환급제도 이전에는 사전면세제도를 시행하였다. 사전면세제도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해 관세를 사전에 면세해 주는 제도로 수출용으로 수입되는 원재료에 대해서 1년 이내에 수출 물품에 사용한다는 '조건부'로 관세를 일시 면제하여 수출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역 규모가 급증하고 국내 제조산업이 발달하면서 산업구조 또한 면세수입원재료를 국내에서 여러 단계의 제조, 가공을 거쳐 수출하는 복잡한 방식으로 변모하게 되었고 이러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즉 사전면세제도는 교역 규모가 작은 단순가공무역 정도에 알맞은 제도로, 무역 규모가 크고 고도화된 산업사회에는 맞지 않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사전면세제도가 사라지게 되었고, 이를 관세환급제도로 대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관세환급의 목적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을 실시하는 목적은, 환급특례법 제1조에서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수출물품의 국제경쟁력 강화

관세환급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부담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수출의 경우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설치한 관세장벽을 제거하여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하는 수출지원 정책이다.

2) 소비지 과세원칙이라는 이론적 배경의 현실 구현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은 소비지 과세주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지 과세주의는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곳에서 소비세, 즉 관세를 부과한다는 원칙이다. 수출되어 우리나라에서

소비될 여지가 없는 물품에 대해 부과된 관세는 다시 돌려줘야 한다.

3) 국산원재료의 사용 촉진

관세환급제도는 먼저 납부한 관세를 수출한 이후에 다시 돌려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수출업체로서는 금융비용과 함께 환급을 신청하는데 있어 행정비용도 발생한다. 따라서 수출업체가 국산원재료를 사용한다면 이러한 금융비용 및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원재료보다는 국산원재료를 사용하려는 유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는 개별환급제도에 비해 원재료의 국산화를 촉진시키는 데 더욱 효과적이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이미 납부한 관세액에 상관없이 수출품목(HS)별로 일정금액을 사전에 정해 환급해 주기 때문에,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국산원재료를 많이 사용할수록 관세환급을 더 받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 WTO 국제협정에서 허용

WTO 보조금협정 제1조 제1항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there is a financial contribution by a government or any public body within the territory of a Member)'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보조금협정 제3조 제1항에는 농업협정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금지보조금의 유형을 규정하고, 부속서에 제시된 보조금 예시목록에 나열된 것을 금지보조금에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보조금협정 부속서에서는 12가지 유형의 수출 보조금을 예시로써 금지하고 있다.

이중 (i) 항목에는 수출상품의 생산에 소비된 수입 투입요소에 부과된 수준을 초과한 수입 과징금의 경감 또는 환급이 금지보조금에 해당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수출품에 투입된 원재료 등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데 있어 수출상품의 생산에 소요된 수입 투입요소에 부과된 관세를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관세환급은 해당 규정 안에서 허용 되는 수출지원 정책이 될 수 있다.

[표 1] WTO 보조금 협정 부속서1

- (i) 수출상품의 생산에 소비된(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참작하여) 수입 투입요소에 부과된 수입과징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감 또는 환급. 단, 기업이 수입 투입요소 대신에 그와 동질, 동일한 성격의 국내시장 투입요소를 대체품으로 일정량 사용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수입과 그에 상응하는 수출이 2년을 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지면 이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관세환급의 종류와 특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는 크게 '개별환급제도'와 '간이정액환급제도'로 나눌 수 있다. 개별환급제도는 수출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가 있다면 이를 확인하여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개별환급제도는 수출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만큼을 환급해 준다는 점에서 관세의 성격을 정확히 살린 원칙적 관세환급제도라 할 수 있다. 반면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수출금액에 비례해서 일정한 금액을 관세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정액환급제도는 정확한 환급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과소 또는 과다 환급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부정확한 방법임에도 정액환급제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개별환급 진행 시 관세환급 행정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즉 정액환급 제도란 수출되는 물품의 금액 등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급액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에 비해 개별환급제도는 수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각각의 원재료별 소요량을 산출하고 각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한 관세 등을 수입신고필증 등에 의해 계산하여 환급하는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환급할 수는

있지만, 수출품에 대한 원재료별 소요량 및 환급액 계산이 쉽지 않으며, 환급 관련 서류가 복잡하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로 수출품 제조에 사용된 실제 소요 원재료량에 근거하지 않아 과다환급의 발생소지를 항상 내포하고 있으며, 상기한 WTO 보조금 협정 위반으로 통상마찰의 여지가 있다. 특히 FTA가 확산된 요즘에는 그러한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될 위험이 있다.

3 FTA 환경에서의 관세환급제도

수출품에 들어간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이나 면제는 기술한 바와 같이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에서 금지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 간 서로 다른 소비세의 차이를 조정함으로써 국내외 물품에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EU와 미국 등이 체결한 FTA에서는 관세환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기도 하다. EU는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에서도 이 이유를 들어 막바지까지 협상 타결의 최대 난제로 떠오른 바 있다.

1. FTA 협정별 관세환급제도

관세환급제도에 대해서는 FTA마다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관세환급을 완전 금지하거나 반대로 허용한다고 명확히 기술하기도 하고, 일정기간 동안만 환급을 허용하거나 일정 비율로 제한하기도 한다. 물론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아니한 협정도 있기 때문에 대략 4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관세환급제도 자체를 언급하지 않은 협정은 관세환급과 FTA 간 관련성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두 협정국 간 교역에서 특별한 영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언급 자체가 없는 협정도 이행과정 중 관세환급 제도로 두 나라 교역에 불공정이나 제3국의 수혜 발생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부작용이 불거지면 개정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정이 없는 협정이라 할지라도 관세환급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EU의 FTA도 일단 현행 환급제도를 유지하기로는 했다. 그러나 협정 발효 5년 후부터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환급을 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조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표 2] 한-EU FTA 제14조(관세의 환급 또는 면제) 일부

1.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5년 후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자신들의 관세 환급 및 역내가공 제도를 공동으로 검토한다. 발효 1년 후,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양 당사자는 자신들의 관세환급 및 역내가공 제도의 운영에 관해 이용가능한 정보와 다음과 같은 상세한 통계를 상호적으로 교환한다.
2. 위 검토의 개시 이후 언제나, 당사자는 그 당사자의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제품의 국내 생산자에 대하여 경쟁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이 협정 발효 이후의 원자재 조달 방식의 변화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 특정 제품에 대한 관세환급 및 역내가공 제도에 대해 가능한 제한을 논의하기 위해 다른 쪽 당사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의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 문제는 제14장(분쟁해결) 제14.5조(중재패널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패널로서 긴급사건으로 구속력 있는 중재를 통해 결정된다. 패널이 제2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정하는 경우,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자는 판정으로부터 통상적으로 90일 이내,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15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환급될 수 있는 그 제품의 비원산지 재료에 대한 최대 관세율을 5퍼센트로 제한한다.

[표 3] 주요 FTA의 관세환급 규정

구분	PANEURO	EU-남아공	한-EU 미-이스라엘 APTA	EU-멕시코	EU-칠레	미-칠레	한-칠레 한-아세안 한-EFTA 중국-인도
관세환급 규정	금지	언급 없음	허용	2년 후 불허	4년 후 불허	12년 후 불허	언급 없음

인용: UNCTAD, 'Multilateralism and Regionalism : The New Interface', 2005. / A EStevadeordal and K. Suominen(2013)

2. 관세환급제도 유지의 경제효과

1) 공정성과 역(逆)수입의 문제

FTA 특혜관세와 관세환급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국내용과 수출품 사이에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 예를 들어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 같은 회사가 요즘 화두가 되는 이차전지를 만들기 위해 그 원재료로 음극재 원료인 비흑연성 탄소(HSK2803.00-9090)를 수입하고 관세를 내야 한다고 가정해 보자.

완성된 이차전지는 전기차를 만드는 미국의 현대차 공장으로 수출한다. 이때 이차전지를 만들 때 들어간 수입 비흑연성 탄소에 대해 과세된 세금은 관세환급제도에 따라 다시 돌려받게 된다³. 그런데 동일한 과정으로 제조된 이차전지가 미국이 아닌 국내 아산 현대차 공장으로 납품된다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온다. 국내에서 제조되어 ‘국내’ 대리점을 통해 판매된 전기차는 국내에서 소비된 것이므로 당연히 관세환급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즉 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다시 말해, 중국에서 이차전지 원료인 흑연을 수입하면서 관세 5.5%를 납부한 이후, 완성된

이차전지가 위와 같이 국내에도 팔리고 FTA 체결국인 미국시장에도 수출판매되었다고 해보자. 만약 관세환급제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한국과 미국에서의 관세는 차이가 없으므로 시장에 나오는 판매가격 역시도 5.5%의 관세가 포함되어 똑같을 것이다.

그런데 관세환급을 허용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한-미 FTA에 의해 미국에 수출되는 이차전지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관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료인 흑연을 중국에서 수입할 때 한국 세관에 납부했던 관세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 판매되는 이차전지에 대해서는 흑연 수입관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이차전지는 국내 판매분에 비해 관세환급분만큼 싸게 판매할 수 있게 되어 불공정한 결과가 나온다. 이는 한국에서 생산된 이차전지를 미국에 수출한 뒤 다시 국내로 ‘역(逆)수입’하는 빌미를 제공한다.

다만 역수입에는 두 나라간 거리가 ‘지리적으로 가까울 때’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단순하게 관세적 측면만을 보면 역수입이 이론적으로 무조건 싸다. 그러나 무역 현실에서는 중간에 물류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 비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³ 물론 정부에서 알아서 계산된 금액을 돌려주면 좋겠으나, 수많은 케이스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해서 세관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환급을 받는다.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비가 관세환급분보다 작을 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FTA 환경에서 관세환급을 인정하게 되면 자국(自國)에서 수출한 물품이 다시 수입될 수 있다는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2) 제3국의 무임승차 문제

또 다른 문제는 제3국의 무임승차 가능성이다. FTA는 협정 체결국의 최우선 이익을 전제로 하는 조약이다. 그런데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FTA 당사자가 아닌 제3자(사례에서 '중국')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중국에서 수입하여 관세 지불을 완료한 원재료를 투입해 완성된 이차전지를 수출하고 관세환급까지 받는다면, 해당 기업 이차전지의 수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그 뒤에서 제3자인 중국이 조용히 웃고 있는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굳이 국산이나 미국산의 역내산 원료를 사용할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 결국 FTA를 통해 얻은 많은 경제적 이득이 협정 체결 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FTA 협상 당시 EU가 제3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중간재를 이용해 EU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국과 EU는 양국의 FTA 체결을 원했기에 일정상황에서 환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⁴을 제정하여 협상 타결에 이르렀다.

3) 대체환급의 문제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물품 생산에 사용된 국산원재료와 수입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이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고, 생산과정에서 국산원재료와 수입원재료를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입된 원재료가 수출재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4] 관세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생략

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4 한-EU FTA 협정문 '제14조 관세의 환급 또는 면제'

즉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질과 규격 등이 동일해 물리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때는 이를 굳이 국산과 수입산으로 나누어 각각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 무리해서 비용과 시스템을 투입하는 것은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환급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 이것은 국내규정 뿐만 아니라 WTO 보조금협정과 교토협약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표 5] WTO 보조금협정 부속서3

- 환급제도는 투입요소가 다른 상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고 그리고 그 다른 상품의 수출이 수입된 투입요소를 대체하는 투입요소와 동일한 품질과 특성을 갖는 국내산 투입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수입요소에 대한 수입과징금의 환불이나 환급을 고려할 수 있다.
- 환급이 청구되는 특정 수입선적분을 수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체환급 규정의 존재는 그 자체가 보조금을 수반한다고 간주되지 아니한다.

[표 6] 교토협약 특별부속서 F

제3장(환급)

- 동종물품(equivalent goods)이라 함은 관세환급 절차하에서 대체되는 물품과 성상·품질 및 기술적 특성이 동일한 내국 또는 수출을 말한다.
- 국내법령은 수입관세 및 제세를 부담한 물품이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동종물품으로 대체되었을 경우의 환급절차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런데 FTA 등 지역무역협정이 확대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원래 대체환급재료 규정은 지불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밟아야 할 여러 신경과 행정비용 등의 이유로 동일 질과 규격 이라면 차라리 국산원재료를 사용할 유인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 나라와의 동시다발적 FTA 발효에서는 국산과 외국산 간 대체 여부 문제가 아닌

'수입원재료들 간'의 서로 다른 관세율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즉 대체 가능한 원재료가 협정별로 관세율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어 제품 생산에 투입되어 수출되거나 내수판매 되었을 때 관세환급 신청은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제일 높은 상대국에서 수입된 원재료에 대해 그 빈도가 높게 될 공산이 커진다. 환급액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는 과다환급의 전형이며 WTO 보조금협정 위반 가능성뿐만 아니라 국산원재료 사용 촉진과도 거리가 멀다. FTA에도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구분해서 제품 생산에 투입하는 것이 상당한 비용이 드는 대체재료에 대해서는 회계적으로 구분하여 원산지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산지특례기준이 있다. 다만 물리적으로 구분했을 때보다 더 많은 제품이 원산지의 지위를 갖지 않도록 하고 있다. 관세환급이 과다하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과 대칭되는 내용이다.

현재 국내외 규정에서는 국산원재료와 외국산

원재료 간의 대체성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즉 관세율이 다른 '외국산원재료 간'의 대체성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는 곧 과다환급과 연결되며, 이내 수출보조금으로 해석되어 WTO 보조금협정 위반으로 통상마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4) 간이정액환급제도의 과다환급 가능성

관세의 조세법적 특성만을 고집하는 관세환급 원칙은 그 과정의 복잡성으로 중소기업에게 가혹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해 나온 정액환급 제도는 제조수출업자가 수출만 하면 투입된 원재료가 국내산이든 수입산이든 가리지 않고

[표 7] [참고] 한-EU FTA 제1절 원산지 규정

제11조 (재료 구분 회계)

-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가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러한 재료는 보관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된다.
-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의 재고를 구분하여 보관하는데 상당한 비용 또는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그 생산자는 재고의 관리를 위하여 이른바, "구분 회계"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이 방법은 그 제품이 생산된 당사자에서 적용 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되고 적용된다.
- 이 방법은 특정 참조기간 동안 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었을 경우보다 **더 많은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당사자는 이 조에서 규정된 재고관리 기법의 적용이 관세당국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세당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건하에 그러한 승인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세당국은 승인의 이용을 감독하고 수혜자가 승인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 의정서에 규정된 그 밖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언제든지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지원해 주는 대표적 중소 제조수출기업 지원책이다. 동시에 국산원재료 사용 촉진책이기도 하다.

그런데 FTA가 확산되면서 과다환급의 위험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 즉 제품에 투입된 원재료가 모두 FTA 체결국에서 수입되었고 협정세율 또한 모두 관세철폐되어 납부한 관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료를 갖고 만들어진 제품이 수출되면 이 제도를 통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어불성설이다. 낸 돈이 없는데 돌려받는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3. 관세환급제도 유지의 필요성

이론적으로 볼 때 EU 등의 주장은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러나 오히려 EU의 주장은 불공정 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EU는 27개의 여러 나라가 합쳐져 있는 연합체

이고 미국 또한 덩어리 자체가 매우 큰 나라 이기 때문이다. 경제규모가 워낙 크고 역내 중간재 조달이 쉽다. 환급 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는 말이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작고 중간재 산업이 발달되지 않은 나라는 상황이 다르다.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 중간재를 역외국을 포함한 다른 다양한 나라로부터 수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제3국의 중간재 등의 사용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환급 또한 금지시킨다면 이중으로 중간재를 제한하는 것으로 옥상옥이 될 수 있기도 하다.

글로벌 가치사슬로 인해 여러 나라를 넘나들다 수입되는 중간재에 대한 환급 제한은 무역 확대에 부정적 효과로 작동할 수 있다. 한-EU FTA 협상에서도 우리 측은 유럽시장에서 우리의 경쟁상대인 일본, 중국 등이 관세환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폐지하게 되면 FTA 관세철폐 효과가 떨어져 양자 교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4 마무리

지금까지 FTA와 관세환급이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해 다방면으로 살펴보았다.

관세환급제도는 WTO 보조금협정 등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된 규정이다. 그러나 전 세계가 동일한 최혜국대우를 하는 것이 아닌 체결당사국에만 특혜를 주는 FTA에서는 문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문제의 소지를 미리 파악해 제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지금의 관세행정에 드라이브를 좀 더 강력히 걸어 FTA 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관세환급의 고민과 행정비용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간이정액환급 제도의 개선도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정액 환급 대상품목을 정할 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주로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원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의 경우라면 대상품목에서 제외하려는 노력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국산원재료로 대체 가능한 제품에 대해선 대상품목으로 과감히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관세환급을 진정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이기도 하다. 지금껏 중소기업, 즉 약자 지원을 보조금협정 위반으로 제소하는 국가는 한 곳도 없었기 때문에 이를 십분 활용 해야 한다.

지금 세계 무역은 '안보'와 '패권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과도기, 격전지에 자리하고 있다. 교과서대로 싸고 질 좋은 물자의 자유로운 교역으로 발생하는 무역의 이익이 다가 아닌 세상으로 변모하고 있다.

기술한 바와 같이 FTA에서 EU는 당장은 우리의 관세환급제도를 그대로 인정해 주긴 하였다.

그러나 FTA 세이프가드 이행규정을 도입하면서 협정 발효 후 5년이 경과되는 시점부터 역외산 원자재 급증 혹은 그 밖의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환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여지를 두었다.

세계가 사이좋을 때는 별문제 없을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신냉전체제로의 뉴노멀 시대에 중국산 부품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한국의 산업 구조를 따져본다면 우리로서 결정적인 순간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약점이 될 수도 있다.

그건 미시적으로는 이슈화될 수 있는 우리의 관세환급제도를 손보아야 할 이유이며, 거시적으로는 글로벌공급망 재편, 그리고 산업생산 구조의 변화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다.

[참고문헌]

(관세청고시 제2018-30호)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관세환급관리 및 동일원재료 운용지침. 2003.

김득갑 "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EU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연구", 2005.

박현희 "A Review on the discussion of the duty drawback system in Korea-EU FTA negotiations" 통상정보연구, 2010.

장근호 "한·EU FTA 관세환급 세이프가드에 대한 연구". 조세연구 제17권 제4집 2017년 12월 (pp.171 ~ 204) 한국조세연구포럼, 2017.

정재호 외 "FTA 확산에 따른 관세환급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FTA TRAD



FTA ANALYSIS

캄보디아 시장진출을 위한 한–캄보디아 FTA 소개

김수정 | 한국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선임연구원

E REPORT

캄보디아 시장진출을 위한 한-캄보디아 FTA 소개



김수정

한국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선임연구원

캄보디아는 제조업이 덜 발달되어 있으며, 기본 소비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소비시장이다. 인접국으로는 베트남, 태국, 라오스 등이 있다.

세계 최빈국은 벗어났으나, 여전히 생활용품이 부족하고 구매력은 약한 시장이다. 우리나라와 양자 협정은 2022년 12월 발효되었다.

FTA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전체 품목 중 95.6%의 관세를,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철폐하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공급망이 재편되어, 우리나라 기업은 신규 생산거점으로 캄보디아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교역동향

1.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교역현황

우리나라와 캄보디아의 교역현황은 2015년, 2016년, 2020년을 제외하고 수출실적은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에는 캄보디아로의 수출은 -18.6%로 급감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실적이 회복되어 안정적인 수출기조를 보인다.

지난 10년간의 캄보디아로의 평균 수출실적은 628,822천 달러이며, 동 국가로의 수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억 달러 이상의 수입실적을 기록하였다.



[표 1]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교역현황(2013년~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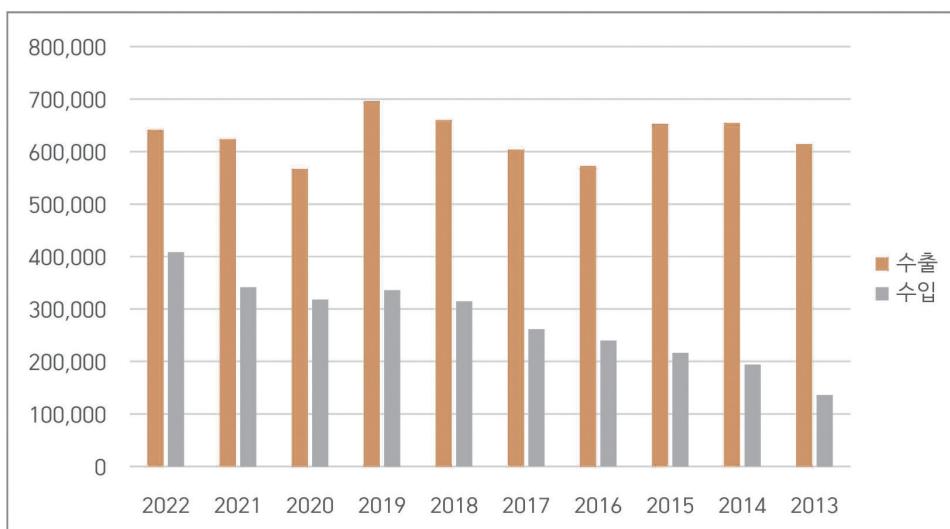
[단위: 천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22	641,675	2.9	408,879	19.7	232,796
2021	623,848	10.0	341,516	7.4	282,332
2020	567,210	-18.6	318,112	-5.3	249,098
2019	696,530	5.5	335,922	6.8	360,608
2018	660,426	9.4	314,477	20.3	345,949
2017	603,846	5.4	261,326	9.0	342,520
2016	572,856	-12.2	239,773	10.7	333,083
2015	652,765	-0.3	216,527	11.6	436,238
2014	654,419	6.5	193,994	42.3	460,425
2013	614,644	3.6	136,313	7.9	478,331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1]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교역동향(2013~2022)]

[단위: 천 달러]



우리나라와 캄보디아의 산업별 교역현황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수출강세 품목군인 섬유류, 기계류, 농림수산물이 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22년 기준) 수입은 화학공업 제품이 '22년은 '21년 대비 626.4% 급증한 바 있다.



[표 2]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산업별 교역현황(2021년~2022년)

[단위: 천 달러, %]

순번	품목명	2021년		2022년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총계	623,848	341,516	641,675	408,879	19.7
1	섬유류	149,907	169,655	143,419	195,812	15.4
2	기계류	130,488	6,322	120,730	9,081	43.6
3	농림수산물	102,780	22,830	108,561	27,927	22.3
4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58,933	1,208	74,855	2,532	109.7
5	화학공업 제품	97,733	22	74,380	158	626.4
6	전자전기 제품	37,019	41,873	44,265	56,654	35.3
7	광산물	3,056	3,162	27,345	581	-81.6
8	철강금속 제품	24,262	11,278	25,826	12,104	7.3
9	생활용품	18,236	83,980	16,685	102,275	21.8
10	잡제품	1,434	1,187	5,609	1,754	47.9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1: MTI 1단위 기준

2.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주요 수출품목

우리나라가 캄보디아로 수출하는 품목은 제2202.10호(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 제4107.92호(그레인 스플릿), 제6004.10호(섬유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22년 제2710.19호(기타의 품목)는 전년대비 1,212.9%로 큰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3]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주요 수출품목(2021년~2022년)

[단위: 천 달러, %]

순번	MTI 1단위	HS 코드	품명	2021년		2022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623,848	10.0	641,675	2.9
1	농림수산물	220210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70,753	-1.9	72,295	2.2
2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410792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41,180	56.7	50,978	23.8
3	섬유류	60041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30,299	6.1	28,377	-6.3
4	광산물	271019	기타	2,058	33.4	27,020	1,212.9
5	화학공업제품	330499	기타	17,744	25.8	22,412	26.3
6	기계류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9,657	87.1	20,620	113.5
7	섬유류	600622	염색한 것	23,968	35.4	19,980	-16.6
8	섬유류	630900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19,765	-39.7	16,891	-14.5
9	섬유류	590320	폴리우레탄의 것	15,367	101.9	16,799	9.3
10	기계류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30,920	0.1	15,324	-50.4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1: MTI 1단위 기준

3.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주요 수입품목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에서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제8544.30호(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으로

한정한다)), 제6403.40호[그 밖의 신발류 [보호용 금속 토탈(toe-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6110.20호(섬유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22년 제6403.99호(기타의 품목)은 전년대비 125.7%로 큰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4]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주요 수입품목(2021년~2022년)

[단위: 천 달러, %]

순번	MTI 1단위	HS 코드	품명	2021년		2022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341,516	7.4	408,879	19.7
1	전자전기제품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으로 한정한다)	36,158	-15.9	49,303	36.4
2	생활용품	640340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탈(toe-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20,721	-8.5	24,623	18.8
3	섬유류	611020	면으로 만든 것	13,610	40.3	18,845	38.5
4	농림수산물	400122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9,435	115.6	17,468	85.1
5	생활용품	640419	기타	11,648	135.2	15,533	33.4
6	생활용품	640299	기타	11,054	191.5	12,907	16.8
7	섬유류	610910	면으로 만든 것	7,979	-14.2	12,437	55.9
8	철강금속제품	760200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9,648	145.6	11,968	24.0
9	섬유류	6110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9,689	48.8	11,570	19.4
10	생활용품	640399	기타	4,739	-26.9	10,695	125.7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1: MTI 1단위 기준

2 한-캄보디아 FTA 상품양허

캄보디아 상품양허는 한-아세안 FTA에서 관세 철폐되지 않고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368개 공산품 중 265개에 대해 추가시장을 개방(모두 15년 내 관세 철폐)한다. 농산물은 품목수 기준 90.5%(1,215개), 수입액 기준 64.5%(4.6백만

불)에 대하여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 수산물은 품목수 기준 99.1% (452개), 수입액 기준(100.7%)에 대하여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였다.





[표 5] 한-캄보디아 상품양허

구분	주요내용
공산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아세안 FTA에서 관세 철폐되지 않고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368개 공산품 중 265개에 대해 추가시장 개방(모두 15년 내 관세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화물자동차(관세율 15%), 및 중형 승용차(35%)에 대해 20년 내 관세 철폐 - 캄보디아의 경제 성장에 따라 건설장비 및 소비재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건설중장비 등 기계류 및 가정용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탬핑머신(15%) 10년 철폐, 굴착기(15%) 등 15년 철폐 ** 진공청소기(35%) 및 건조기(15%)등 15년 철폐
농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수 기준 90.5%(1,215개), 수입액 기준 64.5%(4.6백만불)에 대하여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수출 관심품목인 땅기, 사과, 소시지 등을 즉시 철폐, 포도, 소주, 기타과실(냉동)은 10년 철폐하여 대캄보디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함
수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수 기준 99.1%(452개), 수입액 기준(100.7%)에 대하여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미김은 10년 철폐하고 꽃게는 15년 철폐하는 등 우리나라 주요 수산물의 대캄보디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함

자료: 한-캄보디아 상세설명자료(2021. 10.)

3 한-캄보디아의 FTA 활용하기

한-캄보디아 FTA 세율을 확인하려면 FTA 포털¹란의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 부분을 확인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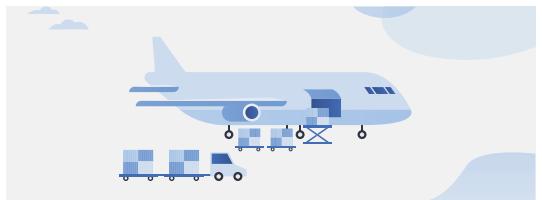
FTA 관세혜택이란 상대국의 일반세율과 FTA 협정세율을 비교해서 FTA 활용할 경우 세율의 이익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림 2] FTA 포털 내 협정문

자료: 한국무역협회

1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예를 들어, 캄보디아의 룽간의 경우 기준세율 7%로 양허유형이 0이므로 FTA 발효 시 관세가 철폐된다.



[표 6] 한–캄보디아 관세인하 스케줄표

AHTN 201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810.20.00	-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디 및 로간베리	0%	0
0810.30.00	- 흑색·백색 또는 적색의 커런트와 구스베리	0%	0
0810.40.00	- 크랜베리·빌베리와 그 밖의 박시니엄속의 과실	0%	0
0810.50.00	- 키위프루트	0%	15
0810.60.00	- 두리안	0%	15
0810.70.00	- 감	0%	0
0810.90.10	- 용안, 마타쿠칭	7%	0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7] 한–캄보디아 FTA 관세양허 유형

양허유형	설명
0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
5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
7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
10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
15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
20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
EX	원산지 상품에 대해 관세는 기준세율을 유지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4 한-캄보디아 FTA 활용 서류보관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정과 FTA특례법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일 또는 발급일로부터 5년 범위 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한-캄보디아 협정문 제3장 제25조에 따라 자국의 수출자, 생산자, 발급기관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은 원산지증명이 발급된 상품이 원산지상품이었음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원산지증명 발급일부터 최소 5년 동안 또는 자국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더 긴 기간 동안 유지한다.

또한, 자국의 수입자는 특혜관세대우가 신청된 상품이 원산지상품이었음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그 상품의 수입일부터 최소 5년 동안 또는 자국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더 긴 기간 동안 유지한다. 위에서 언급한 기록은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디지털, 전자, 광학, 자기 또는 서면 형태를 포함하여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로 유지가 가능하다. 한-캄보디아 FTA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해당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FTA 활용 시 적용해야 할 것이다.

[표 8] FTA 활용 서류 보관

수입자 보관서류	생산자 보관서류	수출자 보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 사본 · 수입신고필증 ·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지식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 관련 자료 ·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 시 작성 제공한 서류 ·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원재료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 서류 ·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공정명세서 · 출납, 재고관리대장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 보관서류 외 ·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 사본 · 수출신고필증 ·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5

한-캄보디아 FTA 기대효과

캄보디아는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메콩지역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있으며 높은 경제성장률, 젊은 인력 비율 등으로 메콩강 유역 공급망의 중심지로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

'20년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산 부품 수급이 안 되어 현대·기아자동차가 생산 중단 위기에 빠졌을 때 캄보디아산 부품(와이어링 하네스²)으로 생산을 재개한 사례와 같이, 캄보디아는 아세안의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전체 품목 중 우리 나라는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가 철폐(수입액 기준 韓 95.7%, 캄 72.2%)되었다. 최종적으로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수 기준 17.1%, 수입액 기준 43.2%만큼 캄보디아의 상품 시장이 추가 개방됨으로써, 국내 기업의 캄보디아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었다.

캄보디아로 수출하려는 우리나라 기업은 캄보디아 시장의 장점을 활용하여서 한-캄보디아 FTA를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2 자동차의 신경망 역할을 하는 배선뭉치를 말함. 전선을 묶고 연결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수작업으로 이뤄지며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센서가 많아지면서 와이어링 하네스도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음



FTA TRAD



FTA 품목분류

HS 제8708호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의 품목분류

오수교 | KPMG 관세사

E REPORT

HS 제8708호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의 품목분류



오수교
KPMG 관세사¹

자유무역협정(FTA) 등 특혜 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에서 품목분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우리나라 수출입물품에서 자동차는 국가경쟁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동차의 제조에 사용하는 부품의 수출입 비중도 크다. 자동차는 3~5만 개의 부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많은 부품의 품목분류를 정확히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쟁점도 많이 발생한다.

이 글은 이런 점을 참작하여 제8708호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한정하여 설명한다.

1 필자는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장을 마지막으로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2015년 9월부터 KPMG 관세법인에서 품목분류와 FTA 전문 관세사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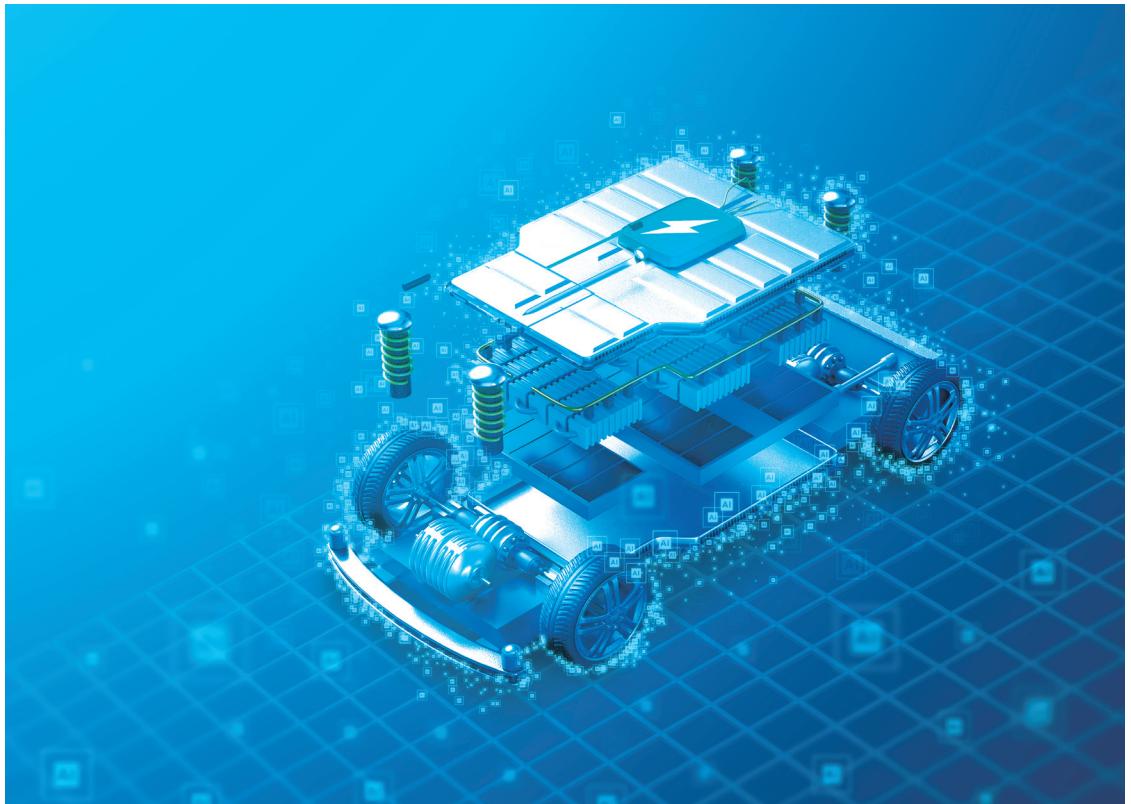
1 제8708호에 속한 소호(sub-heading)의 분류체계와 특정 국가 특혜세율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이 호에는 다음 표와 같이 총 15개의 6단위 소호(이하 ‘소호’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세율은 소호에 따라 그 차이가 있는 ①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②인도로 수출

하는 물품에만 표기하였다. 다만, ① 중국에서 수입하는 소호 제8708.30호와 소호 제8708.99호는 HSK 10단위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즉, HSK 제8708.30-3000호(전자 제어식 제동장치)와 HSK 제8708.30-9000호(기타), HSK 제8708.99-9000호(기타)는 3.2%이고, 나머지는 0.8%이다.



[표 1] 제8708호의 소호의 분류체계와 세율

HS Code		소호의 용어	①한-중FTA (수입세율)	②한-인도 CEPA (수출세율)
8708	10	완충기(bumper)와 그 부분품	4.4%	15%
8708	2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8708	21	안전벨트	0.8%	15%
8708	22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서 규정한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쉴드), 후방 창문과 그 밖의 창문	0.8%	15%
8708	29	기타	0.8%	15%
8708	30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0.8/3.2%	15%
8708	4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3.2%	6.25%
8708	5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	3.2%	15%
8708	70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부속품	4.4%	6.25%
8708	80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3.2%	15%
8708	9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8708	91	방열기와 그 부분품	4.4%	15%
8708	92	소음기(머플러), 배기관, 그 부분품	3.2%	15%
8708	93	클러치와 그 부분품	3.2%	15%
8708	94	운전대·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5.6%	15%
8708	95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부분품	3.2%	15%
8708	99	기타	0.8/3.2%	5%

2 제8708호로 분류하기 위한 조건

이 호로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17부 주 제2호에 따르면,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①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②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예를 들면 ① 기어박스(gear box)가 볼도저(제8429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면 제8431호로 분류한다. 또한, ② 기어박스가 철도용 기관차(제8601호)·헬리콥터(제8802호), 장갑차(제8710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해도 제8708호로는 분류할 수 없다.

실무에서 전용(use solely)인지는 크게 다툼의 여지가 없지만, '주로 사용(use principally)'을 해석하는 데 있어 그 구분이 명료하지 않은 점이 있다. 주로 사용하는지는 일차적으로 수입자가 구조나 설계상의 특성 등의 관련 사실에 근거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제17부 주나 관련 규정에 따라 제8708호에서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아래 3항 참조)



3 제8708호에서 제외하는 물품

(1)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가.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
-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 다. 제82류의 물품(공구)
- 라. 제8306호의 물품
-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
- 바. 전기기기(제85류)
- 사. 제90류의 물품
- 아. 제91류의 물품

자. 무기(제93류)

차. 제9405호의 조명기구와 그 부분품

카. 차량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브레이시
(제9603호)

참고로 아래 사례1은 WCO HS 위원회에서 제17부 주 제2호사목 등을 적용하여 제9029. 90호로 결정한 "자동차 계기반용 메인보드(PCB)"이다. 물론 자동차용 계기반과 그 부분품은 제8708.29호의 "차체의 부분품"에 해당하지만, 이 물품은 회전속도계와 주행 거리계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품목분류는 독립된 개체별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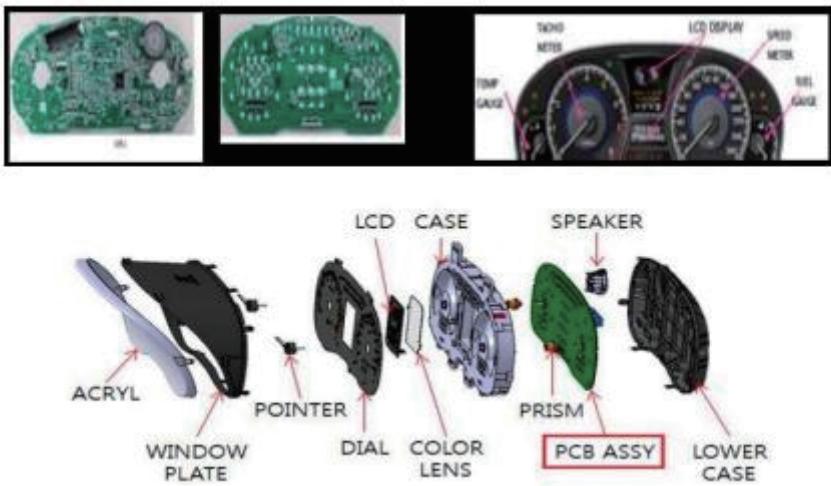
이 원칙에 따라 스피커만 독립된 개체로 수출입하면 제8518호로, 액정 디스플레이(LCD)도 상태에 따라 제8528호나 제8529호로, 컬러렌즈(color lens)와 프리즘(prism)은 제9001호나 제9002호로 분류한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구체적으로 열거된 호가 없을 때만 해당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례 1]

◆ 약 440개의 능동소자와 수동소자를 갖춘 것으로서, 이 물품은 완전한 계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수입 후 윈도 플레이트, 액정 디스플레이(LCD), 스피커, 지시 포인터와 다양한 플라스틱 구조부품을 포함한 다른 부품과 결합한다.

최종 계기반은 차량 휠에 장착된 훌센서에서 별도의 전자제어장치(ECU)가 받는 데이터를 통해 속도, 분당 회전수(RPM)와 주행 거리 및 냉각수 온도, 잔여 연료량, 문 열림 경과와 같은 차량 상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다음 사례2도 WCO HS 위원회에서 제17부 주 제2호가목을 적용하여 제4016.93호로 결정한 “자동차 브레이크 스템용 컵”이다. 제동장치

시스템(brake system)의 부분품으로 소호 제8708.30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사례 2]

◆ 가황고무로 만들어져 있고 바닥의 지름이 36.5mm, 상부의 지름이 38.0mm이며 두께는 8.0mm이다. 이것은 휠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유체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개스켓으로 사용한다.



(2) 제17부 주 제2호 외에 이 표의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분류되어 제외하는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과 부속품이 차량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아래와 같이 이 표의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제8708호에서 제외한다.

- ① 경화고무 이외의 가황한 고무로 만든 프로파일 모양의 물품(특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4008호)
- ② 가황한 고무로 만든 전동용 벨트(제4010호)
- ③ 고무타이어·호환성 타이어 트레드(tread)·타이어 플랩(flap)과 이너튜브(제4011호부터 제4013호까지)
- ④ 가죽으로 만든 공구 백(제4202호)
- ⑤ 예인용 로프(제5609호)
- ⑥ 방직용 섬유로 만든 양탄자(제57류)
- ⑦ 강화유리나 합판유리로 된 틀을 붙이지 않은 안전유리(성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7007호)
- ⑧ 백미러(제7009호나 제90류)
- ⑨ 속도계·적산회전계 등에 사용하는 플렉시블샤프트(flexible shaft)(제8483호)
- ⑩ 제9401호의 차량용 의자(유아용 안전 의자를 포함한다)

백미러를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제8708호로 분류하지 않고, 제7009호로 분류하는 근거는 통칙 제1호와 통칙 제3호가 목이다.

왜냐면, 제7009호나 제8708호로 분류하자는 의견이 대립하면, 추가로 통칙 제3호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일견 백미러가 제7009호와 제8708호의 둘 이상의 호로 분류 가능하다면 통칙 제3호가 적용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하여 분류'한다.

즉, 제7009호의 백미러가 물품명(name)이라면 제8708호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종류(class)에 해당하고, 백미러가 명확하게 서술된 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실무에서 다툼이 자주 발생하는 쟁점 중 하나인데, 이런 경우는 물품명이나 구체적으로 서술된 호로 우선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4 제8708호의 소호 해설

본론에 앞서 제8708호의 소호에서 '그 밖의'라고 표현한 용어의 의미와 '기타(other)'라고 표기한 소호의 분류원칙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다.

우선, 소호의 용어에 '그 밖의'란 표현이 있는 것은 아래와 같이 총 4개가 있다.

① 5단위 소호 제8708.2호에서 '그 밖의'란 앞에서 열거한 소호 제8708.10호의 완충기를 제외한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지칭하는 것이다. 완충기는 차체의 부분품에 해당하지만, 제8708.2호로는 분류하지 않는다.

② 소호 제8708.22호에서 '그 밖의'란 앞에서 열거한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쉴드)와 후방 창문을 제외한 나머지 창문(window)을 지칭하는 것이다.

③ 소호 제8708.50호에서 '그 밖의'란 앞에서 열거한 소호 제8708.40호의 기어박스를 제외한 동력전달장치를 말한다. 기어박스는 대표적인 동력전달장치이다.

④ 5단위 소호 제8708.9호에서 '그 밖의'란 앞에서 열거한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품과 부속품을 지칭한다.

다음 '기타(other)'라고 표기한 소호는 제8708.29호와 제8708.99호이다. 제8708.29호는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 중에서 ① 완충기, ② 안전벨트, ③ 창문이 아닌 것을 분류한다.

소호 제8708.99호는 앞의 14개 소호에 분류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한다. 이 경우에 앞의 호로 분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호로 분류하면 품목 분류의 오류가 된다. 실무에서는 이런 잘못이 빈번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1) 소호 제8708.22호

이 소호에는 제87류의 소호주 제1호에서 규정한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쉴드), 후방 창문과 그 밖의 창문을 분류한다.

즉, 소호 제8708.22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가.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실드)·후방 창문과 그 밖의 창문(틀에 끼운 것으로 한정한다)

나.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실드)·후방 창문과 그 밖의 창문(틀에 끼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가열장치나 그 밖의 전기·전자장치를 결합한 것에 한정한다)

참고로 WCO HS 위원회에서는 사출 성형된 고무스트랩이 자동차 유리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도 이 소호로 분류하였다(아래 그림1-② 참조). 물론, 이 소호주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용 유리는 제7007호로, 사출 성형된 고무 스트립만 별도로 수출입하면 제4008호로 분류한다.

(2) 소호 제8708.29호(기타)

이 소호에는 앞의 3개 소호로 분류할 수 없는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한다. 즉, 상판·측면·전면·후면의 패널(panel), 하물 넣는 곳, 문(door)과 그 부분품, 보닛(bonnet)(후드), 창틀(window frame), 발판, 윙(wing)[펜더(fender)]·진흙받이, 계기반(dashboard), 방열기 덮개(radiator cowling)², 번호판 브래킷(bracket), 조종 브래킷(bracket), 외부하물선반, 챙(visor), 바닥용 매트[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이나 비경화(非硬化) 가황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³] 등을 분류한다.

또한, 이 소호에는 제8707호의 차체에 해당하지 않는 차체의 조립품도 분류한다.

[그림 1] 자동차 부분품

			
① bumper (제8708.10호)	② window glass (제8708.22호)	③ bonnet (제8708.29호)	④ brake system (제8708.30호)

2 방열기 덮개는 방열기의 부분품인 제8708.91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3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은 제57류에, 비경화 가황고무로 만든 것은 제4016호에 분류한다.

(3) 소호 제8708.30호(제동장치와 그 부품)

이 소호의 제동장치(brake)의 부품에는 플레이트(plate)·드럼·실린더·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lining)·유압식 제동장치 용의 오일탱크 등이 있다. 다만, 장착되지 않은 브레이크 라이닝은 제6813호로 분류 한다.

(4) 소호 제8708.40호(기어박스와 그 부품)

이 소호에는 모든 형식[기계식·오버드라이브(overdrive)·자동변속장치(preselector)·전기기계식·자동식 등]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 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 부품을 제외한다), 기어피니언(gear pinion), 직접 구동식 교합 클러치와 셀렉터 봉(selector rod) 등을 분류한다. 그러나, 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 부품으로 사용하는 샤프트(shaft)는 제8483호로 분류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소호 제8708.50호[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비구동 차축, 그 부품]

이 소호의 부품에는 차동장치의 케이싱, 유성(遊星)기어장치(sun and planet gear pinion), 허브(hub)·스터브 차축(stub-axle), 차축 저널(axle journal)·스터브 차축(stub-axle)의 브래킷(bracket) 및 프로펠러 샤프트·하프샤프트, 기어·기어링,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 감속기어조립품, 유니버설 조인트 등을 포함한다. 다만, 엔진의 내부 부품인 연결봉(connecting-rod·압봉(push-rod)·밸브리프터(valvelifter)(제8409호)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캠샤프트(cam shaft)·플라이휠(flywheel)(제8483호)는 제외한다.

(6) 소호 제8708.70호[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품과 부속품]

[그림 2] 자동차 부품

			
① torque converter (제8708.40호)	② rode wheel (제8708.70호)	③ shock-absorber (제8708.80호)	④ radiator (제8708.92)

이 소호의 로드 휠은 타이어를 부착하는 지에 상관없으며, 무한궤도 차량용의 트랙과 차륜 세트, 림(rim)·디스크(disc)·허브-캡(hub-cap)·스포크(spoke)을 분류한다.

(7) 소호 제8708.80호[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를 포함한다]
다만, 철강제의 스프링은 제7320호로 분류한다.

(8) 소호 제8708.94호[운전대·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운전박스(steering box)와 그 부분품]

이 소호의 부분품에는 운전대의 축(axle), 기어 변환장치와 핸드 브레이크의 레버, 액셀러레이터·브레이크·클러치 페달, 브레이크용·클러치용의 연결봉(connecting-rod)을 분류한다.

(9) 소호 제8708.95호(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부분품)

이 소호에는 모든 형식의 안전 에어백(예: 운전석 에어백, 조수석 에어백, 그 밖의 머리 보호를 위해 측면, 천장에 부착하는 에어백 등)을 분류한다. 팽창 시스템은 가스 주입을 지시하는 점화기(igniter)와 용기에 들어 있는 팽창 가스로 구성한다. 다만, 원거리 센서(remote sensor)나 전자 제어기(electronic controller)는 팽창 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는다.

(10) 소호 제8708.99호(기타)

이 소호에는 앞의 14개 소호로 분류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물품을 분류한다.

① 엔진을 갖추지 않은 새시(여러 가지 기계적인 부분품을 부착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부분품

[그림 3] 자동차 부분품

			
① muffler (제8708.92호)	② clutch (제8708.93호)	③ steering wheel (제8708.94호)	④ fuel tank (제8708.99)

그 부분품에는 사이드멤버(side-member)·브레이스(brace)·크로스멤버(cross-member), 서스펜션 마운팅(suspension mounting), 차체(coachwork)·엔진·발판·축전지·연료 탱크용 등의 지지구(支持具)와 브래킷(bracket) 등을 포함한다.

② 연료탱크

③ 액셀러레이터 케이블: 이 케이블은 차량의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엔진 연료 제어장치와 연결하도록 제작한 것이다. 다만, WCO HS 위원회에서 용도에 따라 패킹 브레이크의 제동과 이탈 장치를 자동차 제어장치에

연결하도록 제작한 핸드 브레이크용 케이블(나선형 강선)은 제8708.30호로, 클러치 케이블(나선형 강선)은 제8708.93호로 분류했다는 점도 유념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 지붕에 장착하는 화물적재함 또는 접이식 화물적재함

⑤ 탈부착식 이동용 캠핑 팝탑(campier pop-top)

그 외에도 많은 부분품과 부속품을 이 소호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나, HS 해설서에 더 열거한 것은 없다.

5 블랭크(blank)의 해설

제8708호로 분류하는 부분품으로 기어, 트랜스미션, 연결봉, 베어링 허브와 같은 물품은 블랭크(blank) 상태로 거래하는 예도 있다.

통칙 제2호가목에서 정의한 블랭크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즉, 추가적인 가공을 거쳐야만 완성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불완전한 상태의 물품인데,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통칙에서 정의한 블랭크에 해당하면 완성품과 같은 소(또는 소호)로 분류한다.

특히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 이런 블랭크를 수입하여 완성품으로 가공했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품목번호의 변경이 없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블랭크에 해당하는지가 원산지 물품을 판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WCO HS 위원회 사례를 소개하면, 철강을 단조하여 만든 물품으로 비록

추가적인 가공이 필요하지만, 통칙 제2호가목에서 규정한 블랭크에 해당하므로 완성품과 같은 소호로 분류하였다. 만약, 이 물품이 블랭크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7207호(비합금강)나 제7224호(그 밖의 합금강)으로 분류한다. 이런 물품은 상당한 정도까지 더 가공하여야만 완제품의 모양으로 구체화 할 수 있는 물품이라는 점에서 블랭크와 차이가 있다.

[그림 4] WCO HS 위원회 사례

구분	외륜 완성품	외륜 미완성품(단조품)
물품	<p>플랜지가 결합한 테이퍼 롤러베어링 허브 유닛용 외륜 완성품이다. 외경 96mm, 플랜지 지름 159mm로서 볼트용 테이터 홀이 있어 플랜지가 결합한 테이퍼 롤러베어링 허브 유닛에 조립된 후 자동차 차체에 결합한다.</p>	<p>외측의 완성품과 같은 형태와 크기이나, 외륜으로 사용하기 전에 선반 가공, 열처리와 연마를 하여야 한다. 이 물품은 구름 요소를 위한 복열궤도와 플랜지의 볼트 구멍이 없다.</p>
그림		
분류	<p>통칙 제1호(제17부 주 제3호)와 제6호를 적용하여 제8708.50호로 분류한다.</p>	<p>통칙 제3호(제17부 주 제3호와 제15부 주 제1호사목), 제2호가목 및 제6호를 적용하여 제8708.50호로 분류한다.</p>

6 결론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앞의 3항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제8708호 외에 다른 호로 분류하는 물품이 훨씬 많다. 물론, 이들의 부분품이나 부속품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하고 제8708호로는 분류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8708호의 품목분류 검토과정에서 유념할 사항으로 첫째는 제8708호에서 제외하는 물품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둘째로는 제8708호에서 “기타”라고 표기한 소호로 분류하기 전에 앞에서 열거한 소호로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셋째로는 미완성된 물품이라면 통칙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블랭크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검토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걸러내지 못하여 발생한 오류는 중대하여 치유하기가 어렵다.

끝으로 관세관청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관세논리를 찾아 이를 집행하려는 DNA를 갖고 있다.

더욱이 관세관청의 처분이 있고 난 뒤에 관세 논리를 스스로 번복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수출 물품은 수입국 관세당국을 상대로 수출자의 주장을 펼쳐야 하므로 여러 가지 제약도 따른다.

따라서 경합하는 품목번호에 따라 세율 차이가 있는 경우에 낮은 세율로 수출입하려면 명확한 근거 규정과 선례를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다.





FTA TRAD



해외통관애로

베트남 법령에 따른 강제 인증 및 수입 요건 개관

박민설 | KOTRA 하노이 무역관, 한-베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관세사/전문위원

E REPORT

베트남 법령에 따른 강제 인증 및 수입 요건 개관



박민설

KOTRA 하노이 무역관
한-베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관세사/전문위원



1 들어가며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1992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빠른 속도로 양국 간의 교류를 확대해 왔으며 특히 경제 분야에서 발전이 두드러져 2023년 양국의 교역량은 약 천억 달러를 바라 보고 있다.

또한 2022년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며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두 국가 간의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베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는 FTA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해외에 설립 및 운영하고 있는 센터로, 베트남에는 하노이와 호치민 2곳에 2016년도 3월부터 개소하여 베트남 진출 기업들의 FTA, 관세, 통상 등 관련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의에 대한 상담 및

애로해소 활동을 이행하고 있다.

양국 교류가 활발한 만큼, 베트남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많으나 공통적으로 호소 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베트남의 통관은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통관과 관련된 법령 및 시행령, 시행 규칙의 개정주기가 일정하지 않고,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의 모호한 해석 및 일관적이지 않은 집행으로 인한 여러 애로 사례가 본 센터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 수출 물품에 대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질의가 접수되고 있는데, 베트남의 경우 여러 법령에 이러한 수입 요건이 산재하여 규정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2 수입 금지 품목

베트남은 국가 보안, 소비자 건강 및 안전, 사회 질서 등을 조건으로 수출입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의 부록 1에서 정부에서 발행한 수출입 금지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수입 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표 1] 참고).

이러한 수출입 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분석, 연구, 약품 생산, 국가 보안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한 수입만 총리의 허가를 받을 경우 수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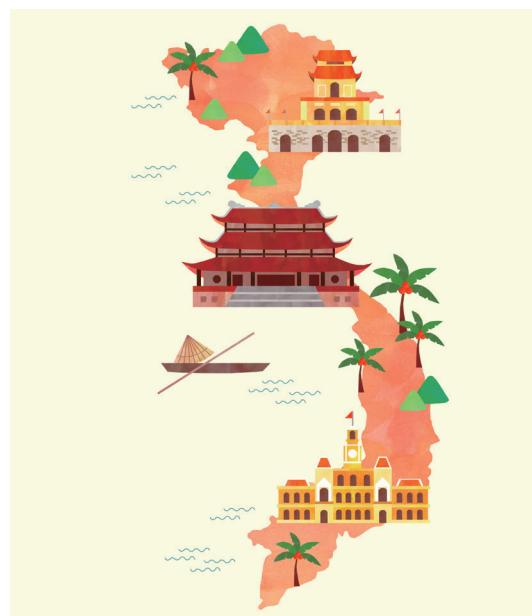
기업에서 취급하는 물품이 실제 수입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 품목별 관할 부처의 시행 규칙상 HS code와 물품 명세의 확인이 필요하다.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이러한 수입 금지 대상 물품 중에 대부분의 중고 상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고 의류, 중고 통신 장비, 중고 소비자 등의 경우 대부분 수입 불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기에 관련 기업의 유의가 필요하다.

그중 많은 질의가 있는 중고차의 경우, 교통부의 관할 품목으로 중고 오토바이는 연한 제한이 없이 수입 금지 대상이며, 승객 수송용 사륜 차의 경우 생산연도로부터 5년이 넘은 물품을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다만 중고 차량의 경우 별도로 수출입세법 시행령으로 규정된 추가 관세(일정 추가금액 혹은 150%의 추가 관세율이 종류에 따라 부과) 납부 의무 및 환경 기준 충족 및 품질 인증서 제공 등 규제를 두고 있어 수출 전 유의가 필요하다.



[표 1] 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상 베트남 수입 금지 품목 리스트

연번	명세	관할 부서
1	무기, 탄약, 폭발물(산업용 폭약 제외), 군사기술 설비	국방부
2	각종 폭죽(해양 안보 목적의 신호용 폭죽 제외), 주행 속도 측정기를 방해하는 설비	공안부
3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된 특정 화학물질	산업무역부
4	중고 소비재, 의료기기 및 교통 수단	산업무역부
5	베트남 국내 보급 및 유통이 금지되는 문화 상품	문화체육부
6	중고 정보 통신 제품(중고 IT 제품)	정보통신부
7	- 베트남 국내 보급 및 유통이 금지된 출판물, 우표 - 전파법상 기준을 미충족하는 무전장치 및 전자파 발생장치	정보통신부
8	- 오른쪽 핸들 차량 - 프레임이나 엔진넘버가 지워지거나 수정된 오토바이 및 사륜차, 트레일러 등	교통부
9	- 차량 프레임, 타이어 및 튜브, 부속품 및 엔진, 샤시 등으로 중고인 것 - 구조가 개조된 중고 차량 - 중고 앰뷸런스 - 중고 차량,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및 승객 수송용 사륜 차량으로 생산연도로부터 5년이 넘은 차량	교통부
10	로테르담 협약 부속서 3의 화학물질	농업농촌개발부
11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농업농촌개발부
12	CITES 협약에서 규정된 상업목적 수출 금지 동식물	농업농촌개발부
13	고철, 폐기물, C.F.C를 사용하는 냉장장치	자원환경부
14	석면을 포함하는 상품 및 자재	건설부

출처: 69/2018/ND-CP(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 2018/05/15) 하노이무역관 해석, 편의를 위해 원문 일부 요약

3 조건부 수입 품목

수입 금지 품목 이외에 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 부록 3에서 허가증을 갖추거나 특정 조건을 갖춰야 수출입이 가능한 품목의 리스트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품목에 포함된 물품의 경우, 각 정부부처에서 세부 물품 리스트 및 Hs code와 허가 취득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기업의 많은 문의가 있는 수의용 의약품, 비료, 사료(농업농촌개발부 관할) 및 의약품, 식품, 화장품(보건부 관할) 이외에도 인쇄 기기, 원료용 금과 같은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 조건을 규정하고 있어 세부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



[표 2] 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상 베트남 조건부 수입 품목 리스트

연번	관할 부서 및 절차	해당 물품
1	산업무역부 : 수입허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무역부에서 발행하는 자동수입허가 대상 리스트에 해당하는 품목(2012년 리스트 폐지) - 소금, 가공 전 담배, 가금류의 알, 원당 - 산업용전구체
	산업무역부 : 화학물질법 규정에 따른 절차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포함 상품
	산업무역부 : 담배의 생산 및 경영에 관한 규정	담배 원료, 담배 완제품, 담배말이용 종이, 담배 생산 분야에서 사용되는 설비 및 부품
2	교통부 : 수입 허가	해양 안보 목적의 신호용 폭죽
3	농업농촌개발부 : 시험 허가서 혹은 수입 허가서	<p>베트남에서 등록되기 전, 혹은 유통 허가를 받지 않은 다음의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용 의약품 및 동물용 의약품 생산용 원재료, 수의학용 생물 제재, 미생물 등 - 연구, 전시, 시험 목적 등으로 수입되는 농약 및 특성 독성물질 함유 농약 - 가축 품종, 곤충, 식품 품종, 유기체 - 가축 사료 및 수생 동물 사료 - 연구, 샘플 목적 등의 비료
	농업농촌개발부 : CITES 수입 절차	CITES 대상 동물의 비상업적 수입
	농업농촌개발부 : 관련 시행 세칙상 리스트 규정	관련 세칙에서 수생 동물 종자, 식물 종자 등에 대해 일반 수입 가능 품목, 조건부 수입 가능 품목, 허가증 대상 등으로 나누어서 관리
4	자원환경부 : 수입 조건 및 수입 기준 총족	폐기물
5	정보통신부 : 출판물 및 잡지에 관한 법령 규정 총족	책, 신문, 잡지, 그림, 사진, 달력 등
	정보통신부 : 수입 허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표, 우표 간행물 - 사이버 정보 보안 제품

연번	관할 부서 및 절차	해당 물품
5	정보통신부 : 인쇄활동에 대한 규정 준수	인쇄 산업을 위한 프레스 시스템 및 각종 인쇄기기
	문화체육관광부 : 수입품 내용물 승인	- 모든 매체에 기록된 영화 작품, 공연 예술 및 기타 시청각 제작물, - 예술 작품, 사진 작품
6	문화체육관광부 : 수입 물품 목록 확인 서류	비디오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된 전자 게임기, 승부를 겨루기 위한 전자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된 전자 게임기, 전문 카지노 장비
	문화체육관광부 : 사양 기준 충족	어린이 장난감
7	중앙은행 : 수입 허가	원료용 금
8	보건부 관할 품목	표 3에서 후술

출처: 69/2018/ND-CP(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 2018/05/15) 하노이무역관 해석, 편의를 위해 원문 일부 축약 기술

위의 조건부 수입 가능 품목 중 우리 기업의 가장 주력이 되는 수출 품목 대부분은 베트남 보건부 관리 대상에 해당한다.

의약품, 식품 및 식품 용기, 화장품, 살균제 등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소비재들 대부분이 보건부 산하에서 각 기관에 수입 전 사전 유통 등록을 한 후에 정식 수입이 가능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통 등록 절차는 베트남 현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기에, 바이어에게 물품 관련 서류를 전달하여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등록 과정에서 소량의 샘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등록이 완료되고 유통등록번호를 받으면 이를 물품 라벨에 표시하게끔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바이어와의 협의를 통해 인증 절차 진행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표 3] 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상 베트남 조건부 수입 품목 중 보건부 관할 품목 리스트

연번	명세	관할 부서 및 조건
1	베트남 유통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의 것 - 특별관리대상 의약품 제외 의약품, 의약품 원료, 의료기기 - 가정용 및 의학용 살충제, 살균제	보건부 관리 대상으로, 건별 확인이 불필요하며, 수요에 따른 수입 가능
2	특별관리대상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보건부 수입 허가서
3	베트남 유통등록이 되지 않은 다음의 것 - 의약품, 의약품 원료 - 연구 및 분석용 및 사용 안내용, 수리용 의료기기 - 무상원조 목적의 의료기기 - 개인사용목적의 의료기기	보건부 수입 허가서
4	표준물질, 의약품과 직접 닿는 포장지	보건부 수입 허가서
5	식품안전법령 규정에 따른 보건부 관할 수입 식품	보건부 관리 대상으로, 기술 규정과 합치 하다는 보고(công bố hợp quy) 및 식품 안전규정 부합 보고, 국가 검사
6	연구용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제품	보건부 수입 허가서
7	그외 특정한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품 및 원조 목적 제품(목적에 맞게 수입되는 선물용 등)	보건부 수입 허가서
8	화장품	기술표준합치보고(công bố tiêu chuẩn)

출처: 69/2018/ND-CP(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 2018/05/15) 하노이무역관 해석, 편의를 위해 원문 일부 축약 기술



4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입 품질 검사 대상

베트남은 2007년도 제품 및 재화의 품질 관리 법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품질을 공포된 적용 기준(applicable standards) 및 관련 기술 규정(technical regulations)에 따라 관리하며 상품을 Group 1 및 Group 2로 나누어 관리 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1) Group 1: 생산자들이 공포(announced)한 적용 표준에 따라 관리.

2) Group 2: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 (promulgated)한 기술 규정 및 생산자 들에 의해 공포한 적용 표준에 따라 관리. 해당 품목의 경우 정부 각 부처에서 별도의 리스트 발행.

제품 및 재화의 품질 관리법에 따라 Group 2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1) 물품이 기술 규정과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인된 기관의 인증이 있어야 하며, 2) 물품이 기술 규정과 합치한다는 보고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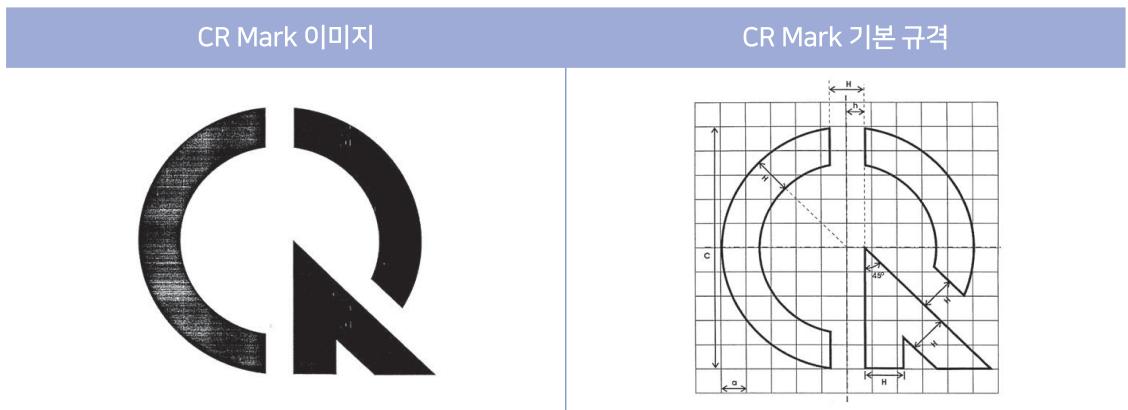
먼저, 제품에 대해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생산 과정 및 완제품과 관련된 기술 규정을 충족 하였음에 대한 인증(chứng nhận hợp quy)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 충족이 필요한 국가기술 규정(QCVN)이나 인증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처별 세부 시행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품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시장 유통 전 해당 물품이 규정을 충족하였음에 대해 기관 및 개인의 자체 보고(công bố hợp quy) 과정이 이행된 후, 시장 유통 시 흔히 "CR MARK"라 불리는 인증 마크(Dấu hợp quy) 부착이 필요하다. 이들 Group 2의 물품들에 대해서는 수입 시 강제 품질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 수입 통관 당시 국가기술 규정 충족 여부, 자체 보고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검사 후 통관이 가능하기에, 통관 전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 기업의 주력 품목인 전기전자 제품이 Group 2 대상에 해당하기에 관련 기업의 과학 기술부에서 발행하는 기술 규정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에서 전기 용품에 관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으로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활 전기 안전(Electrical safety) 및 전자파 적합성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확인 대상 품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4] CR Mark 이미지



이미지 출처: 28/2012/TT-BKHCN 부록 1

[표 5] 부처별 강제 품질 검사 대상 품목 리스트

관리부서	물품 명세
농촌개발부	- 식물 종자(쌀, 옥수수 등)
	- 동물용 약품, 사료, 해양양식용 사료
	- 제초제 및 농약류
	- 비료, 공업용 소금, 목재용 접착제
	- 농업용 및 농촌발전용 기계설비 등
산업무역부	- 질소 암모니아 연료 및 폭발물
	- 건설용 파이프, 비계, 액화가스용 컨테이너 등
	- 스팀 및 증기 보일러, 중앙제어 보일러
	- 폭발방지 통신장비, 전기 회로 보호 장비, 케이블, 램프 등
교통운송부	- 도로운송수단: 자동차,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등
	- 중장비: 기중기
	- 철도운송수단
건설부	- 시멘트류, 공사용 모래, 연석과 포석, 건설용 유리 및 기타 건설용 원재료

관리부서	물품 명세
공안부	- 투망기, 총기류, 폭탄류, 최루탄, 가스마스크 등
노동보훈부	- 공업용 안전용품: 안전헬멧, 안전화, 팔 보호구, 안면 보호구, 보안경, 산업용 마스크 등
	- 리프트 및 리프트용 안전용구, 에스컬레이터 등
	- 압축 가스 실린더 및 컨테이너
	- 풀리와 호이스트 및 이동 용구
정보통신부	- 무선 송수신 기기
	- 라디오 및 텔레비전 수신기
	- IT장비(컴퓨터, 랩톱, 태블릿)
	- 랩톱, 핸드폰 등의 리튬 배터리
과학기술부	- 가솔린, 디젤유, 바이오연료 및 LPG
	- 오토바이 헬멧
	- 어린이 장난감
	- 온수기, 가정용 전열기, 선풍기, 청소기, 냉장고, 세탁기 등 전기 전자 제품
	- 공사용 철근 및 철강제품,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
	- 엔진용 윤활제
	- LED 제품

출처: 각 부처별 시행 규칙상 부록 참조, 하노이 무역관 종합, 편의를 위해 축약 기재

5 에너지 효율 라벨 강제 품목

베트남 에너지의 경제적, 효율적 사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특정 장비 및 기기의 경우 시장 유통 전에 에너지 효율 라벨 부착이 강제되고 있다.

라벨에는 등급 및 제조사명, 원산지, 에너지 효율 지수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관련 수입자는 현지에서 지정 시험소의 시험을 거친 후 산업무역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인증서를 발행 받은 후에 에너지 효율 라벨 부착이 가능하다.

에너지 효율 라벨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한다.

1) 인증 라벨(Nhan xac nhan): 교통수단, 설비가 같은 종류의 다른 수단보다 높은 효율을 갖췄음에 대해 증명하는 것으로, 산업무역부에서 주기적으로 정하는 에너지 효율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제품에 대해 부착 가능.

2) 등급 라벨(Nhan so sanh): 에너지 소비 정도, 사용 에너지의 종류, 출력 정도 등 사용자가 같은 종류의 다른 상품과 비교를 할 때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라벨로써, 5등급으로 구분되어 별이 많을 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임.

[표 6] 04/2017/QĐ-TTg 총리령 규정 에너지 라벨 강제 부착 대상 리스트

구 분	명 세	참 고
가정용 및 산업용 기기 및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관형 형광램프, 컴팩트 형광램프, LED 전구 - 전자기식 및 전자식의 형광램프용 안정기 - 에어컨, 전기 쿠커, 냉장고, 선풍기, 축열식 온수기 - 가로축 및 세로축 세탁기 - 비디오카메라 - 삼상 배전용 변압기, 전동기 	 <p>인증 라벨 예시</p>
사무용 및 상업용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용 냉장고 - 복사기, 프린터 -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컴퓨터 	 <p>등급 라벨 예시</p>
교통운송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인승 이하 자동차 - 오토바이와 모페드 	





6 마치며

베트남은 GDP 성장률, 인구 증가세 등을 보아 인근 아세안 국가에서도 빠른 성장을 거듭하는 만큼, 수출기업들에게 있어서 매력적인 시장 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지에서 접수되는 기업들의 각종 애로 사항을 보면, 법령 해석의 모호함, 일선 세관의 일관적이지 않은 해석, 정보 불충분 등으로 인해 통관 지연이나 반송 사례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베트남 진출 희망 기업들은 아래 필수 사항들에 대한 다각적인 시장 조사를 통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겠으며 현지 수입자와의 논의를 통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문제 사항에 대해 빠른 해결을 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성공적인 진출의 시작이 될 것이다.

1. 진출 상품의 HS code
2. 베트남 현지 관세율 정보
3. 제품 수입 요건 및 관련 개별법령에서 다루는 각종 규제 사항
4. 해당하는 경우 임의 인증 취득 필요 여부
5. 수입자의 자격 요건 취득 여부



FTA TRAD



FTA 100% 활용하기

CBAM은 글로벌 기후 통상규제의 출발 신호

이상준 | 국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부교수

E REPORT

CBAM은 글로벌 기후 통상규제의 출발 신호



이상준

국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부교수



1 구체화되고 있는 글로벌 기후 통상규제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온 개방경제 국가이다. 개방경제를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한다는 면에서 진취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글로벌 환경 변화에 취약하다는 약점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대외환경의 변화를 날카롭게 인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개방경제가 가진 취약성을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길이다.

최근 대외적인 통상환경의 변화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길을 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의 핵심축으로 기후·환경적 요소가 글로벌 무역 규제로 구체화되어 도래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경향의 효시로 EU에서 탄소국경조정제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가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CBAM은 앞으로 기후환경 관련 글로벌 무역 규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CBAM에 대한 이해는 앞으로 기후변화 문제가 이끄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명확히 인식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EU CBAM은 2021년 7월 입법안이 발표되면서 시행이 예고되었으나 실제 입법이 이루어 지기까지는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다.

CBAM은 오랜 논의 끝에 2022년 12월 18월 집행위, 이사회, 의회가 규제안에 합의하면서 도입이 확실시되었으며 2023년 5월 10일 이사회, 유럽의회가 규제안을 승인하고 5월 16일 관보에 게재되어 공식 발효되었다.

2 CBAM은 어떻게 시행되는가?

CBAM에 대한 개략적 이해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통하여 CBAM의 시행방식을 간단히 살펴보자.

첫째, CBAM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CBAM은 법률에 명시된 대상목을 수입하는 EU의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흔히 CBAM이 수출국의 업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CBAM은 EU의 역내법으로 EU 역외 수출업체가 대상이 아니고 EU의 수입업자가 규제 대상이다.

둘째, CBAM은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는가? CBAM은 EU 수입업자가 제품의 수입에 따라 EU 배출권(EUA) 가격에 기반한 CBAM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사실 이 방식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인증서를 구매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금전적 부담을 진다는 것과 이 가격이 변동성이 있다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셋째, 납부하는 인증서의 수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 질문은 무엇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인지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제품에 내재된 배출량(embedded emissions)이라는 기준이 등장한다. 수입 제품에 내재된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입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CBAM 인증서 수량이 결정되고 수입업자는 이 수량만큼 CBAM 인증서를 구매 해서 제출해야 한다.

즉, 제품에 내재된 배출량이 많으면 구매해야 되는 인증서 수량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며 만약 내재된 배출량이 영(零)인 무탄소 제품이라면 전혀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넷째, 원산지에서 탄소가격을 납부한 경우 어떻게 조정하는가? 이 질문은 원산지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가격을 이미 납부했다면 CBAM의 부담이 이중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EU CBAM은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에서 탄소가격을 납부한 경우 상응하는 물량 만큼 인증서 구매량을 차감해 준다.

[표 1] CBAM 시행방식

방식	내용
누가 CBAM의 대상인가?	적용 대상 품목을 수입하는 EU 수입업자(EU importer)
어떻게 시행하는가?	수입업자는 CBAM 인증서(certificates)를 구매 (인증서 가격은 주간 EUA 가격에 기반)
무엇을 기준으로 조정하는가?	수입업자는 수입 제품에 내재된(embedded) 배출량을 보고 → 제품 내재 배출량 기준 CBAM 인증서 구매량 결정 →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제출(surrender)
원산지에서 탄소가격을 납부한 경우	제품 생산 시 납부한 원산지 탄소가격은 상응량을 차감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3) 참고하여 저자 정리



3 CBAM의 핵심 사항은 무엇인가?

CBAM의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의 6개 품목이다. 이 중 우선 우리나라 기업이 직접적 영향권에 놓이게 되는 품목은 철강과 알루미늄이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각각 對EU 수출이 2021년 기준 43억 불, 5억 불 수준으로 향후 CBAM이 시행되면 부담이 발생할 것이다. 나머지 품목은 EU와 유의미한 수준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품목이다.

CBAM의 시행은 2026년 1월부터 본격화되지만, 올해 10월부터 당장 시범운영이 시작된다. 이 기간에 실제 금전적 부담은 하지 않으나 배출량의 보고 의무는 존재하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다.

EU는 CBAM의 시행과 더불어 그간 EU ETS에서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적용하던 무상 할당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일정을 확정하였다. CBAM을 통해 탄소누출 대응을 대체하면서 기존의 수단인 무상할당은 축소하고, 그로써 관련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2026년에 시작하여 2033년까지 점차 유상할당의 비중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이행 된다.

[표 2] CBAM 핵심 요소

구 분	CBAM Regulation
적용 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6개 품목)
시행시기	2026년 1월 2년 3개월 시범운영(2023. 10.~2025. 12.)
CBAM 적용 품목 EU ETS 무상할당	2026년 개시 2033년 완전 폐지
적용 배출유형	직접배출 + 간접배출(특정조건 下)
기타	중앙등록처 신설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3) 참고하여 저자 정리

CBAM이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의 유형 면에서 CBAM은 우선 직접배출을 대상으로 하되 특정 조건에 따라 간접배출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아직 간접배출이 배출량 보고에 포함되는 조건은 자세히 공표된 바가 없으므로 향후 이행법안이나 지침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CBAM은 우리나라 수출에 큰 영향을 줄 것인가?

CBAM이 우리나라 수출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 영향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CBAM의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이 매년 부담해야 되는 CBAM 인증서 제출량에 따른 재무적 부담과 더불어 수출국 간에 가격경쟁력 수출 제품군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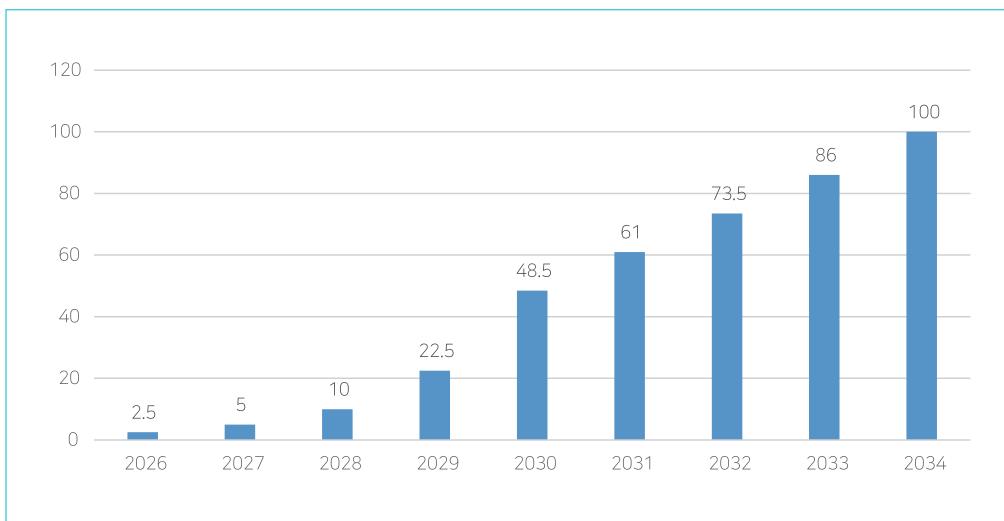
개략적인 추정이 가능한 CBAM 인증서 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CBAM의 영향을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확정된 CBAM 규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철강 기업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필자가 추정해본 결과 본격 시행 초기인 2026년 약 800억 원 가량의 CBAM 인증서 구매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CBAM 부담은 EU가 무상할당을 축소하면서 증가한다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CBAM 인증서 부담은 2030년 경에는 약 3,000억 원, 2034년에는 5,500억 원 수준으로 증가한다.¹

개념적으로 무상할당 비중은 실효적으로 탄소 가격을 부담하지 않는 수준을 의미하므로 다음의 그림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무상할당이 축소되면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CBAM의 부담 수준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¹ 이는 현재 EU 배출권 가격을 기준으로 분석해 본 결과로 향후 EU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면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림 1] CBAM의 도입에 따른 EU ETS 무상할당 촉소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2) 참고하여 저자 작성





5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앞의 [표 1]에서 제시된 것처럼 기업이 부담하는 CBAM 인증서 수량은 제품 내재 배출량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수출기업은 제품 내재 배출량 산정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구나 실제 배출량에 대한 충실한 보고가 이행되지 않으면 불리한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우선 제품 내재 배출량 산정 체계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나 목표관리제 등의 규제하에 있는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검증 등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 등에서의 온실가스 산정과 CBAM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산정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는 설비나 사업장 단위의 배출량을 산정하면 되지만 CBAM은 제품 단위의 배출량 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품 단위의 산정은 기존 방식에 비해 훨씬 고도화된 체계를 갖추어야 가능하다.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경험이 축적되어야 순조롭게 대응이 가능할 것임은 물론이다.

궁극적으로 우선 EU에 수출하는 제품군을 시작으로 한 저탄소 제품의 라인업을 구축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CBAM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기반한 무역 규제는 본질적으로 저탄소 제품을 우대하는 질서를 구축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요소는 더 이상 가격과 품질과 같은 전통적인 요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CBAM은 저탄소, 고효율 제품 등 기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품이 우대받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의 신호탄이 아닐까 한다.



FTA TRAD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
(Other vegetables prepared or preserved)

김용태 | 법학박사·관세사 /

(사)한국FTA원산지연구회 사무총장·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경제통상학과 겸임교수

E REPORT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

(Other vegetables prepared or preserved)



김용태

법학박사·관세사 /

(사)한국FTA원산지연구회 사무총장·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경제통상학과 겸임교수

1 HS 품목분류

'채소'는 밭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을 말하며, 주로 그 잎이나 줄기 또는 열매 따위를 식용하는데, 보리나 밀 따위의 곡류는 제외한다. 하지만 뿌리 또는 땅속줄기를 먹는 채소인 무, 우엉, 토란, 당근, 연근, 마늘 따위는 뿌리채소로서 채소의 범주에 속한다.

HS 품목분류표상 채소류는 그 용도가 식용을 전제로 제07류나 제11류 또는 제4부에서 분류할 수 있는데, 특히 제07류에서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는 제20류에 분류한다. 따라서 제07류와 제20류의 분류기준의 차이는 제시되는 채소가 조제한(prepared) 또는 보존처리한(preserved) 상태 여부가 결정적으로 좌우한다.

제07류에 분류하는 채소의 상태는 신선·냉장·냉동(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서 조리한 것) 또는 일시 보존처리나 건조(탈수·



증발이나 동결건조한 것을 포함한다)시킨 방법으로 가공되어야 한다.

이에 반하여 제20류에 분류되는 채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공된 상태이어야 한다: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 설탕으로 보존처리; 균질화 공정; 주스 공정처리(발효하지도 않고 알코올을 첨가하지도 않은 것으로서,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0.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제7류·제8류·제11류나 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그 밖의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

그런데 HS 품목분류 실무에서 제시된 채소가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상태인지 아니면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상태인지 여부에 대한 쟁점이 종종 발생한다. 이하에서 실제 쟁점이 제기된 사례를 들어 각각 분류 기준을 살펴본다.

쟁점물품의 Invoice에 기재된 품명은 “ZHACAI THREAD”로 주로 중식요리의 식사용 반찬이다. 이 물품의 절임과정은 중국무(우) 85%와 정제소금 15% 비율로 섭씨 10~17도 온도의 저장고에 겹겹이 섞으면서 적층으로 넣은 다음 맨위 뚜껑을 비닐로 덮은 후에 무거운 모래

주머니로 저장고를 꼭꼭 눌러 밀봉하고 6개월 동안 발효 숙성한다. 쟁점물품의 전체 제조·가공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원재료(중국무: 직경 16~20cm) 입고 → 검수 → ② 정제소금에 절임(6개월 이상) → ③ 잔뿌리(힘줄) 제거 → ④ 세척 및 절단(3mm 두께로 채썰기) → 선별 → ⑤ 진공(멸균)포장(개당 800g) → 냉각 → 박스포장.

이와 같은 제조·가공 과정은 아래의 그림 ①~⑤)과 같다.

쟁점물품이 HS 품목분류표에서 제0711호의 분류범위에 해당하려면, 두 가지 분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 하나는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채소(vegetables provisionally preserved)”에 해당할 요건과 다른 하나는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① 신선 촉채



② 절임 촉채



③ 잔뿌리(힘줄) 제거



⑤ 진공(멸균)포장



④ 채썰기



않은 것(unsuitable in that state for immediate consumption)"에 해당할 요건이다.

먼저,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채소"의 해당성 여부를 살펴본다.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은 그 용어가 HS 품목분류표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용어의 일상적 또는 자연적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면¹ 그 보존이 "영구적이지 않는 보존처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처리" 이전 상품의 본래적 용도(사용목적)와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처리" 이후 상품의 용도(사용목적)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처리"는 어떤 상품의 본래적 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상품의 본래적 용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상품의 본질적 특성에 변경을 가하는 것 — 새로운 상품을 생성하는 것 —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절임과정' 처리 이전의 본래적 용도와 '절임과정' 처리 이후의 용도가 다르다면 그 '절임과정' 처리는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처리"로 볼 수 없으므로 제7011호의 용어가 허용하고 있는 적용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1 Smith v. United States, 508 U.S. 223, 228(1993) 참조.

다음으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의 해당성 여부를 살펴보자.

우리나라 관세율표가 제0711호의 용어에서 “unsuitable in that state for immediate consumption”을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국문 법문화한 것은 원문의 뜻을 올바르게 수용하여 입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관세율표가 ‘식용’ (edible)으로 번역한 ‘consumption’의 사전적 의미가 “소비자 또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the using up of goods or service, either by consumers or in the production of other goods)² 혹은 “물건을 사용하여 파괴하는 행위; 그것을 다 써 버리는 방법으로 물건을 사용하는 것”(the act of destroying a thing by using it; the use of a thing in a way that exhausts it)³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관세율표는 원문의 ‘immediate’란 단어의 의미도 생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unsuitable in that state for immediate consumption”이란 용어는 “그 상태로는 바로(추가 처리과정 없이) 소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이 법문의 뜻은 대상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가공과정이나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곧바로 의도된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식용의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쟁점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아무런 추가적인 가공과정이나 처리과정 없이 곧바로 소비자의 사용에 적합한 물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물품은 HS 품목분류표 제2005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는데, 그 세부 분류범위는 다음과 같다.



2 Webster's New World College Dictionary, Third Edition(New York: A Simon & Schuster Macmillan Company, 1996), page 300.

3 Black's Law Dictionary[Ninth Edition](USA: Thomson Reuters, 2009), page 359.



2005.10 … 균질화한 채소

2005.20 … 감자

2005.40 … 완두(*Pisum sativum*) ;
콩(*Vigna*속·*Phaseolus*속)

2005.51 … 꼬투리를 벗긴 콩

2005.59 … 기타

2005.60 … 아스파라거스(*asparagus*)

2005.70 … 올리브

2005.80 …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saccharata) ;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

2005.91 … 죽순

2005.99 … 기타

이들 물품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제2005호로 분류하는데, 이들 물품은 흔히 캔이나 밀폐용기로 포장되어 있지만 포장한 용기의 형태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할 수 있다.

물론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제2001호)·냉동채소(제2004호)·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제2006호)는 제2005호의 분류범위에서 제외된다.

제2005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원래 모양·조각 모양이나 잘게 부순 성상(性狀)으로 바로 먹을(소비할) 수 있도록 물·토마토소스나 그 밖의 성분에 저장한다. 또한, 이들은 균질화하거나 샐러드와 같이 서로 혼합하기도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주요 조제품으로 올리브, 사우어크라우트(sauerkraut), 스위트콘[속대(cob)가 있거나 낱알 모양인 것]·당근·완두 등이 있는데, 올리브의 성상(性狀)은 소다용액으로 특별히 처리하거나 염수에 오래 침지(浸漬)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한 것이고, 사우어크라우트의 성상은 양배추를 작게 절단하여 소금에 절여서 일부 발효시켜 조제한 것이며, 스위트콘·당근·완두 등의 성상은 사전 조리한 것 또는 버터나 그 밖의 소스와 함께 조합한 것이다.

여기에서 만일 올리브를 단순히 일시 염수에 보존처리하였다면 제0711호에 분류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2005호의 분류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제2005호의 분류범위에 감자의 고운 가루·소금과 소량의 글루탐산나트륨으로 만든 얇은 직사각형 태블릿(tablet) 모양의 물품으로서, 연속적으로 가습과 탈수를 하여 부분적으로 덱스트린화 한 것도 포함되는데, 이들 물품은 몇 초간 다량의 기름으로 튀김을 한 후에 '칩(chips)'으로 식용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바삭바삭하며 짭짤한 맛의 식품(제1905호)과 채소주스(제2009호)는 제2005호에 분류될 수 없으며,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0.5%를 초과하는 채소주스도 제22류에 분류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호의 분류범위에서 제외된다.



2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1. 주요 FTA에서 제07류 원산지상품의 인정기준

한-중국, 한-아세안 FTA에서 제07류에 분류되는 “식용의 채소·뿌리·고경 등”(이하 ‘채소류’라 한다)의 상품은 해당 체약당사국에서 완전 생산되지 아니하였다면 FTA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제3국에서 수입된 채소류의 종자(제1209.91호 분류)나 종묘(제0602호 분류)를 사용하여 해당 체약당사국에서 파종·재배한 제07류에 분류되는 채소류는 FTA 원산지상품으로 취급될 수 없다.

하지만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채소류의 종자(제1209.91호 분류)나 종묘(제0602호 분류)로 해당 체약당사국에서 파종·재배한 제07류에 분류되는 채소류는 영역원칙의 예외로 누적조항(cumulation)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FTA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한-미국 FTA와 RCEP에서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이 2단위 세번 변경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3국에서 수입된

채소류의 종자(제1209.91호 분류) 또는 종묘(제0602호 분류)를 사용하여 재배한 제7류에 분류되는 채소류는 FTA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다.

다만, RCEP에서는 제3국의 종자나 종묘로 파종·재배된 채소류가 제0701호 내지 제0709호에 분류된다면 FTA 특혜관세대우가 허용될 수 없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3국에서 수입된 파종용 또는 신선·냉장한 채소류를 이용하여 체약당사국에서 재배하거나 단순히 냉동·건조·밀폐용기포장한 채소류는 2단위 세번변경이 아닌 4단위 세번변경만 발생하므로 FTA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한-미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한-중국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한-아세안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RCEP	제0701호~제0709호	완전생산기준
	제0710호~제0714호	2단위 세번변경기준

2. 주요 FTA에서 제2005호 원산지상품의 인정기준

한-미국, 한-중국 FTA와 RCEP에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의 상품은 해당 체약당사국에서 가공·생산된 조제품의 원재료가 제3국에서 수입된 경우 제20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FTA 원산지상품으로 취급된다.

여기에서 한-미국 FTA에서는 제3국에서 수입된 원재료가 제0701호에 해당하거나 해당 체약당사국에서 조제 또는 저장처리(냉동, 포장 또는 볶음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정을 포함한다)하여 완성된 조제품이 냉동, 물·소금물·천연주스를 사용한 포장(통조림 포장을 포함한다) 또는 볶음(건조상태 또는 기름의 사용)의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세번변경기준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 경우 만일 해당 원재료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것이라면 영역원칙의 예외로 누적조항(cumulation)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FTA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한편, 한-아세안 FTA에서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가 FTA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려면 제3국의 원재료를 사용한 해당 체약당사국에서 완성된 조제품을 가공·생산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FOB 가격기준으로 40퍼센트 이상이 발생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완성된 조제품이 김치에 해당한다면 역내부가가치 발생기준은 60퍼센트로 강화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소호 제2005.10호 내지 제2005.80호의 완성된 조제품은 해당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미만이라 하더라도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한-미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7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20류의 주석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정한다.	
한-중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한-아세안	제2005.10호 ~제2005.80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2005.91호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2005.99호	① 김치: 6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② 기타: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CEP	2단위 세번변경기준	

투입된 제3국의 원재료가 제2005호를 제외한 제20류에 분류된다면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다.

* <제20류의 주석>: 냉동, 물·소금물·천연주스를 사용한 포장(통조림 포장을 포함한다) 또는 볶음(건조상태 또는 기름의 사용)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냉동, 포장 또는 볶음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정을 포함한다)한 제2001호부터 제2008호까지의 채소·과실 및 견과류 조제품은 채소·과실 및 견과류(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체약당사국에서 전부 생산된 경우에만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

참고문헌

- 김용태, FTA 원산지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두남, 2022)
- 오수교(편저), 관세율표법령집[HS제7차개정판]
(서울: 세인북스, 2022)
- Black's Law Dictionary[Ninth Edition]
(USA: Thomson Reuters, 2009)
- Webster's New World College Dictionary,
Third Edition(New York: A Simon & Schuster Macmillan Company, 1996)





FTA TRAD



활용하기 쉬운 FTA-PASS

원산지관리가 편리한 FTA-PASS

- 고객사 물품정보로 원산지확인서 발급 -

구본현 | 한국원산지정보원 과장/원산지관리사

김소연 | 한국원산지정보원 원산지관리사

E REPORT

원산지관리가 편리한 FTA-PASS

- 고객사 물품정보로 원산지확인서 발급 -



구본현
한국원산지정보원
과장/원산지관리사



김소연
한국원산지정보원
원산지관리사

FTA PASS



FTA-PASS는 2010년 관세청 주관으로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한 원산지관리시스템으로, 수출/제조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업무 지원을 위해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사용자는 FTA-PASS에서 원산지판정, 원산지 증명 서류 발급과 유통, 원산지 입증자료 보관, 사후 검증 대비 등이 가능하다.

원산지관리 전담자는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할 때 자사에서 관리하는 물품명이 아닌 고객사에서 지정한 물품명을 사용하여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고객사가 요청한 대로 서류를 발급하면 자사에서 사용하는 물품명으로 원산지관리를 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사후 검증 시 원산지소명에 있어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FTA-PASS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고자 자사 물품명을 기준으로 거래처마다 물품명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번 호에서는 물품명을 이원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인 ‘거래처 물품정보’에 대해 설명하겠다.

1. 거래처 물품정보란?

자사에서 관리하는 물품명이 고객사에서 요청한 물품명과 다를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해당 기능을 통해 물품관리는 자사 기준으로, 서류발급은 고객사 요청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거래처 물품정보는 원산지 판정에 있어 필수메뉴는 아니지만 거래처 물품정보 메뉴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거래처와 물품정보 메뉴의 정보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

2. 거래처 물품정보 등록

거래처 물품정보를 등록하기 위해서 기준정보에 있는 거래처, 물품정보 메뉴 등록을 선행한다. 그 후 거래처 물품정보 메뉴에서 거래처별로 요청한 정보를 등록한다. 이때 엑셀을 활용하여 일괄 등록할 때는 ①양식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데이터를 입력하면 되고 단건으로 등록할 때는 ②오른쪽에 있는 항목을 작성하여서 등록하면 된다.

① 물품번호	물품명	거래처코드	거래처명	거래처 물품번호	거래처 물품명	거래처 물품규격
② 물품번호	물품명	거래처코드	거래처명	거래처 물품번호	거래처 물품명	거래처 물품규격

· 거래처 물품번호	· 거래처 물품명	· 거래처 물품규격
· 거래처 물품번호	· 거래처 물품명	· 거래처 물품규격
· 거래처 물품번호	· 거래처 물품명	· 거래처 물품규격
초기화		
등록		

[그림 1] 거래처 물품정보 등록 화면

● 활용하기 쉬운 FTA-PASS »

거래처 물품정보에서 단건으로 등록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하겠다.

물품번호는 물품정보 메뉴에 등록한 완제품 물품번호를 ①검색하여 정보를 호출한다.(직접 입력 불가) 그럼, 물품정보에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물품명이 자동으로 기재된다. **거래처코드**는 거래처 메뉴에 등록된 고객사 코드를 ②검색하여 정보를 호출한다.(직접입력 불가) ③**거래처 물품번호**는 거래처에서 요청한 물품명을 직접 입력한다. 정보등록을 완료하였으면 ④**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정보를 저장한다.



❶ 거래처 물품정보
❷ 기준정보 · 거래처 물품정보

	물품번호	물품명	거래처코드	거래처명	거래처 물품번호	거래처 물품명	거래처 물품규격
1	<input type="checkbox"/>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SP-085-00-KRb	한화전자	HL-SR-10	CCTV Camera 1 Channel(KR)	
2	<input type="checkbox"/>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SP-085-00-US	어에리카전자	US-087-10	CCTV Camera 1 Channel(US)	
3	<input type="checkbox"/>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SP-085-00-VN	한화전자	VN-087-10	CCTV Camera 1 Channel(VN)	
4	<input type="checkbox"/> SP-087-20	CCTV 카메라 2채널	SP-085-00-KRb	한화전자	HL-SR-20	CCTV Camera 2 Channel(KR)	
5	<input type="checkbox"/> SP-087-20	CCTV 카메라 2채널	SP-085-00-US	어에리카전자	US-087-20	CCTV Camera 2 Channel(US)	
6	<input type="checkbox"/> SP-087-20	CCTV 카메라 2채널	SP-085-00-VN	한화전자	VN-087-20	CCTV Camera 2 Channel(VN)	
7	<input type="checkbox"/> SP-087-40	CCTV 카메라 4채널	SP-085-00-KRb	한화전자	HL-SR-40	CCTV Camera 4 Channel(KR)	
8	<input type="checkbox"/> SP-087-40	CCTV 카메라 4채널	SP-085-00-US	어에리카전자	US-087-40	CCTV Camera 4 Channel(US)	
9	<input type="checkbox"/> SP-087-40	CCTV 카메라 4채널	SP-085-00-VN	한화전자	VN-087-40	CCTV Camera 4 Channel(VN)	

❸ 거래처 물품번호
❹ 등록

※ 참고사항

· 입력항목	· 용도	· 설정방법
· 거래처 물품번호	[원산지확인서]	[시스템관리→환경설정→서류업]
· 거래처 물품명	거래처 물품명 표기	원산지확인서 유형(B형)
· 거래처 물품규격	[기관/APTA/자율 원산지증명서]	-
	거래처 물품명 표기	
	[기관/APTA/자율 원산지증명서]	
	거래처 물품규격 표기	

[그림 2] 거래처 물품정보 항목 소개

3. 원산지확인서 발급

정보등록을 완료한 후 원산지판정을 수행하면 서류발급이 가능하다. 서류관리의 원산지확인서 메뉴에서 오른쪽 아래에 ①작성을 클릭하여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한다.

[그림 3] 원산지확인서 발급 화면

공급 받는자를 ②검색하여 정보를 호출한 후 ③물품조회를 하면 원산지판정이 완료된 물품이 조회된다. 이 중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할 물품을 선택하여 적용, 닫기를 클릭하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정보가 호출되는데 이때 ④고객사 물품번호에 거래처 물품정보에서 등록하였던 정보가 호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후 ⑤포괄확인기간을 설정한 다음 ⑥저장한다.



활용하기 쉬운 FTA-PASS »

❶ 원산지확인서

❷ 세관장사전화인신청

❸ 영수자동보

❹ 공급 하는자

상호	custom88	정보원 관리자	④ 고객사 물품번호	사업자번호	211-82-16919
대표자성명	임대표88			E-mail	user88@test.go.kr
전화번호	+82-00-100-0088			팩스번호	+82-00-100-0088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답로205번길 8(아답동)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input type="text"/> 조회

❺ 공급 받는자

상호	SP-085-00-K	한라전자	② 물품명	사업자번호	019-00-00000
대표자성명	고현라			E-mail	hanrage@hallal.com
전화번호	+82-2-5355-6264			팩스번호	+82-2-6264-5355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5			원산지요청서번호	<input type="text"/> 검색

❻ 공급물품 명세

고객사 물품번호	자사 물품번호*	물품명*	규격	수량	단위	세번*	원산지기준	총죽부분*	작용합정*	원산지	※시작일설정 [당일 / 달월 / 음력 / 내년]	DV 20% 최소공정0	포괄적인기간 일괄입력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7)	EA (7)	852580	B 14%	Y	APTA KR	2023-01-01	2023-12-31	N	E (예) ✓	Y (예) ✓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7)	EA (7)	852581	CTH	Y	RCEP KR	2023-01-01	2023-12-31	N	E (예) ✓	Y (수) ✓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7)	EA (7)	852580	CTH	Y	한-EFTA KR	2023-01-01	2023-12-31	N	E (예) ✓	E (예) ✓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7)	EA (7)	852580	MC 50%	Y	한-EU KR	2023-01-01	2023-12-31	N	E (예) ✓	E (예) ✓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7)	EA (7)	852580	CTH	Y	한-뉴질랜드 KR	2023-01-01	2023-12-31	N	E (예) ✓	E (예) ✓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7)	EA (7)	852580	CTSH	Y	한-미국 KR	2023-01-01	2023-12-31	N	E (예) ✓	E (예) ✓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7)	EA (7)	852580	CTH	Y	한-베트남 KR	2023-01-01	2023-12-31	N	E (예) ✓	E (예) ✓

보기 1 ~ 7 / 7

❻ 물품조회

※ 고객사 물품번호(슬랙스 표기기능)을 기재방법: 1.[기준정보 → 거래처 물품정보] 등록, 2.[시스템관리 → 환경설정 → 서류명]에서 원산지확인서 유형(B) 설정

❷ 목록으로 ❸ 세 원산지확인서 ❹ 저장

[그림 4] 원산지확인서 작성 화면

마지막으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면 ⑦원산지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7번 품명·규격 항목의 ⑧고객품번을 보면 정상적으로 고객사 요청 물품명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❶ 원산지확인서

❷ 세관장사전화인신청

❸ 영수자동보

❹ 공급 하는자

상호	정보원 관리자
대표자성명	임대표88
전화번호	+82-00-100-0088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답로205번

❺ 공급 받는자

상호	한라전자
대표자성명	고현라
전화번호	+82-2-5355-626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5

❻ 공급물품 명세

고객사 물품번호	자사 물품번호*	물품명*	규격	수량	단위	세번*	원산지기준	총죽부분*	작용합정*	원산지	※시작일설정 [당일 / 달월 / 음력 / 내년]	DV 20% 최소공정0	포괄적인기간 일괄입력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7)	EA (7)	852580	B 14%	Y	APTA KR	2023-01-01	2023-01-01	N	E (예) ✓	Y (예) ✓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7)	EA (7)	852581	CTH	Y	RCEP KR	2023-01-01	2023-01-01	N	E (예) ✓	Y (수) ✓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7)	EA (7)	852580	CTH	Y	한-EFTA KR	2023-01-01	2023-01-01	N	E (예) ✓	E (예) ✓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7)	EA (7)	852580	MC 50%	Y	한-EU KR	2023-01-01	2023-01-01	N	E (예) ✓	E (예) ✓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7)	EA (7)	852580	CTH	Y	한-뉴질랜드 KR	2023-01-01	2023-01-01	N	E (예) ✓	E (예) ✓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7)	EA (7)	852580	CTSH	Y	한-미국 KR	2023-01-01	2023-01-01	N	E (예) ✓	E (예) ✓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7)	EA (7)	852580	CTH	Y	한-베트남 KR	2023-01-01	2023-01-01	N	E (예) ✓	E (예) ✓

❻ 물품조회

※ 고객사 물품번호(슬랙스 표기기능)을 기재방법: 1.[기준정보 → 거래처 물품정보] 등록, 2.[시스템관리 → 환경설정 → 서류명]에서 원산지확인서 유형(B) 설정

❷ 목록으로 ❸ 세 원산지확인서 ❹ 저장

[그림 5] 원산지확인서 출력 화면

5. 마무리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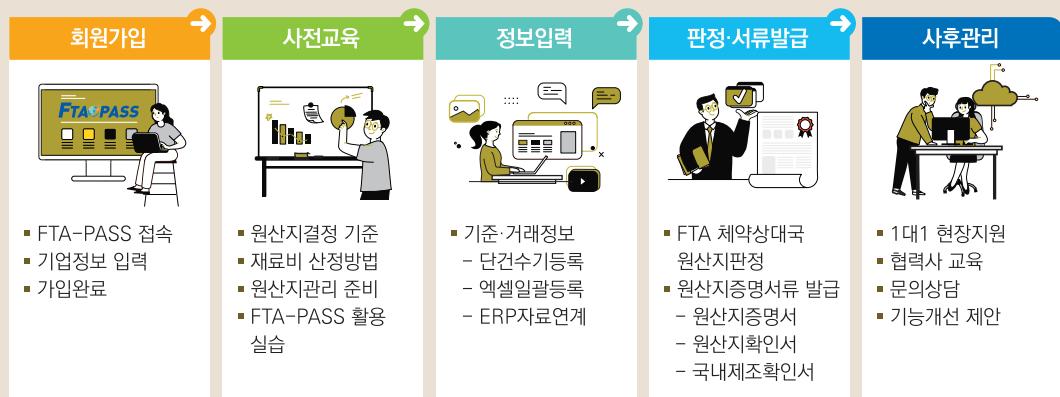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는 매달 FTA 및 시스템 기능 이해를 위한 내용을 소식지로 제작하여 회원사에 메일링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FTA-PASS 회원으로 가입하면 등록한 메일을 통해 소식지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덧붙여 FTA-PASS 활용기업을 위해 품목분류(HS)자문, 현장방문, 원격지원, 전화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에서 FTA-PASS를 사용하다가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언제든지 FTA-PASS에서 제공하는 하단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FTA-PASS란?

FTA-PASS는 중견·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주관으로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원산지관리 시스템이다.

**FTA-PASS 주요기능**

FTA-PASS는 아래와 같이 회원가입 후 사전 교육을 받아 FTA-PASS에 대한 이론 학습 및 실습을 마친 후 활용 하는 게 이상적이다.



체계적인 FTA 원산지관리, FTA-PASS를 무료로 활용하세요!



▶ 시스템 바로가기 : <https://www.ftapass.or.kr>

1. FTA-PASS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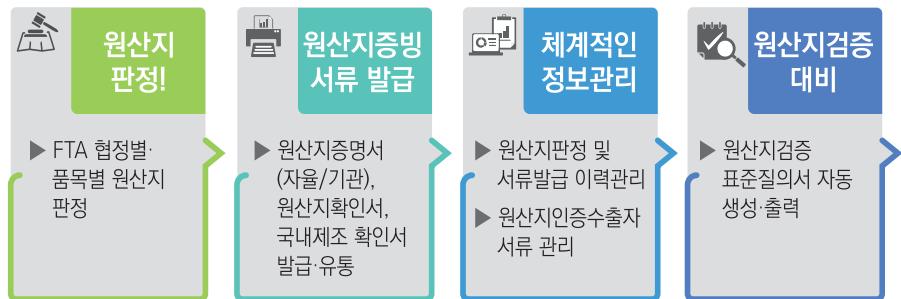
■ 시스템 개요

중견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주관으로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

■ 활용상 이점

정확한 원산지판정과 원산지증빙서류 발급 관리로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대비 등 효율적인 원산지관리 실현

2. FTA-PASS 주요기능



3. FTA-PASS 활용 유형

기본형	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재고관리기법(월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을 이용하여 재료비를 산출- 정보관리 : 원산지정보, 구매원장, 매출원장, 수불부, FTA별 정보관리 (엑셀13종)- 출력서식 : FTA원산지증명서(기관/자율),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생산공정도, 작성대장, 서명카드
	중견·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용자가 정의한 재료비를 사용하여 원산지관리- 정보관리 : 원산지정보, 구매단가, 판매단가 (엑셀 9종)- 출력서식 : FTA원산지증명서(기관/자율),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생산공정도, 작성대장, 서명카드
간편형	영세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최소한의 정보와 노력으로 원산지관리- 정보관리 : 거래처, 자재명세서 (엑셀 2종)- 출력서식 : FTA원산지증명서(기관/자율),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작성대장, 서명카드
체험형	시뮬레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로그인 없이 최소한의 정보 입력으로 모의판정 가능- 수출(공급)물품의 자재명세서(BOM) 입력 후 원산지판정 수행



상담전화 : 1544-0645 (문의시간 : 평일 09:00~18:00)
문의메일 : fta-pass@origin.or.kr





FTA TRAD



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FTA 활용 시 원산지증빙서류 보관의무의 중요성

강태우 | 대홍합동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E REPORT

FTA 활용 시 원산지증빙서류 보관의무의 중요성



강태우
대홍합동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1 개요

FTA 협정을 통해 특혜를 적용받으면 해당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와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국내의 수입자·수출자·생산자 및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체약상대국 수출자·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원산지 검증이라고 한다.

원산지 검증 시 기관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증빙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증기관의 요청에도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하여 원산지 증명서 내용을 입증하지 못할 때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 과태료 처분, 벌금형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FTA를 활용할 때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정해진 기간 동안 반드시 보관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은 FTA를 활용하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므로 보관의무 규정과 규정 위반 시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원산지증빙서류 보관의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한 수입자는 FTA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된 기한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3 보관 대상 원산지증빙서류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원산지증빙서류는 아래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자료에 한정하지 않고 검증 대상에 따라 증빙자료의 종류 및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제시된 증빙자료 외 기타의 자료 및 방법으로도 원산지임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류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되 그 대상에 따라 원산지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료를 추가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FTA특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각각의 주체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 가.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다만,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 나. 수입신고필증
- 다.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라.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 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 바.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사.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 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 나. 수출신고필증
- 다.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라. 해당 물품의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및 출납 · 재고관리대장
- 마.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3. 생산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 가.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 · 제공한 서류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생산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 라.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 마. 해당 물품 생산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바. 원가계산서 · 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사.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 · 재고관리대장

4**보관의무 위반 시 제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과 함께 그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원산지 검증 시 검증기관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고 있으며, 요청이 있으면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 수입자는 요청된 기한 내에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검증기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미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었을 때는 FTA특례법과 각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배제 등 제재를 받게 된다.

1. 협정관세 적용 배제

FTA특례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등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이 제한되며,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제38조의 3 제6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요청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②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③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제출한 자료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④ 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벌금(2,000만 원 이하)

FTA특례법 제44조 ①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 등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 ① 협정 및 특례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특례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③ 특례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과태료(1,000만 원 이하)

FTA특례법 제46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② 특례법 제17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결론

FTA 활용이 어려운 것은 업무의 영역이 단순히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검증에 미리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원산지 검증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그 중요성을 체감하기 어렵지만 원산지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모의검증을 수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나마 체감할 수 있다.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은 원산지 검증을 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인증 수출자를 활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매번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원산지 검증 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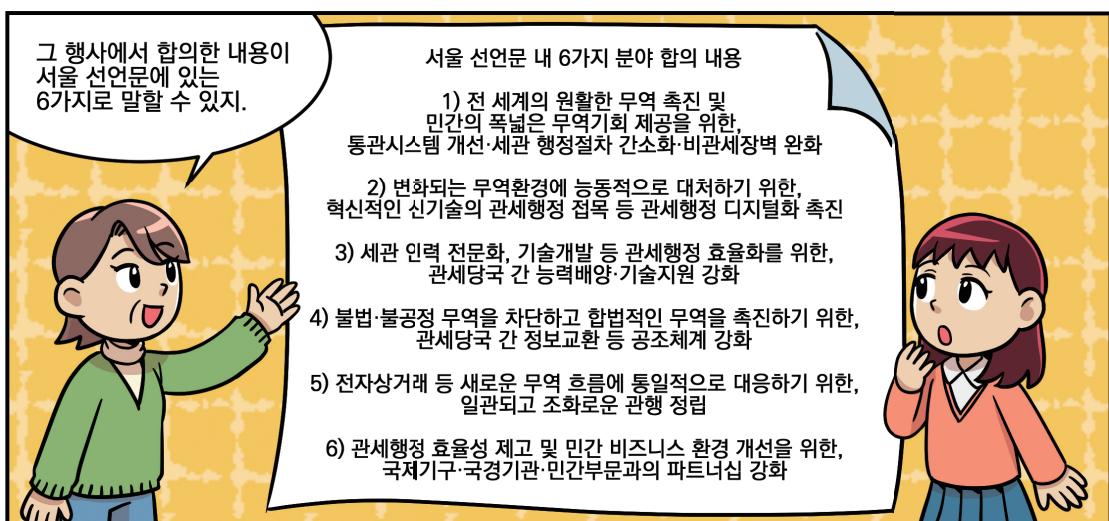
제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원산지 검증 시 그 내용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그동안 받은 특혜를 돌려줘야 해서 업체가 받는 경제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또한 향후 협정 적용을 배제당하여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면 그로 인한 경쟁력 상실이 발생할 수 있다.

원산지증빙서류 보관의무를 준수하고 주기적으로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케이-커스텀즈 위크(K-Customs Week) 2023]





- 분석배경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국의 2021년과 2022년의 MTI 1단위 기준 상위품목(MTI 3단위)의 교역 증감을 확인하고자 함
- 기준연도 : 2021년 vs. 2022년 증감 비교
- 대상협정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
- 주요내용 : FTA 대상 수출입(기준: MTI 1단위, MTI 3단위)

FTA TRADE



FTA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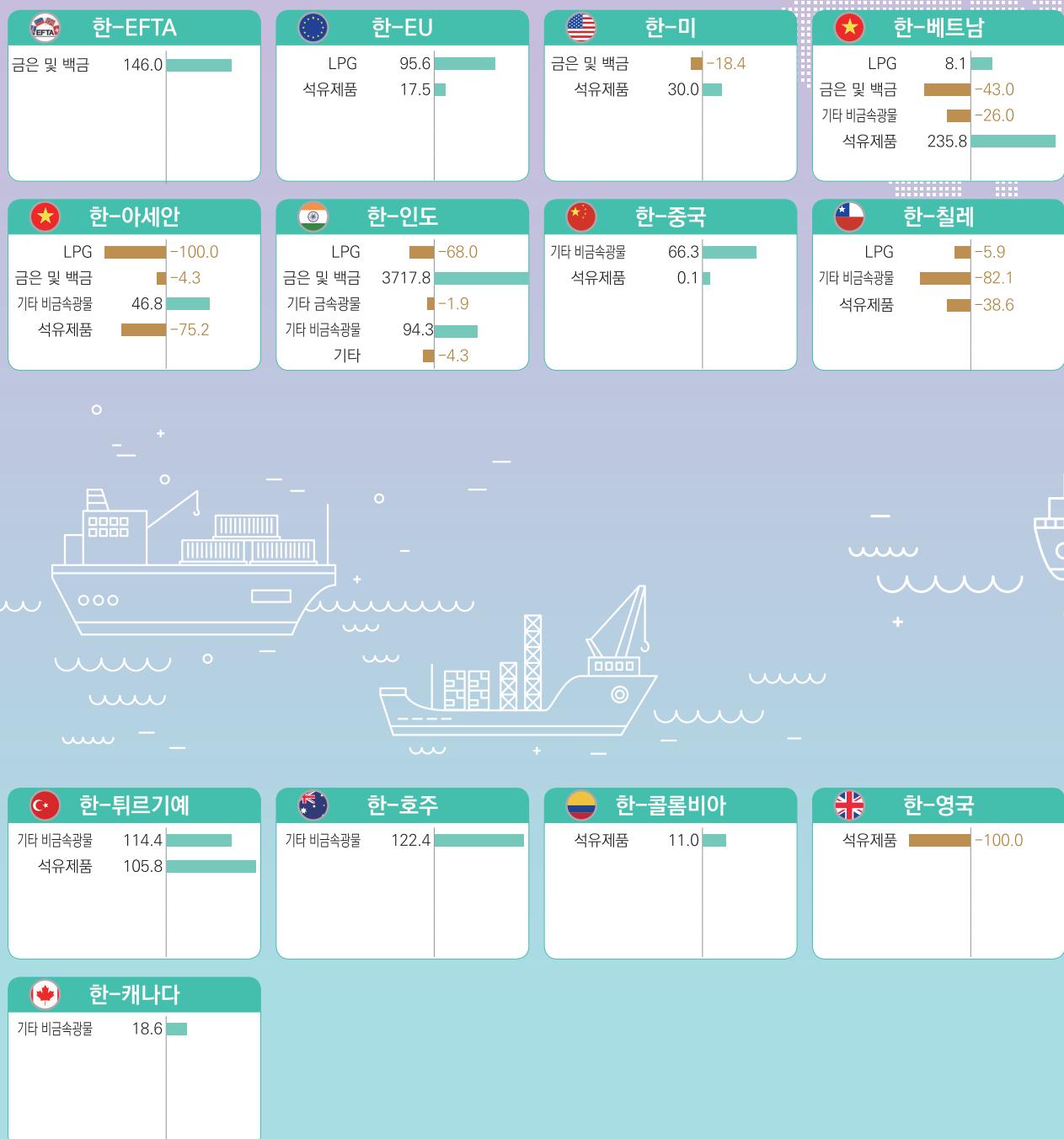
● 2021년 vs. 2022년 FTA 수출입국 주요 품목의 증감

1. 광산물
2. 기계류
3. 농림수산물
4. 생활용품
5. 섬유류
6. 잡제품
7. 전자전기제품
8. 철강금속제품
9.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10. 화학공업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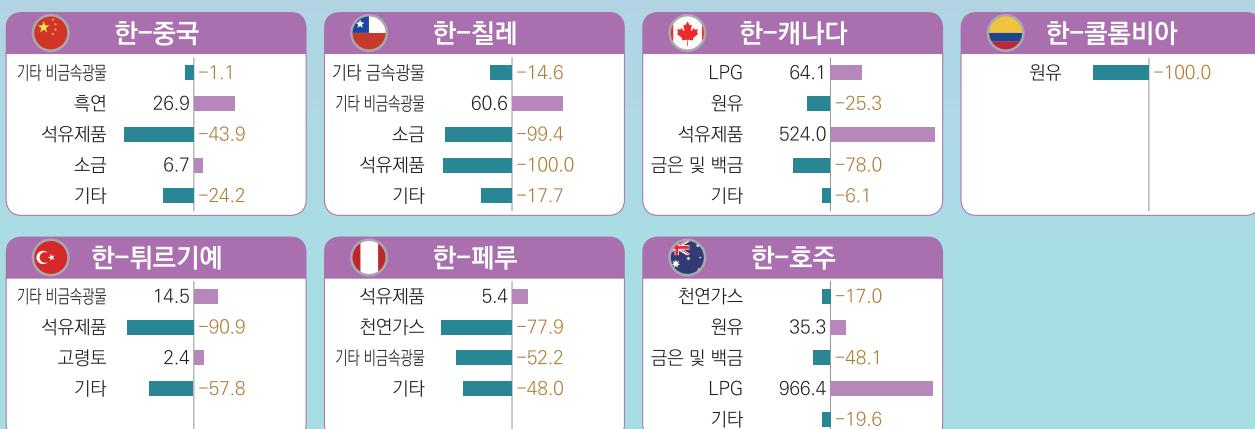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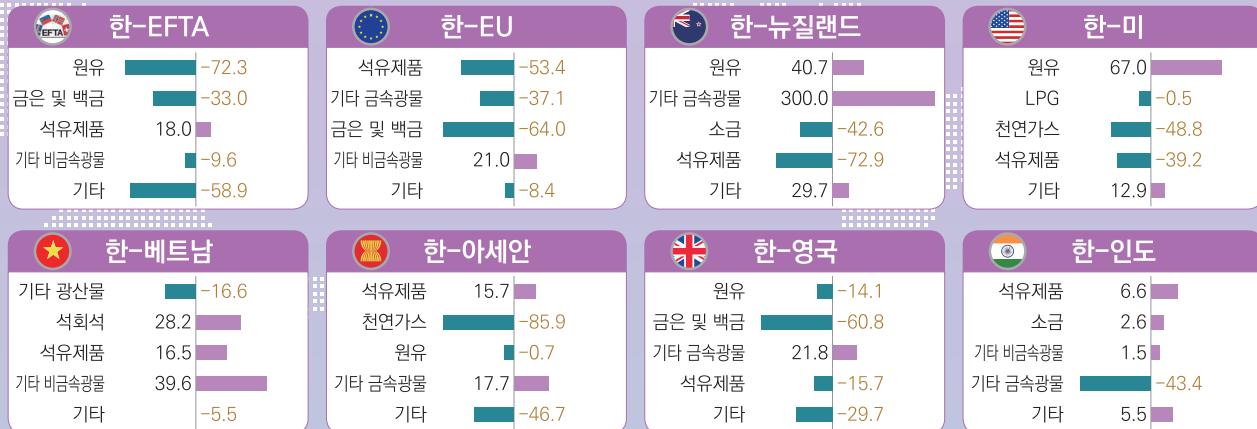
E REPORT

광산물 수출

2021년 vs. 2022년 FTA 수출입국 주요 품목의 증감



광산물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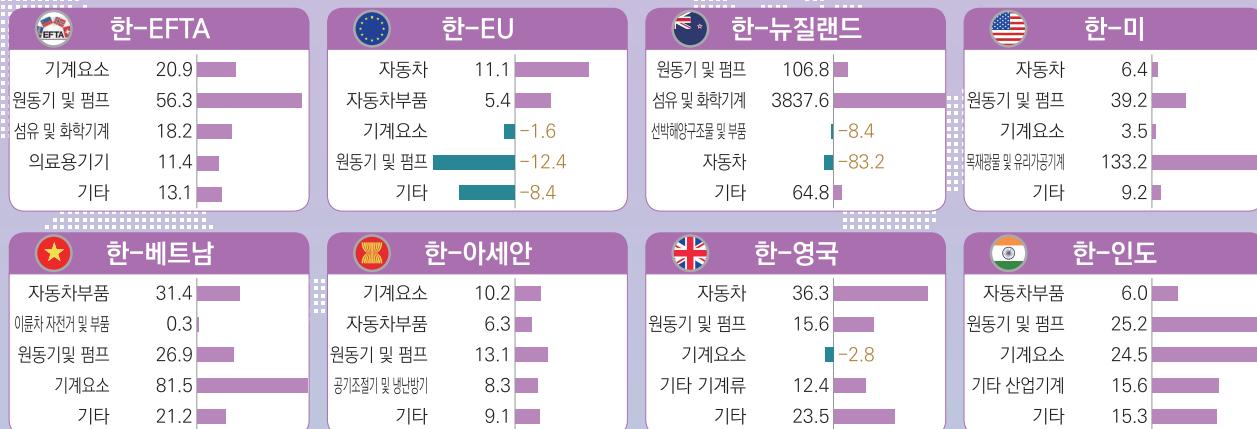


기계류 수출

2021년 vs. 2022년 FTA 수출입국 주요 품목의 증감



기계류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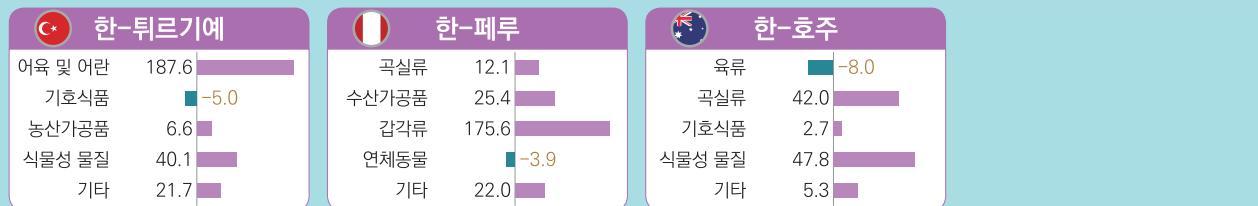




2021년 vs. 2022년 FTA 수출입국 주요 품목의 증감



농림수산물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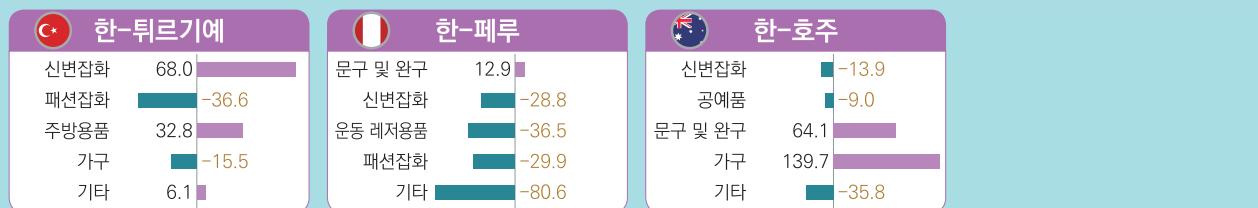


생활용품 수출

2021년 vs. 2022년 FTA 수출입국 주요 품목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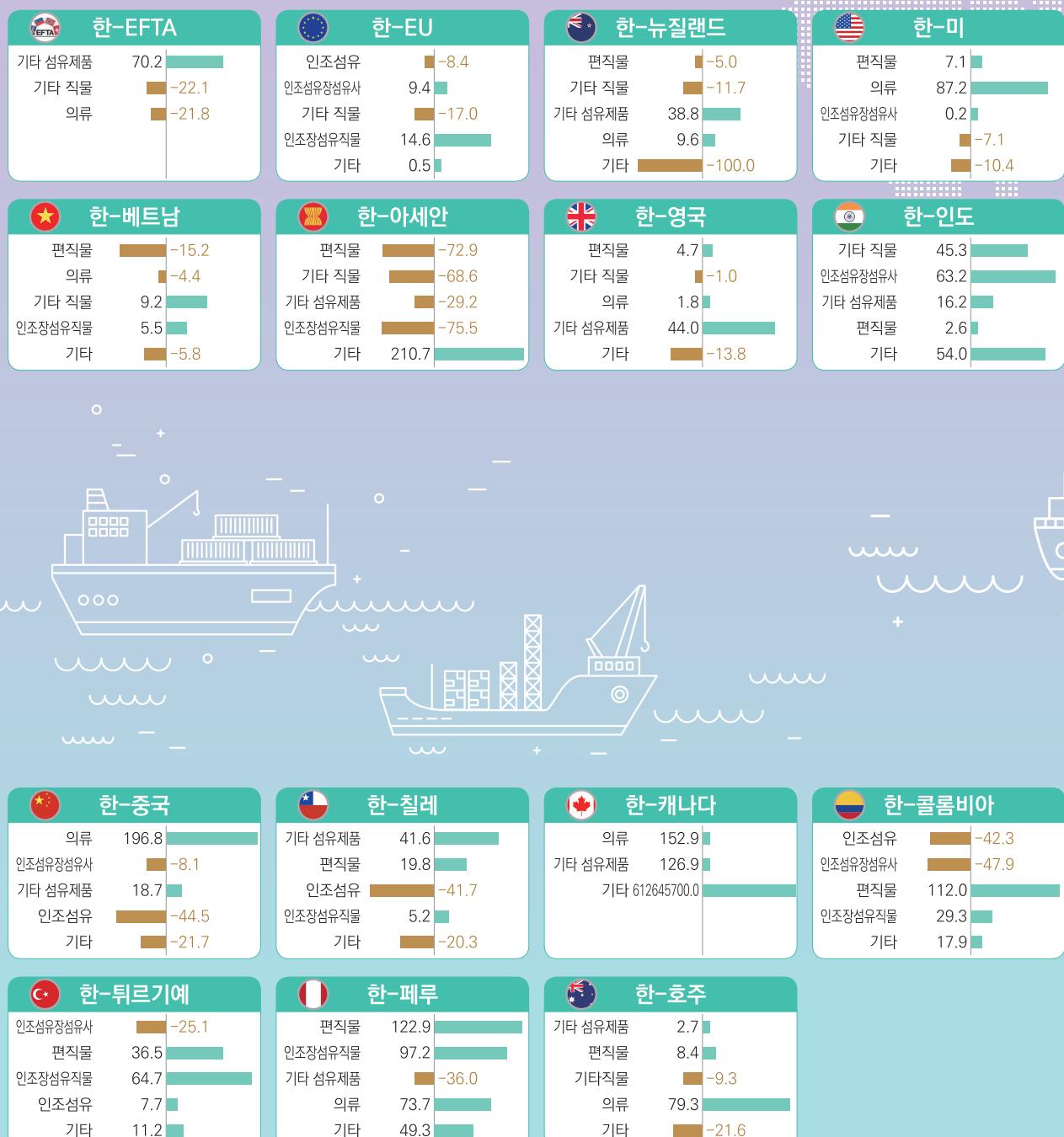


생활용품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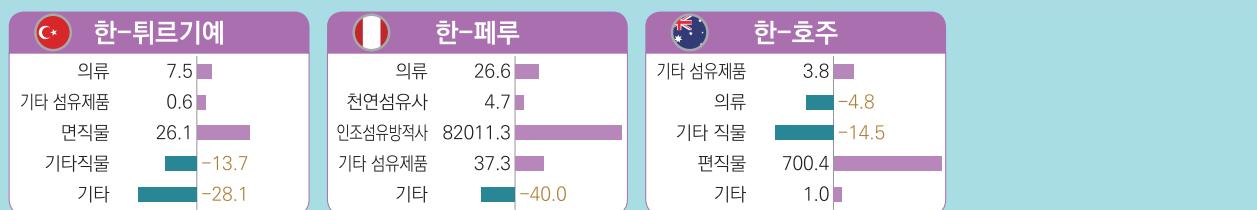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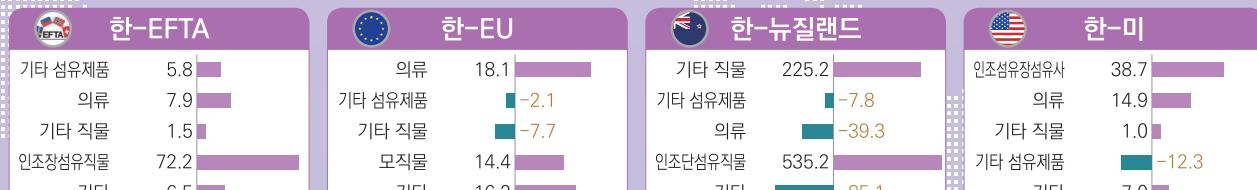


섬유류 수출

2021년 vs. 2022년 FTA 수출입국 주요 품목의 증감



섬유류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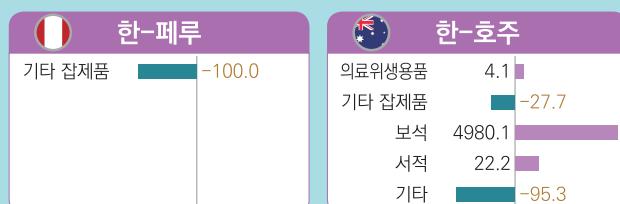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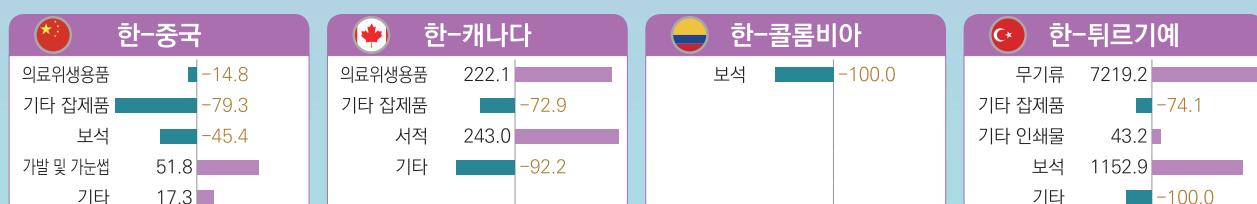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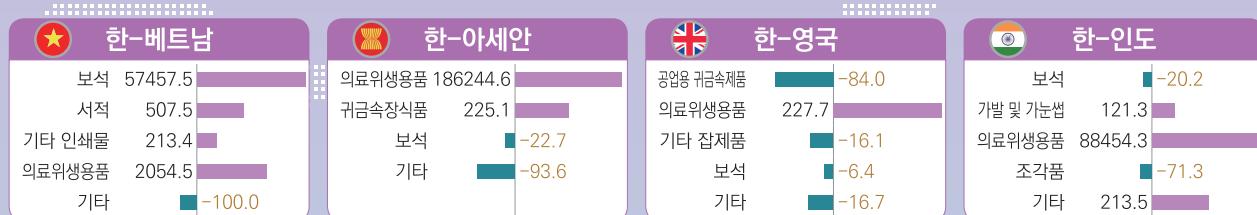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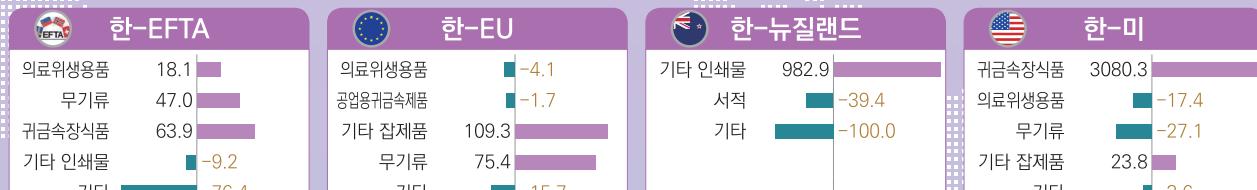


잡제품 수출

2021년 vs. 2022년 FTA 수출입국 주요 품목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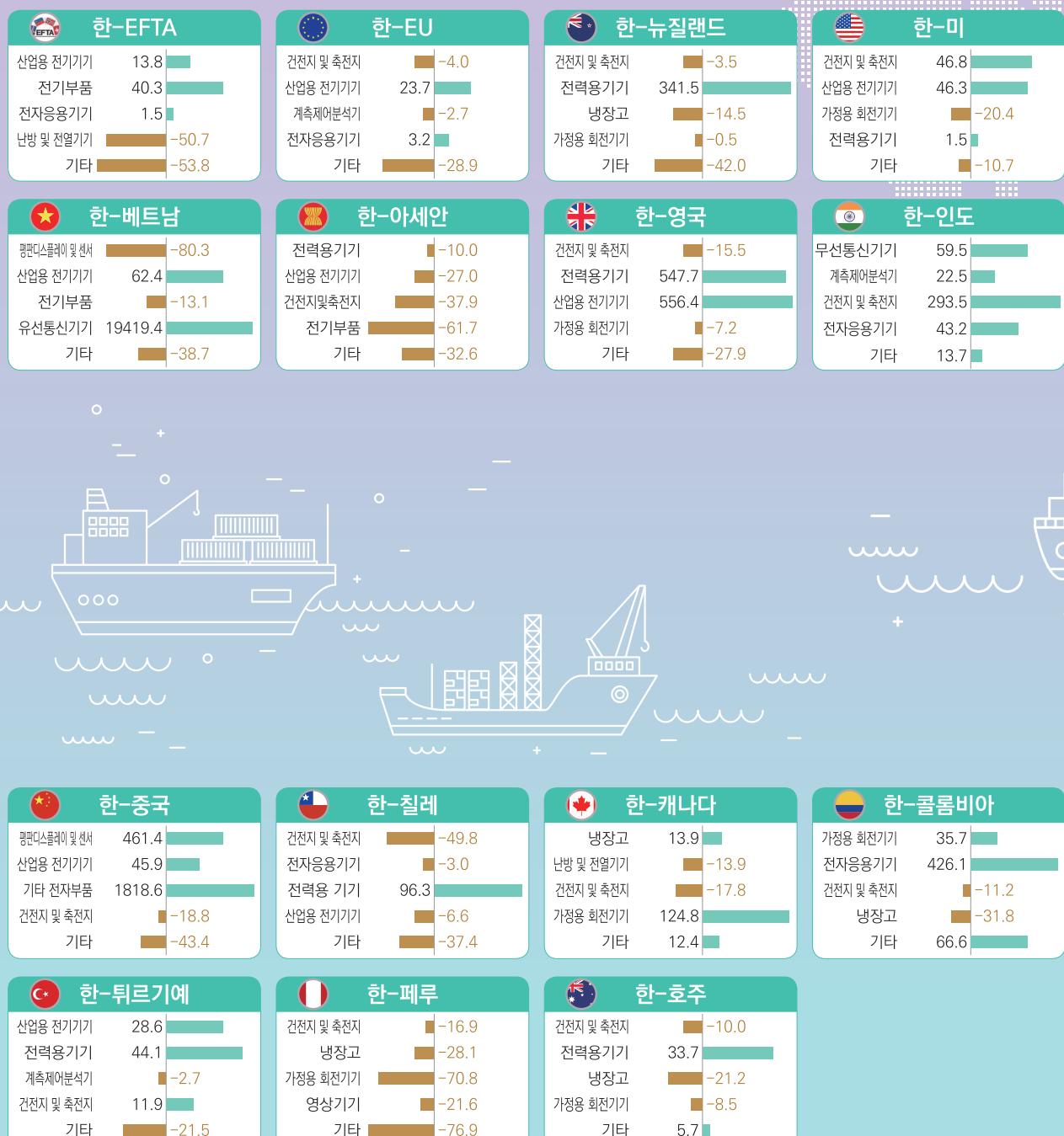


잡제품 수입



전자전기제품 수출

2021년 vs. 2022년 FTA 수출입국 주요 품목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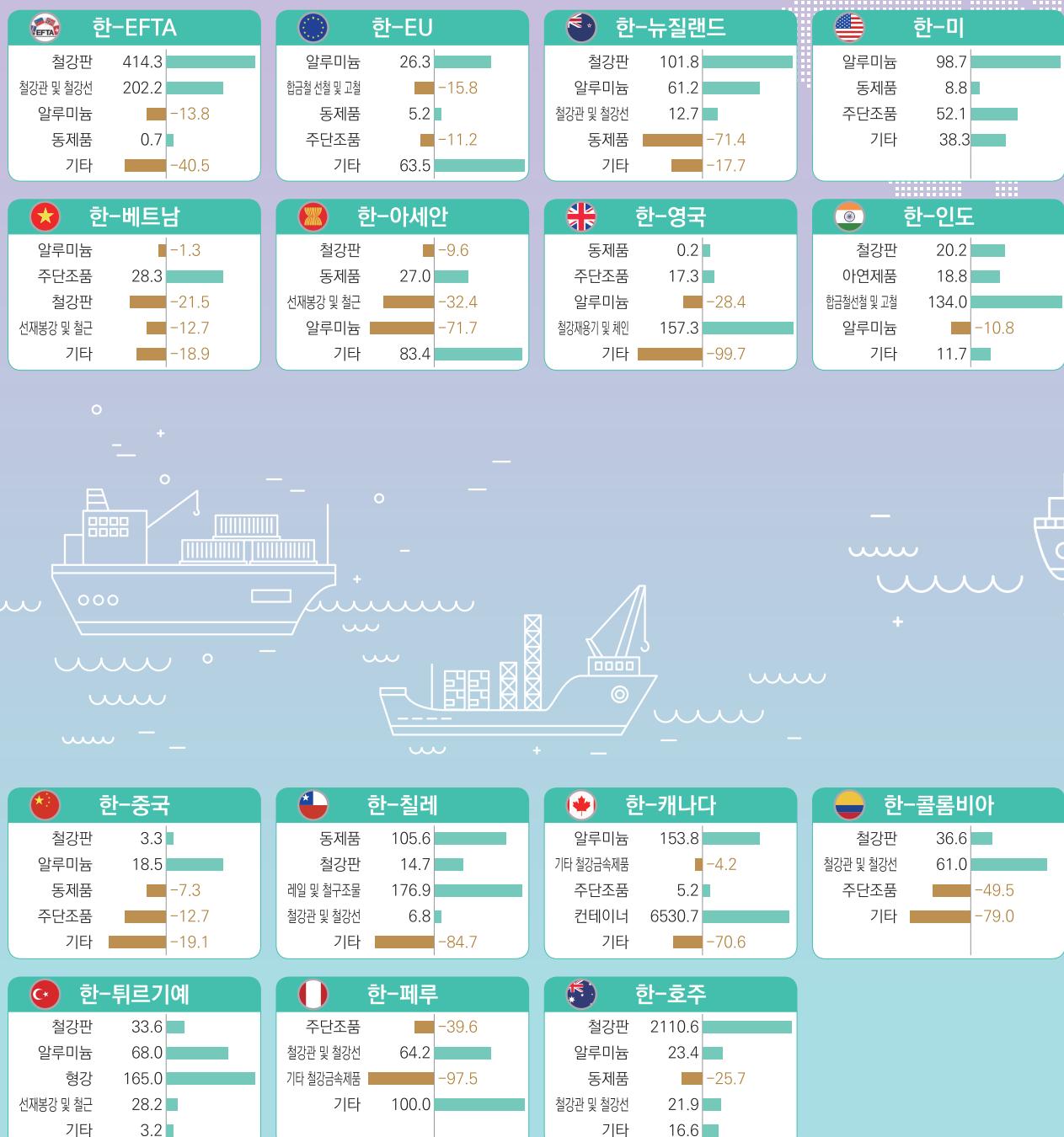


전자전기제품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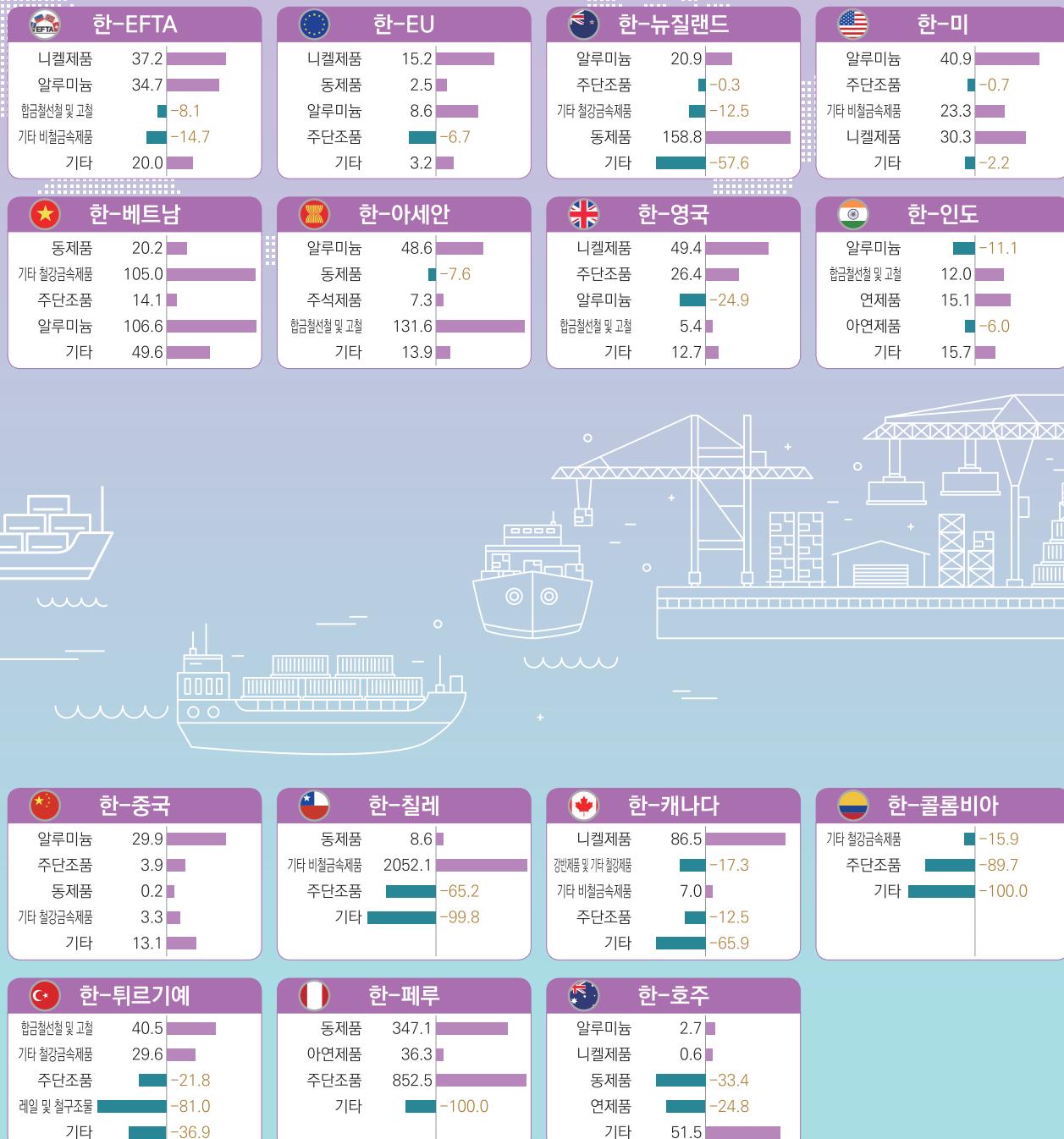


철강금속제품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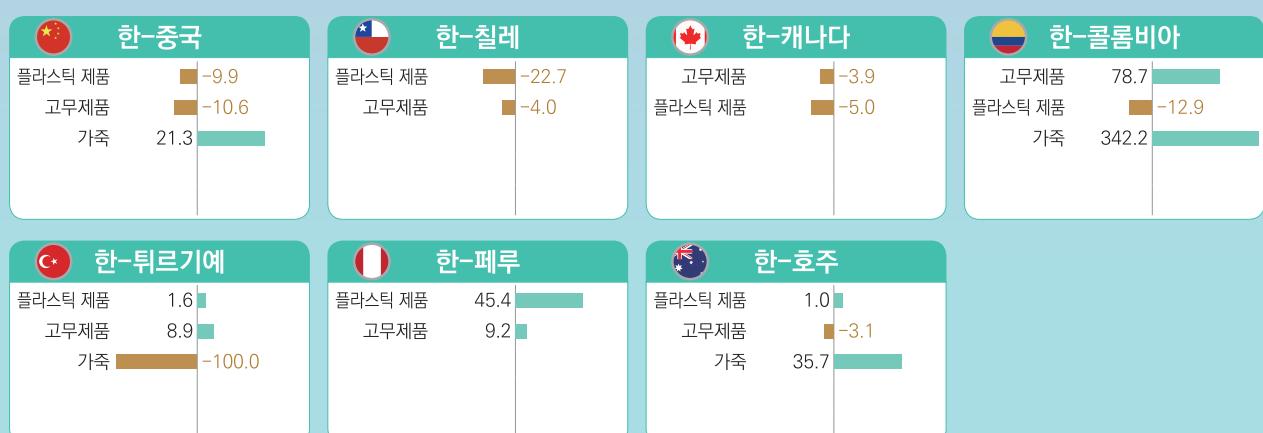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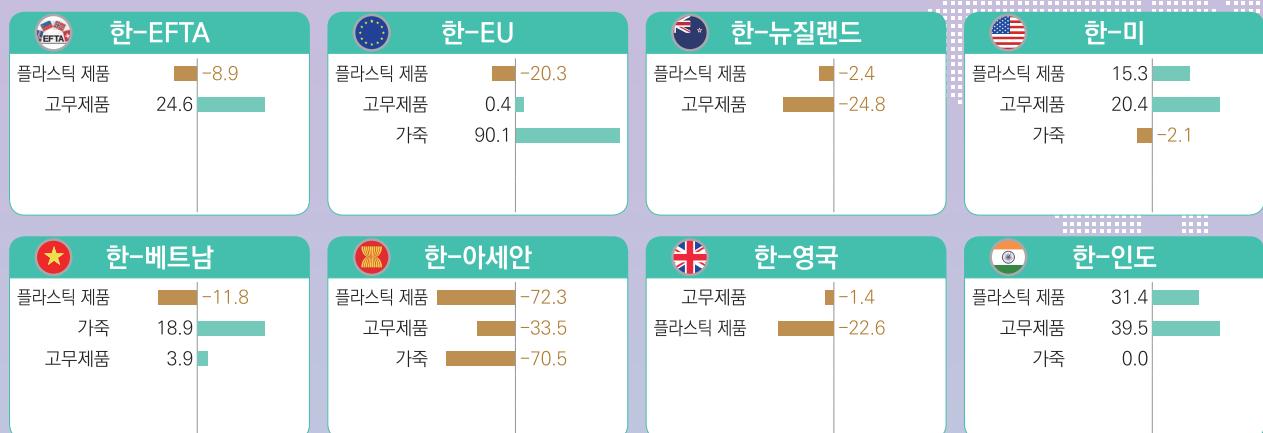
2021년 vs. 2022년 FTA 수출입국 주요 품목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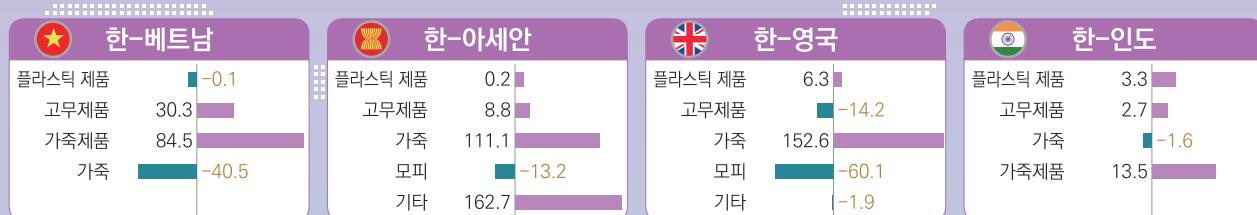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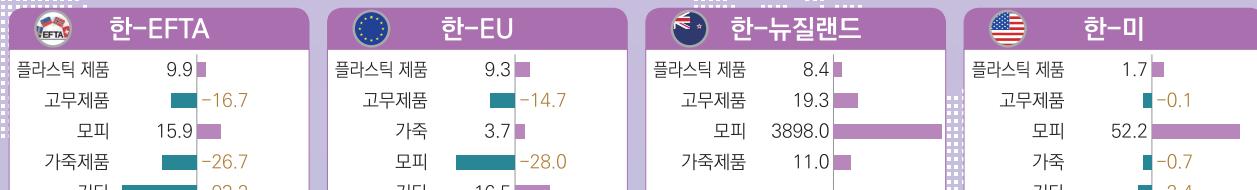
철강금속제품 수입



2021년 vs. 2022년 FTA 수출입국 주요 품목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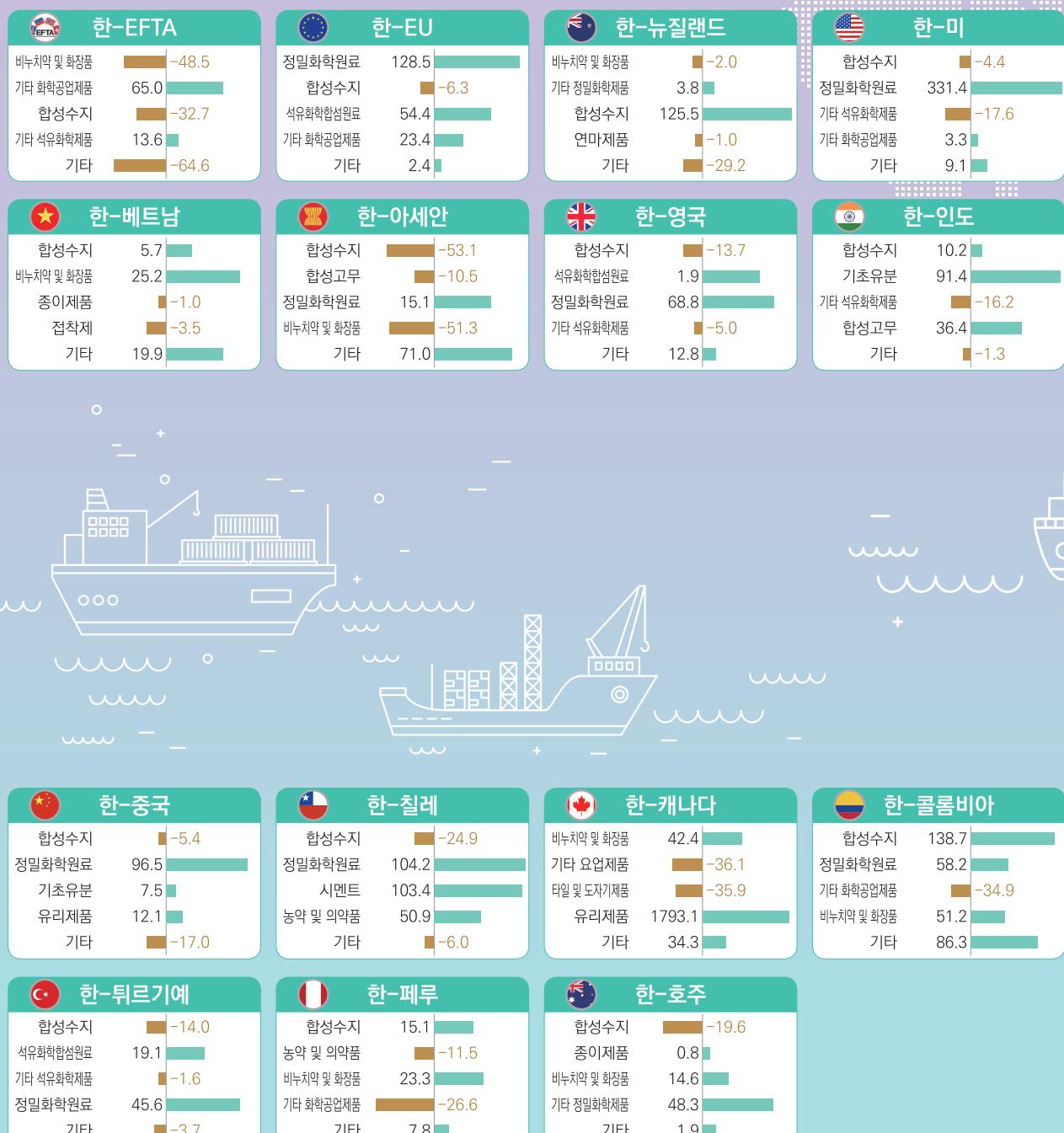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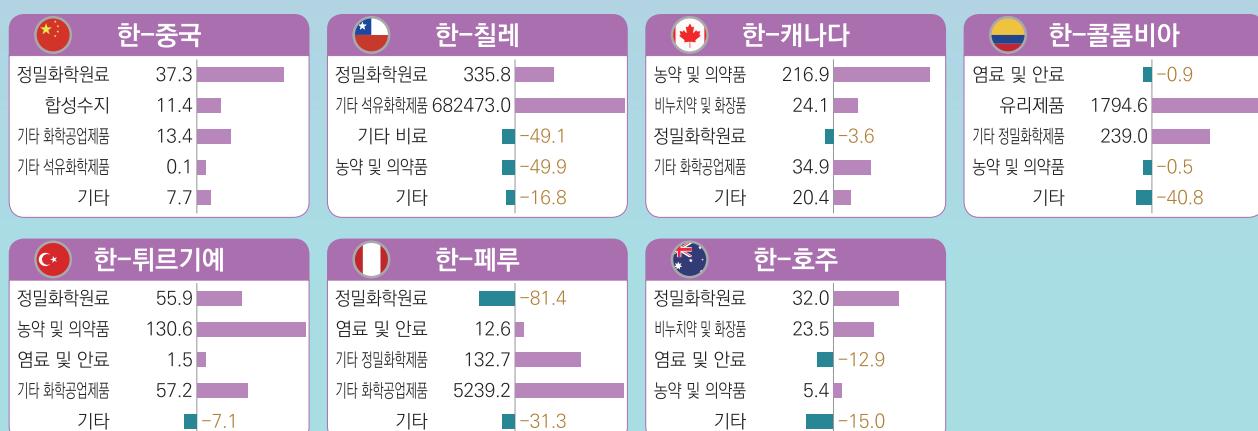


화학공업제품 수출

2021년 vs. 2022년 FTA 수출입국 주요 품목의 증감



화학공업제품 수입



2023년도 원산지관리사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시험안내

국가공인 민간자격 **원산지관리사**

공인번호
관세청 제2021-1호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학점은행제 9학점 인정 및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가능

등록민간자격 **원산지실무사**

등록번호
제2015-004250호

FTA·원산지관리 실무 능력을
갖춘 준전문가

*원산지관리전담자 자격점수 2점인정

2023년 시험일정

구 분	시험일	시험공고	원서접수기간
제33회 원산지관리사 제18회 원산지실무사	11.11.(토)	10.11.(수)	10.13.(금) ~ 10.25.(수)

※ 원산지실무사(09:00~10:00), 원산지관리사(11:00~13:00) 시험일은 동일합니다. (동시 응시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FTA원산지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응시료 및 환불규정



• **응시료** 원산지관리사 50,000원, 원산지실무사 30,000원
(상장형 자격증 발급 무료, 카드형 자격증 발급비 5,000원)

• **환 불** 원서접수기간 : 100% 환불
접수마감 후 : 부분환불
시험 5일전부터 : 환불불가

접수 문의



• **접 수** 온라인접수
(FTA원산지아카데미 www.ftaedu.or.kr • 자격시험별 시험접수)

• **문 의** 한국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5~6, ftaedu@origin.or.kr
1350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205번길 8

*관세법 개정으로 2023년 7월 1일부터 기관명이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 변경됩니다.



한국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FTA 무역리포트 TRADE REPORT

June 2023 Vol. 02 (통권 42호)

(비매품)

발행일 2023년 06월

발행처 관세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한국원산지정보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TEL : 031)6000-701~3 / FAX : 031)6000-704
<http://www.origin.or.kr>

편집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한국원산지정보원

디자인·인쇄 (주)케이에스센세이션

발간등록번호 11-1220000-000342-08

「FTA 무역리포트」에 게재된 글은 저자의 견해로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TA FTA TRADE 무역리포트 REPORT



보내는 사람

주소

이름

연락처

E-mail

우 표

받는 사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성남세관
5층 한국원산지정보원

FTA 무역리포트 담당자 앞

1 3 5 0 3

독자의 소리

〈FTA 무역리포트〉 독자의 소리를 2023년 8월 1일까지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되신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FTA 무역리포트〉를 보신 소감을 적어 주세요.



〈FTA 무역리포트〉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FTA 무역리포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을 알려주세요.

FTA TRADE REPORT
FTA 무역리포트





customs.go.kr/ftaportalkor/
ftapass.or.kr



관세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한국원산지정보원

1350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야탑동 성남세관 5층)